I.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1. 신분제의 동요
- 2. 농민·천민의 봉기

I.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1. 신분제의 동요

1) 신분제 동요의 배경

흔히 의종 때 일어난 武臣亂을 지표로 삼아 고려사회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자를 전기사회로, 후자를 후기사회로 보고 있다. 적어도 신분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구분은 적절한 듯하다. 무신란은 무신들이 정변을 통하여 집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집권은 성공하였고, 그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한 세기에 걸쳐 지속되었다. 무인들의 집권이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서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가 고려의 신분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무신들도 귀족이었지만, 그들은 문신귀족들의 밑에서 그들의 주도 아래 움직일 수 있었을 뿐이다. 무신들은 문신들의 위에 오를 수는 없었다. 무신란의 발생이 지니는 신분사적 의미를 크게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려 후기사회의 신분사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고려가 元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사실은 무신란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자체가 곧바로 신분제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원의 세력과 연결을 맺고 새로이 權門世族들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 이것은 신분제도의 변화와 밀

¹⁾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에 관해서는 閔賢九,〈高麗後期 權門世族의 成立〉(《湖南文化研究》6, 1974)과〈高麗後期의 權門世族〉(《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의 연구가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龍雲,〈權門世族과 新進士類의 社會〉(《高麗時代史》, 一志社, 1987), 527~539쪽이 참고가 된다. 한편「권문세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새로 등장한 권문세족 가운데에는 종래의 문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계층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평양 조씨의 경우 군인 출신의 趙仁規가 몽고어 통역을 맡은 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2)

무신란의 발생과 원의 간섭은 지배계층 내부의 신분상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가령 무신란으로 무신들의 신분적 지위는 올라갔지만, 반대로 문신들의 경우는 낮아졌다. 그러나 원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는 다시 무신들의 지위는 내려가고 문신들의 경우는 올라갔다. 다만 무신란을 계기로 지배계층의 신분상 지위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가 전면적이었던 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서는 부분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전자에서 변화의 진행이 급격하였는 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점진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무신란의 발생이나 원의 간섭과 함께 신분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민왕에 의한 개혁이다. 3) 그에 의한 개혁은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종래의 附元 세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데, 그 결과 이른바 新進士大夫가 새로이 지배귀족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4) 공민왕의 개혁은 지배귀족층 내부에

그러한 개념을 규정해 주는 여러 특성들이 정당한지의 여부일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다룬 선학들의 논의에 커다란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례대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金光哲, 《高麗後期 世族層研究》(東亞大出版部, 1991) 참조.

²⁾ 閔賢九、〈趙仁規와 ユ의 家門〉(上)・(中)(《震檀學報》42・43, 1976・1977).

³⁾ 공민왕의 개혁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가 즉위하면서 李齊賢을 내세워 개혁을 추진한 적도 있고, 동5년에는 洪彦博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 가운데 가장 과감한 것은 동14년 辛盹을 기용하여 추진한 것이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閔賢九,〈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上)·(下)(《歷史學報》38·40, 1968) 및〈益齋李齊賢의 政治活動-恭愍王代를 중심으로-〉(《震檀學報》51, 1981)에서 얻을 수 있다.

⁴⁾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성격에 관한 초기의 연구로는 李佑成,〈高麗朝의'吏'에 대하여〉(《歷史學報》23, 1964)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金潤坤,〈新興士大夫의 대두〉(《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가 참고가 된다. 한편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활동을 충선왕이나 각별히 공민왕과 연관지어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閔賢九. 앞의 글(1974b).

李成茂,〈兩班層의 成立過程〉(《朝鮮初期 兩班研究》,一潮閣, 1980).

李泰鎭、〈高麗末 朝鮮初의 社會變化〉(《震檀學報》55, 1983).

朱碩煥,〈辛純의 執權과 失脚〉(《史叢》30, 1986).

朴龍雲, 앞의 책.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무신란의 발생이나 원의 간섭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다.5) 그런데 무신란의 발생이나 원의 간섭 또는 공민왕의 개혁이 단순히 지배귀족 내부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정치적 변화들은 하위계층의 신분이동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들로 해서 우리는 고려 후기의 신분제의 동요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이세 가지의 정치적인 변동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변동이 주요 계기가 되어 고려 후기에 와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신분제의 동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려시대 신분제 운영의 기본 원칙은 신분계층 사이에서의이동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신분계층은 저마다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저마다 신분상의 지위도 달랐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특권)와 의무(부담·제약)가 각기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그 정도가 통일신라시대의 경우에 비할 바는 못되었지만 고려에서 아직도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려는 신분제를 시행하면서 신분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기도 하였다. 문반이든 무반이든 또는 향리이든 군인이든,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役과 신분과 지위를 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그렇다고 고 자식들 모두가 언제나 반드시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시대에 限職制度가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한직의 제약을 받는 많은 신분계층은 원칙을 따지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雜類라든지 工匠・승려・군인 등이 그러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임무만 대대로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의 임무를 벗어나 신분을 바꾸고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 다만 그럴 경우 나아가는

그런데 朴龍雲은 신진사대부보다는 新進士類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지만(위의 책, 540~542쪽), 필자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 관행대로 신진사대부라 청하였다.

⁵⁾ 신진사대부의 현저한 대두가 공민왕의 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당장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문세족과 맥락이 닿는 보수세력들의 위력이 고려 말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보아서 신진사대부가 정국에서 중심세력이 되어갔다고 보아도 좋 을 것이다.

관품이나 관직에 제약이 따랐다. 제약을 가진 대로나마 그들이 관직자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도 역시 하나의 엄연한 원칙으로 살아있었다. 한직제도는 바로 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제도의 시행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존중되었다. 과거시험은 문관을 채용하는 것인데, 본래의 원칙대로 한다면 문반에게만 응시의 자격이 주어져야 마땅할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무반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향리들이나 군인·잡류 등도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반 양인 농민들에게도 과거에 나아갈수 있는 문은 열려 있었다.6)

이와 같이 고려 전기의 신분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특정한 신분계층에 속하여 일정한 임무를 대대로 수행하여야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분계층을 벗어나서 다른 임무를 세습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신분을 고정시키는 원칙과 함께 신분을 이동시키는 원칙이 고려의 신분제도 운영에서 아울러 공존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상반되는 이 두 원칙이 실제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고려 전기의 신분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이 두 원칙에 있어서 우선적이고 더 중요했던 것은 신분을 고정시키는 원칙이었다. 신분을 이동시키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이 둘의 조화라는 것도 전자가 훨씬 더 우대되고 그것에 더 큰 비중이두어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의 조화였던 것이다.

고려 후기에 와서 보이게 되는 신분제의 동요란 이와 같이 두 원칙 사이에 있었던 종래의 조화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분이 고정되는 일보다는 신분이 이동하는 일이 더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다. 지배계층의 변화만 보아도 전기사회에서는 보기드문 일들이 나타났다. 이미 언급하였듯이무신들이 한 세기에 걸쳐서 집권하게 되었던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었다.

⁶⁾ 다만 그들이 응시할 수 있는 과거는 明經科와 雜科에 한하였다. 製述業에는 그들이 나아갈 수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李基白, 〈高麗貴族社會의 形成〉(《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67쪽.

朴龍雲,〈高麗時代의 科學-製述科의 應試資格-〉(《高麗時代 蔭敍制와 科學制 研究》,一志社, 1990), 239~243쪽.

^{-----, 〈}高麗時代의 科學-明經科에 대한 檢討->(위의 책), 571~537쪽 참 조.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는 원과 연결을 맺고 그 비호 속에서 정국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격의 지배세력으로 권문세족들이 크게 대두하였다. 고려말이 가까워지면서 지방의 향리출신들이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여 강력한 정치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도 전기사회의 경우에 비하여서는 크게 눈에 띄는일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사회에 있어서 신분이동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는아무래도 하급 신분계층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근한 예로 李義旼은 노비신분으로 군인이 되었다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金俊도 노비출신으로 마침내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었다. 辛盹 역시 노비신분으로 승려가되었다가 끝내 정치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바가 있었다.

고려 후기의 신분 이동은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낮은 신분으로 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근한 예로 반역을 꾀한 죄로 귀족들이 하루아침에 관노비로 전략하는 경우도 정치적 변동이 심하였던 고려 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몰락하여 점차 지방으로 내려가 在地品官이 되는 귀족들도 나타났다.7)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귀족의 지위를 당장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그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종국에 가면 귀족의 지위에 겨우 매달려 있거나 더운이 나쁘면 일반 양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고려 전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일반 양인층의 경우도 신분상 지위의하락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고려 후기에 農莊制가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세력가들에 의하여 대토지소유가 늘어나고 이것은 농장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많은 자작농들이 전호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심하면 노비신분으로 전략하기도 하였다.8)

⁷⁾ 이와 관련하여서는 朴恩卿,〈高麗後期 地方品官勢力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44,1984)가 크게 참고가 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千寬宇,〈麗末鮮初의 閑良〉(《李丙燾華甲紀念論叢》,1956;《近世朝鮮史研究》,1979).

浜中昇、〈麗末鮮初の閑良について〉(《朝鮮學報》42, 1967). 韓永愚、〈麗末鮮初 關良과 ユ 地位〉(《韓國史研究》4, 1969).

⁸⁾ 壓良이나 投托에 의하여 일반 양인 가운데 노비로까지 전락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洪承基,〈奴婢의 社會經濟的 役割과 地位의 變化〉(《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198~200쪽 참조.

신분이동이 이러한 정치적 변동이나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찾아지기도 하 였지만, 제도의 변화에 힘입어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 서 문반과 무반 사이에 교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문반도 무반직에 나아가고 무반도 문반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의 그리고 添 設職 제도를 두어서 관리가 되는 이들의 수를 늘리기도 하였다. 이 첨설직에 나아가는 계층은 주로 士人과 향리층이었지만. 일반 양인이나 천인들의 경우 도 농민·공장·상인과 같은 일반 양인이나 노비와 같은 처인들이 첨설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10) 또한 고려 후기의 신분이동과 관련하 여 중요한 것은 충렬왕 원년(1275)부터 시행된 納粟補官制度였다.11) 일반 양 인이 군공과 같은 특별한 공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양의 白銀이나 米 를 바치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되었는 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또 이미 알려져 있듯이 고려 후기에 와서는 部曲制가 점차 혁파되어 갔다. 이것은 일반 郡縣人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鄕・所・部曲人들이 더 이상 군현인과 구별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문무교차제 · 첨설직제 · 납속보관제의 시 행이나 부족제의 폐지와 같은 제도상에 보이는 변화들이 또한 당시의 신분 이동을 보다 쉽게 해주었던 것이다.

〈洪承基〉

2) 양인·천인의 신분이동

여러 신분층 가운데 특히 양인과 천인의 신분이동이 고려 후기에 와서 더 수월하여진 데에는 그들 자신들의 항쟁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도 중요하

⁹⁾ 邊太燮,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史學研究》11, 196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321~329等.

¹⁰⁾ 添設職制度는 공민왕 3년에 軍功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기 위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鄭杜熙, 〈高麗末期의 添設職〉(《震檀學報》44, 1978)이 있다.

^{11) 《}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納粟補官制. 朴龍雲, 앞의 책, 586~587쪽.

다.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양인 가운데에서 일반 농민이나 그보다 낮은 소 · 부곡인들과 공사노비들에 의한 반란이 꼬리를 물고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농민이나 천인의 반란은 제각기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들의 바라던 바도 역시 한결같지는 않았다. 농민 반란으로는 西北面 지역 농민의 항쟁, 全州民의 항쟁, 雲門·草田 농민의 항쟁, 慶州民의 항쟁 등이 있었는데, 국가의 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가 농민들의 반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나선 경제적 수탈도 그들의 신분적 한계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항쟁에는 일면 신분해방의 의도도 잠재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분 해방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뚜렷한 것은 노비이거나 사회적으로 천시되는 사람들에의한 반란이었다. 鳴鶴所民의 항쟁, 奴兀部曲民의 항쟁이나 晋州 公私 奴隷의 반란 및 萬積의 난이 그러한 예들이다. 특히 만적은 난을 선동하면서 "公卿將相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동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유명하다.

농민의 반란이나 천민의 반란은 최씨집권기에 오면 대부분 모두 진압되었고, 어느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신분제의 동요가 더욱 커져서 신분이동을 촉진하게 되었음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향·부곡·소 등의 특수한 행정구역이 점차 소멸되기에 이른 것은 그들의 항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1) 양인・천인의 신분상승

고려 후기에 양인과 천인의 신분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그들의 신분이동의 실제에 접근하여 볼 차례이다. 이와 관 련하여 신분이동 가운데 먼저 신분상승에 관한 모습부터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고려 후기에 양인이나 천인의 신분상승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¹⁾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바 있었지만, 그 연구들은 모두가 개별적인 것이었다. 최근에 이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설명은 대체로 그에 따른 것이다. 李貞信, 《高麗武臣政權期農民‧賤民抗爭研究》(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1) 참조.

은 무엇보다도 노비출신으로서 고위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의 수가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2)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의민이나 김준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국왕이나 집권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각별한 총애와 비호를 받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정치적이었으며, 이 점에서 이러한 사실로써 일반론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 양인이라 하여도 그 상층부에 속하였던 향리·군인·잡류 등의 신분적배경을 가진 이들로서 관리가 된 경우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다. 특히 향리들의 경우가 그러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양인의 상층부에 속하는 이들의 예를 가지고 양인의 신분상승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통 양인의 경우를 알아보고 천인이라고 해도 특별한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면서 신분을 상승시킨 예에 한하여 설명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일반 양인이나 천인들의 신분상승에 관한 대략적인 경향은 아 래의 여러 기록으로써도 대충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續命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땅(근본)은 臣道인데 이제 상과 벌이 밝지 못하므로 높고 낮은 신하들이 게으르고 해이해져 관직을 비우고 또 軍功으로 말미암아 白丁이 갑자기 卿相에 나아가고 노예가 외람되이 朝班에 처하여 臣道가 혼란하고 이로써 지진을 초래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상벌을 엄격히 하고 고귀한 국가의 관직을 신중하게 취급하소서'(《高麗史》권 111, 列傳 24, 金續命).
- ② 이 때 여러 해 동안 나라에 전쟁이 계속되어 창고의 저장이 다 말랐고 德 興兵이 또 이르름에 공있는 사람을 모두 벼슬로써 상을 주게 되자 (吳)仁澤과 (金)達祥이 먼저 문・무관을 첨설할 것을 건의하고 드디어 銓注를 맡게 되었다. 출정하는 將士가 모두 건너뛰어 벼슬자리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즐겨 從軍하였다. 그러나 청탁이 크게 일어나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져 工匠・賤隷도 관직을 받 지 않음이 없으니 官爵이 크게 범람하였다(《高麗史》권 114, 列傳 27, 吳仁澤).
- ③ 紹宗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예로부터 帝王이 천하의 백성을 4등급으로 나누어 士・農・工・商이라 하였는 바 농・공・상은 각각 그 業을 대대로 하여 웃

²⁾ 원나라 간섭기에 한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필자는 이미 노비출신으로서 정계에 나아간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세하게 검토한 바가 있다(洪承基,〈元의 干涉期에 있어서의 奴婢출신 인물들의 政治的 進出〉,《高麗貴族社會와 奴婢》제9장,一潮閣, 1983). 그리고 같은 책 제7장〈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의家奴〉및 제8장〈武人執權時代의 奴婢叛亂〉도 노비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람을 모셨습니다. 오직 士는 일함이 없이 학교에 들어가 독서하고 몸을 닦아 집을 바르게 하여 임금을 섬기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道를 다 배운 다음에 벼슬합니다. …신축·계묘년 이래로 나라의 쓰임이 부족하여 官爵으로써 功을 상주는 물건으로 삼으니 소인이 외람되이 軍功을 무릅쓰고 뇌물을 인연하여 차례없이 뛰어서 제수되어 왔습니다. 그 근원이 한번 열리매 오늘에 이르기까지 商賈·工匠·公私奴隷가 모두 얻어 관리가 되었습니다'(《高麗史》권 120, 列傳 33, 尹紹宗).

위의 사료들은 모두 공민왕 때의 사정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고려 후기에 일반 양인과 천인들이 벼슬에 나가는 일이 과거에 비하여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향을 읽기에 부족함이 없다. 벼슬길에 나가는 일은 그들의 신분상승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는 것이었다. 윤소종은 관직은본래 사족만이 맡아야 하는 것인데도 농민이나 공장 및 상인은 말할 것도없고 심지어 공·사노비들까지 관직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이 현실을 개탄하는 입장을 보였다(③). 그런데 위의 사료들을 두루 보면 백정(농민)·공장·상인·노예 등이 관직을 얻게 되는 계기가 주로 군공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대에서 공을 세우는 일이나 그러한공을 세우도록 권장하는 일에서 그들이 관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뇌물이었다. 그들이 재화를 가지고 관직에 접근하였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일반 양인과 천인으로서 관직을 받아 신분을 상승시킨 예는 많지만, 여기서는 대 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겠다.

- ④ 白任至는 藍浦縣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처음 驍勇함으로써 뽑혀 서울에 이르러 셋집에 살면서 섶을 팔아 자급하였다. 의종이 선발하여 內巡檢軍에 충당되어 왕의 행차를 호종하였는데 잠시도 儀仗의 곁을 떠나지 않으니 그 공로로 隊正에 보임되었다. 鄭仲夫의 난으로 무인이 뜻을 얻게 되자 드디어貴顯하게 되었다. 명종조에 여러 번 옮겨 刑部侍郎이 되었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白任至).
- ⑤ 曺元正은 玉工의 아들이니 어머니와 할머니는 모두 官妓였다. 처음 7품직에 한정되었으나 정중부의 난 때 李義方을 도왔으므로 드디어 郎將・將軍을 지내고 명종 때 工部尚書가 되었다가 樞密院副使에 전임되었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曺元正).

- ⑥ 孫琦는 본래 상인으로 충숙왕의 倖臣이 되었다. 여러 번 옮겨서 大護軍이되고 시종한 공으로 전토와 노비를 사급받았는데 摠部典書를 거쳐 知密直司事에 승진하였다(《高麗史》권 124. 列傳 37. 嬖幸 2. 孫琦).
- ⑦ 朴球는 蔚州에 속한 部曲人이니 그 선대가 부유한 상인이었으므로 그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로 알려졌다. 원종 때에 上將軍이 되었다. … (그는)(金)方慶을 좇아 일본을 처서 공이 있었다. 뒤에 同知密直司事로서 合浦에 出鎖하고 贊成事로서 죽었다. 구는 별다른 기능은 없었으나 군공으로써 귀하게 되었다(《高麗史》권 104, 列傳 17, 金方慶 附 朴球).
- ⑧ 李英柱의 아버지는 應公이다. 영주가 처음에 중이 되었다가 뒤에 세속으로 돌아와 양가의 딸에게 장가들어 한 아들을 낳았다. (영주가) 管城縣令이 되었다. 충렬왕이 세자가 됨에 靴工 金淮提의 처가 美色임을 듣고 이를 들였는데 때에 임신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었다. 딸을 낳으매 궁중에서 기르기를 자기가 낳은 것 같이 하였다. 영주가 그 처를 버리고 이에 장가드니 때에 國壻라 청하였다. 충렬왕이 즉위함에 미쳐 內園丞으로서 郎將에 건너뛰어 배수되니 궁중에 출입하여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 (충렬왕) 26년에 密直副使로 임명되었다(《高麗史》권 123. 列傳 36. 嬖幸 1. 李英柱).
- ⑨ 池緬은 忠州人이니 그 어머니는 巫女였다. 行伍에서 출세하여 여러 번 종 군하면서 공이 있었으므로 공민왕 때에 여러 차례 옮겨 判崇敬府事가 되었다. 우왕 때에 門下贊成事‧判版圖司事에 임명되었다(《高麗史》권 125, 列傳 38, 姦臣 1. 池緬).
- ⑩ 平亮을 멀리 떨어진 섬에 유배하였다. 평량은 平章事 金氷寬의 家奴였는데 見州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치부하였다. 권력의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천인을 면하고 양인이 되었으며 散員同正을 얻을수 있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8년 5월 병진).

위의 사례들은 평량의 경우만 빼고는 모두가 《고려사》의 열전에 당사자가 입전되어 있다. 같은 사례로서 입전되어 있는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체적인 예들은 더욱 많다. 여기서는 다만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백임지는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이었다. 그는 일반 양인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군인으로 뽑혀 서울로 가서 경군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공로로 장교가 되었으며, 정중부의 난에 참여하여 더욱 출세할 수 있었다(④). 조원정은 옥공의 아들이었으므로 工匠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중부의 난에서 공을 세워 정4품의 장군이 되었고 마침내 정3품의 공부상서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⑤). 손기는 본래 상인이었는데 충숙왕을 시종한 공으로 종2품의 지밀직사사에까지 승진하였다. 그에 앞서서 종3품의 대호군이되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도 백임지나 조원정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군인이나 장교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 그 공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나 싶다(⑥). 박구는 부곡인이면서 동시에 상인이었던 인물인데 정2품의 찬성사까지 되었지만, 기록에도 있듯이 군대에서의 임무가 공로로 인정되어 그렇게까지 출세할 수 있었다(⑦). 지윤은 무녀의 아들로서 찬성사에 이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출세도 군공에 힘입어 이루어졌다(⑨).

이영주는 승려출신으로서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서 출세하여 정3품의 밀직부사가 되었다. 그가 국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은 국왕의 뜻을 헤아려 그에부용하는 일을 잘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끝으로 평량은 사노로서양인이 되고 산원동정의 직도 얻게 되었는데 권세있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⑩).

대체로 보면 일반 양인이나 천인이 관리가 되어 신분을 상승시키는 데에는 군인이나 장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거나 그 이상 공이 인정되는일이 중요하였다. 이것은 전문적인 군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軍班制의 병제가 무너진 데다가 밖으로는 외족의 침입이 잦고 안으로는 정변이나 그 밖의 정치적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임무가 전에 없이 중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보자.

병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응모하는 사람 가운데 私賤을 제외한 나머지 士族과 鄕吏는 관직을 주고 宮司奴隷는 양인이 되게 하거나 錢帛으로써 상을 주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하였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공민왕 10년 10월).

군사적인 임무의 중요성이 워낙 커서 병사가 되는 궁사노예까지도 그가 원하면 양인이 되게 할 정도였다. 이것은 사료 ①~③에서 읽을 수 있는 당 시의 일반적인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료 ②에 언급이 있듯이 뇌물도 그들의 신분상승에서 중요한 요

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잠시 아래의 기록을 보기로 하자.

개성부 5部와 외방의 州·縣에서 百姓을 양반으로, 천인을 양인으로 戶口를 위조하는 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단죄하라(《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2, 戶口 충숙왕 12년 10월 敎).

이 기록은 호구를 위조하여 신분을 바꾸는 일이 전국적으로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그러한 위조에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연루됨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위조행위 자체는 호구를 맡고 있는 관리가 하는 것이다. 호구담당 관리가위조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게 마련이지만, 이러한 불법은 대체로 뇌물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평량이 양인이 된 것도호구를 위조한 결과이겠는데, 그도 담당관리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이다(⑩). 고려후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볼수가 없다.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관리들도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관리들에 대한 뇌물이 성행하는 상황속에서 신분적 한계에 있는 이들이 그들의 신분상승을 위하여 뇌물에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일반 양인이나 천인 가운데는 평량처럼 열심히일하여 재화를 모은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역시 평량처럼 뇌물을 써서 호구를 위조하여 신분을 올리거나 벼슬을 사는 사람들도결코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2) 양인의 신분하락

위에서 일반 양인과 천인이 신분을 상승시키는 모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높은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출세의 사다리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양인 가운데에는 반대로 낮은 신분으로 전략되어야 하는 비운을 맞는 이들도 많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보이는 몇 개의 사료에 눈을 돌려보기로 하자.

① 빈민으로 조세때문에 자식을 판 사람은 관청에서 물어주어 그 (팔려간 자식)를 되돌려 주도록 하라(《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충 렬왕 22년 정월 旨).

- ② 요즈음에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드는 일이 매우 많다. 그 담당관청으로 하여금 그 文契가 없거나 속여서 위조한 자를 탄핵하여 죄를 주도록 하라. … 양반의 노비는 그 주인의 從이 따로 있어서 옛부터 公役과 雜斂이 없었는데 지금은 良民이 모두 권세가에 들어가서 官役을 받들지 않아 반대로 양반의 노비로써 대신하여 양민의 역을 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일체 금하게하라(《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충렬왕 24년 정월 敎).
- ③ 오래된 부채를 빙자하여 양인을 겁주어 노비로 삼아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전의 옑에 賤口의 役價를 1년에 5升布 32필 반으로 한 예에 따라서 계산하여 상환하고 모두 다 역을 면제하여 주십시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충목왕 원년 5월 整理都監狀).
- ④ 처음에 貞和宮主의 오빠가 승려로 桐華寺에 거주하였는데 양인을 속여 천예를 삼으니 늘어나 천수백 호에 이르렀다. (王)玮 등이 그들을 대대로 부리 니 整治都監이 사리를 밝혀서 양인으로 돌아가게 하였다(《高麗史》권 91, 列傳 4, 宗室 2, 忠烈王子 江陽公 滋).
- ⑤ 都僉議使司가 啓奏하여 '흉년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도 진휼하여 살릴 수가 없으니 양인으로서 능히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이들은 부유한사람으로 하여금 먹이게 하고 부리기를 당대에 그치도록 하며 사람이 노비를 두었지만 능히 먹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를 먹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구히노비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양민을 천예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여그 啓書를 불태웠다(《高麗史》권 39, 世家 39, 공민왕 10년 5월 갑술).
- ⑥ 權奸의 親黨이 兩府에 포진하였으며 중외의 요직이 사사로운 인연 아님이 없어서 권세를 오로지하여 방자하게 관작을 팔고 남의 토전을 탈취하여 산야를 점령하고, 남의 노비를 탈취하여 천백으로 떼를 이루고 陵寢・宮庫・州・縣・津・驛의 전토에 이르기까지 점거하지 않음이 없었다. 주인을 배반한 노예와 賦稅를 도피한 양민들이 淵藪같이 모여들어서 안렴사와 수령이 감히 징발하지 못하였다(《高麗史》권 126, 列傳 39, 姦臣 2, 林堅味).

이 기록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양인 농민 가운데에 노비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말하여 준다. 사료①은 생활이 어려워 자식을 아예 노비로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⑥에서는 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일반 양인 농민이 권세있는 이들의 농장에 상당수가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②에 의하면 그 수가 많아서 양반노비들이 양인 농민이 국가에 져야할 공역·공과의 부담을 대신 맡고 있을 정도였다. ④에서 왕유 등이 대대로 부렸다고 하는 천수백 호의 양인들도그들의 농장에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물론 권세가에 모여든 양인들이 곧바

로 노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왕유 등이 부린 천수백 호의 양인들도 속아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노비가 된 것이 그들의 자의가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자의건 타의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노비가 되기를 바라 는 양인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 었던 불가피한 여건이 더 중요하다. 속이는 줄 뻔히 알고 있지만 가난한 그 들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피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⑤에서 가난하여 살 수 없는 이들을 당대에 한하여 부리게 하는 조건으로 부유한 사람이 먹여주게 하자고 한 제의에 대해 공민왕이 그렇게 되면 남의 노비를 만들어 주는 조 치가 된다고 하여 반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난하여 굶어 죽을 상황에 놓 인 양인은 오직 그를 먹여주는 사람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이가 그렇 게 많을 수가 없었으리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③에서도 부채를 가지고 양인을 노비로 삼는 일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국가에서 그들 의 빚을 탕감시켜줄 수 없는 바에야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 채권자의 집 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의도대로 마침내는 그의 노 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일반 양인 을 권세가가 억압하여 자기의 노비로 만드는 일도 있기는 하였겠지만. 억압 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을 것이다.

일반 양인 가운데 노비로 전략하는 예들이 흔히 있었음을 보아 왔지만,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이유도 그러한 경제적 열악성에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양인들 가운데에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분을 위로 상승시켜 관직자가 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신분이 떨어져 노비가 되는 이들도 있었다는 말이 된다. 신분을 상승시키는 양인들은 대체로 부유하였다. 일반 양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은 재화를 가지고 신분을 높이는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반면에 가난한 이들은 가난 때문에 신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고려 전기에도 있었지만, 후기사회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일반 양인에게 있어서 신분을 높이는 것과 그것을 내리는 일 가운데 어느쪽이 더 현저하였는지는 지금 갑자기 단정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렇게 눈에띄게 나타난 신분이동이 신분제의 근본을 크게 흔들어 놓는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고려 후기에 와서 지배세력은 전례없이 자주 바뀌어 갔다. 문신에서 무신으로, 무신에서 권문세족으로,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바뀐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지배세력의 변화가 양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 사이의 신분이동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양인과 천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 사이에 나타난 신분이동이 반대로 그러한 지배세력의 교체를 촉진시켜 주었다는 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려 말에 와서 조선의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게 되는 신진사대부의 대두도 결국 이러한 전례없는 신분이동의한 결과였다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양인과 천인의 신분이동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는 우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성계 일파의 집권과 양인 · 천인의 신분고정

고려 후기 이래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인과 천인들의 신분이동은 고려 말 李成桂 일파가 집권하면서부터는 크게 둔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보이는 일련의 사료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①-② 公私奴隷・州驛吏・工・商・雜類로서 외람되이 관직을 받은 자는 청컨대 憲司로 하여금 관품을 논함이 없이 모두 그 직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④ 옛적에는 백성의 나이 16세이면 丁이 되어 비로소 國役에 복무하게되고 60세에 老가 되어 役을 면하였습니다. 주・군이 매년 計口籍民하여 按廉에올리면 안렴은 戶部에올려서 조정에서 징병하고 調役하는 일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는데 근래에 이 법이 한번 무너지매 수령이 그 쌨의 호구를 알지 못하고 안렴이 한 도의 호구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지금 마땅히…전토의 많고 적음으로써 그 호를 編籍하되 상・중・하로 삼고 또 호를 양・천으로나누어 수령은 안렴에게 바치고 안렴은 版圖에게 바치게 하여 조정에서 무릇 징병과 조역할 때에는 이에 의거하게 하십시오…④ 禾尺과 才人이 갈고 심는 일을하지 않고 앉아서 백성의 조세를 먹고 있으니…원컨대 이제부터는 그들이 거주하는 주・군에서 그 인구수를 헤아려 그 籍을 만들어 流移할 수 없도록 하고 빈 땅을 주어서 부지런히 씨뿌리고 갈게 하여 평민과 더불어 같게 하여 주

십시오(《高麗史》권 118. 列傳 31. 趙浚 창왕 즉위년 趙浚條陳時務).

- ② 諸色工匠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은 錢穀으로써 상을 주고 職事는 허락하지 마십시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공양왕 원년 2월 諫官上疏).
- ③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드는 것은 和氣를 感傷케 하는 것이니 王旨가 있은 뒤부터 한 달을 한하여 모두 방면하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엄중히 다스린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충목왕 원년 2월 敎).
- ④ 人物推辨都監이 奴婢決訟法을 정하여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는 것은 이제부터 律에 의하여 禁斷한다…'고 하였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공양왕 4년).
- ⑤ 노비를 放役하는 자가 뒤에 폐단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방역시키는 자가 있으므로 그 자손이 役을 맡지 않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冒名하여 직을 받고 良族과 결혼하여 명예를 어지럽히고 혹은 本主를 모해하고 官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소송을 감히 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애정과 공로를 논하고서 방역한 노비는 다만 그 일신에게만 그치고 자손에게는 미치지 말게 하소서(《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공양왕 4년都官上書)

사료 ①-⑦에서 조준은 노비·공장·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향리나 잡류까지도 관직에 나아간 자는 모두 그 직에서 축출하고자 건의하였다. ②에서도 어느 간관은 공장이 공이 있으면 전곡으로 상을 주고 관직에 제수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한 요구는 노비·공장·상인향리·잡류가 어떤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견해는 더 나아가 각 신분층은 저마다의 신분상의 지위를 지키면서 대대로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양인이 노비로 전략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③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양인이 억압으로 천인이 되는 것을 엄중히 금한다는 국왕의 교서도 역시 당시 개혁파들의 그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양인은 양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가 할 일을 세습적으로 해야만 하였다. 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천인이 양인이 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④에 보이듯이 천인이 양인과 혼인하는 것을 엄금한 것이나, ⑤에 나타나 있듯이 주인이 노비의 공을 인정하여 자애심을 가지고 해방시키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그 노비 당사자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都官의 견해는 모두 그와 관련이 있는 사실들이다. 천인도 양인이 그러하였듯이 천인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 둘 사이의 경계가 더욱 뚜렷하고, 그것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 말의 개혁론자들은 호적제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즉 고려 후기 이래로 문란하여진 호적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준은 호적제도에 있어서 중요한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경작토지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상·중·하의 3등급으로 編戶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인인가천인인가를 기준으로 分戶하라는 점이다. 이 호적제도의 정비는 신분이동을 금지·억제하여 신분제도를 고정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긴요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화척과 재인을 호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도 중요하다(①-ⓒ). 그들은 본래 양인이라고는 해도 일정한 곳에서 생업을 하고 살지 않았고 또 호적도 없이 사회에서 천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조준은 그들에게도 일정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하며,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거주지에서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조준의 의도는 그들의 신분상 지위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고정시켜 놓자는 것이었다.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양인과 천인의 신분이동은 이전보다 매우 커졌다. 양인과 천인의 상층부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되었고, 반대로 그 하층부는 신분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전에 비하여 더 많이 부딪쳐야 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오래 지속되어 온이러한 신분의 이동이나 유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양인과 천인 사이의 경계를 엄격하게 하면서 각 신분층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봉쇄하려는 시도가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구되었기 때문이다. 양·천의 구별과신분의 고정에 주로 바탕을 둔 신분제도의 새로운 정비작업은 役制의 정비노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일은 이성계를 펀드는 조준과 같은 개혁론자들에 의하여 집요하고도 진지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갔던 것이다.

3) 향리 및 양반귀족의 신분동요

(1) 향리의 신분동요

고려 후기에 나타난 향리의 신분동요는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향리의 중앙관인으로의 진출을 법제적으로 보장한 科擧・胥吏職・軍職・雜職 등을 통한 신분상승의 경우이다. 즉 토착 중간 지배계층인 향리신분에서 양반관료신분으로의 상승을 말하는 이른바 士族化・士大夫化현상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력 향리층이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留鄉品官層으로 전이함에 따라 나타난 役의 공백을 대신 담당해야 했던 잔존 향리층의 역의 苦役化와 이를 제도적으로 편제시키는 방향에서 상대적인 자기 신분상승의 도대화과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두 과정은 고려 전기 이래로 계속된 정치·사회적 변동과 각 지배계층간의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에보장된 신분변화와 격동하는 현실상황에 따라 실제적으로 대두된 여러 현상이 그 내용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서 귀족사회에서의 향리의 위치와 고려후기에 있어서 향리층의 신분상승 및 계층분화를 살펴보자.

가. 귀족사회에서의 향리의 위치

고려 귀족사회에서의 향리층은 관직체제상 중앙관인층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조직에 따라 기층민 통치의 일선을 담당하는 東屬職이었으며, 그 법적 지위가 중앙 관인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중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지배적속성을 가진 존재였다. 이러한 향리의 사회적 지위는 그 연원이 나말 여초의호족적 전통에서 이루어졌다. 즉 호족적 성격을 가졌던 지방세력이 향리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고려 향리의 신분적 지위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건국에 참여한 호족세력은 중앙 통치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과 지방에 남아 기존의 향촌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지방에 침투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에서 독자세력을 구가하던 토착세력은 중앙의 통 치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즉 군소호족들은 고려 초 중앙관료화한 대호족과 구분되어 지방에 남아 중앙의 수취와 力役 동원의 담당자로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신분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리층은 새로운지배신분층으로 국가 운영의 관인층이 형성됨에 따라 그 범주에 포함되면서그 말단인 吏職에 편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향리층은 초기 군소호족층을 그 계층의 바탕으로 하면서 관인층으로서의 활동에 일반적 자격을 가진 사회계층이었다.

한편 고려 향리는 고려시대의 사회계층 가운데 양인신분으로서 중앙관료 군의 관인층에 대응하여 중앙 各司의 말단 행정실무자인 서리나 하급장교 등 고려 통치체제상의 하급직역 담당자와 비교되며, 중앙에서 파견된 외관의 예하에서 지방행정의 실무담당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향리의 행정실무의 대상은 생산담당자인 일반 백성이었다. 향리계 층은 이들의 역역 및 조세징수 등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중앙으로부터 부여된 役務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와 지배층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새로운 관료체제적 신분분화에 따른 향리계층은 대략 현종 이후 고려의 중앙관료 집단이 문반을 중심으로 귀족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지방토호적 성격의 존재로 중앙과의 연계관계가 약화되면서 그 예하에서 신분적 속박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종 9년(1018)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향리의 정원과 公服이 제정되고, 지방관의 직무로서 향리에 대한 감찰이 제도화되자 기존의 지방세력으로서의 고유성을 상실한 채 지방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위로 전략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의 제도적 정비가 거의 완성되는 문종 때를 전후하여 안정기에 들어, 향리체제는 9轉階의 승진규정이 마련되고 고려 관료체제 내에서의 향리의 위치가 일단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1)

물론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 만 중앙의 직접적인 통치력이 미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 앙 관인 지배층의 하부에 향리세력을 편제시킨 결과, 향리의 법적 지위를 중

^{1)《}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鄉職.

앙관인층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으로서 정착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격하된 향리의 법적 지위의 정착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세력을 회유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향리세력들의 중 앙진출의 문호를 열어 놓음으로써 이를 대신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향 리세력의 자제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과거를 통한 이들의 중앙관료 진출을 적극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 州縣軍의 장교로서의 기능을 가 지게 함으로써 무반으로의 입사도 가능케 하여 관료자원으로서의 향리계층 의 신분적 지위를 유지시켰던 것이다.2)

신분제 사회의 한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고려시대의 향리는 그들의 세력유지와 재생산을 위하여 이직의 세습과 동일 신분층과의 통혼 및 상향 통혼을 통하여 신분세습을 유지하였다. 《新增東國興地勝覽》善山都護府 人物條에 보이는 金宣弓의 경우를 보면, 고려 定宗 때 김선궁의 두 아들이 중앙에 있다가 큰 아들 文奉은 귀향하여 父의 출신 신분인 吏가 되어 지방세력으로 정착하고, 둘째 奉術은 중앙에 남아 侍中職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지방 호족으로서 출신한 부친의 세력기반을 유지하고자 장자로서 재지세력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세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대대로 선산지방의 이족으로 세습되어 벌족을 형성하였다는 사실도 세습성의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安東權氏世系》나〈南原梁氏族譜序〉를 통해서도 향리직의 세습형태를 엿볼 수 있는데, 고려 초부터 호족의 뒤를 이은 지방의 향리집단은 대부분 고려 전시대에 걸쳐 세습의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향리직의 세습은 '版籍世皆爲州吏'・'世爲戶長'등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지역 즉 그들의 본관지역에서 집단을 이루어 인근지역 향리집단과의 통혼권을 유지하면서 그 지방내 일정한 지배신분적 속성을 유지하였다. 이들은 향리층 상호간의 혼인 및 지방 사족과의 통혼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렇게 향리들은 일련의 통혼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고유한 신분성을 유지하면서 신분의 상승을 꾀하였으며, 고려 전시대에 걸쳐 일반 백성과의

²⁾ 羅恪淳,〈高麗鄉吏의 身分變化〉(《國史館論叢》13, 1990), 151~152\.

신분 격차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나, 향리의 신분상승

가) 배 경

고려 후기는 어느 시대보다도 집권세력의 교체가 빈번한 시기였다. 의종 27년(1170) 무신의 난으로 무신정권이 성립되어 權臣의 교체가 빈번하였고, 몽고의 침입과 원 간섭기를 겪으면서 자주적인 개혁정치의 추진과 좌절의 번복을 체험하였다. 더욱이 공민왕 이후 반원 개혁정치와 왕조의 교체를 맞이하는 등 시대적 변화가 무쌍하였다. 이러한 시대정황의 흐름은 당시대의 정치·사회적 중심세력의 교체를 가져왔으며 그 상황 하에서 지방세력인 향리층의 존재는 중앙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인적 자원집단으로 주목되었다. 무신정권에 의해서 기존의 문벌귀족이 도태됨으로써 무인들만으로 통치체제를 구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인층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향리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층으로 유학적 지식과 행정담당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들은 무신정권의 행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향리출신의 이들은 점차 중앙 정치무대에서 꾸준히 기반을 다져 나갔으며 정치지배세력으로서의 신진사류층으로 성장하여 갔다.

다시 말하면 문신귀족중심의 문벌통치를 종식시킨 무신정권이었으나 무인들만의 통치로는 국가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른바「庚寅의 亂」으로 "文冠이면 胥吏라도 종자를 남기지 말라"하며 문신을 살륙하고, 또 명종 3년 (1173)에 일어난 金甫當의 亂을 계기로 문신에 대한 2차의 대규모 학살이 저질러지고 무신의 전횡은 일시 행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이에 국가운영을위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 관료기구를 원활하게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행정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로 지방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해 온 항리층의 중앙진출이 전보다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더욱이 무신정권기 對金外交關係는 무인들의 식견으로는 어려웠던 것이다. 무신들은 문신정권을 타도하고 국왕을 멋대로 폐위하면서도 다음 왕을 왕립하여 왕위를 존속시켰다. 이러한 왕의 교체에 있어 금나라의 승인을 받 아야 했기 때문에 그 왕위교체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는 문인관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신정권의 외교·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신정권은 의종 때 소외되었던 문신을 등용하고 일부 문벌귀족을 회유하여 새로운 관인을 확보하였다. 특히 독자적인 집권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진사류를 등용하였다. 즉 과거를 자주 실시하고 합격자수를 증가시켰던 것인데,이에 편승하여 지방향리 자제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귀족정치의 난숙기라 할 수 있는 예종·인종·의종 3대 65년간에 설행된 과거횟수는 44회로, 취사인원이 1,248명에 달해 1년에 19.2인을 급제시켰다. 이에 비하여 무신집권기인 명종부터 고종 때까지 89년간에는 57회 과거 시행으로 1,974인을 급제시켜 1년에 22.2인을 취사시킨 셈이 된다. 따라서 무신정권기 과거 설행과 취재가 귀족정치시대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³⁾ 이러한 사실은 곧 무신정권 하에서 새로운 문신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시 문신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지방에 토착하여 대대로 행정업무를 관장하였고 문학적 교양을 쌓았으며 지방 주현군을 지휘하였던 향리층의 존재가 주목되었다. 곧 향리집단은 당시문신으로 진출하는 가장 유력한 인적 자원집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무신정권의 성립으로 미천한 출신의 무신들이 권좌를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기존의 신분관념이 와해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농민·천민의 난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신정권은 지방에서 지배적 신분층을 이루고 실제 통치력을 발휘하였던 향리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향리층이 중앙에 진출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무신정권과 향리세력과의 연계는 외관 임용에 문무교체제가 시행되어 무신이 지방관에 임용됨으로써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최씨정권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진문인의 양성과 등용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李仁老·李奎報·琴儀 등은 崔忠獻의 문사우대로 그의 측근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문인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崔瑀는 政房과 書房을 설치하여 향리출신 문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³⁾ 閔丙河, 〈高麗武臣政權에 對한 一考〉(《史學硏究》6, 1959), 61~64쪽.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계속적인 문사 배출의 교량적 역할을 하게 하였다. 최 씨정권의 문사우대정책으로 「文武雙全」의 통치조직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만큼 지방세력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다. 이로써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신진문인층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권의 창출에 이은 원만한 체제운영 담당자로서 신진관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당시 향리층이라는 사회집단이 중앙관료집단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향리집단 자체내에서는 계층분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한 사회계층의 신분유동은 먼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그를 유지하고 축적하며 나아가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추구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때, 그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향리층은 신분상승을 꾀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지방 토호세력의 성격을 지닌 향리층은 그들의 지배신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를 견고하게 가져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고려조에 있어서는 일정한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공식적인 녹봉과 전시과체제에 따른 직전으로서의 토지지급, 그리고 지방관아에 주어진 公廨田柴가 있었다. 또 호족적 전통에 따른 功蔭田 柴로서의 永業田, 신라의 丁田의 전통을 이은 민전으로서의 영업전, 별도의 賜田, 기타 토지의 겸병과 수탈·개간 등에 의한 사전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향리의 경제기반은 토지소유였다. 고려 초 전시과체제에 있어서 향리에 대한 구체적인 직전 지급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나 "퇴역한 戶長에게 직전의 절반이 지급되었다"든지, "州縣長東들이 100일간의 疾苦가 있으면 京官의 예에 따라 직을 파하고 직전을 거두어 들였다"는 기록을 통해 향리 일반에 대한 직전의 지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물론 이 직전은 경기지역의 전시과 대상 토지는 아니었고 해당 지방의토지를 말하고 있음은 향리의 토착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향리층은본래 지방호족으로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이러한 토지소유 형태는 국가의 체제정비에 따라 상당한 양의 토지가 勳田으

^{4)《}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로 사급되어 종전의 지배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향리들에게 전승되었다. 즉 신라 말부터 지방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 왔던 기존의 토지소유가 추인되어 존속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지세력으로서의 향리는 鄉役의 세습과 더불어 기존의 토지소유에 대한 우선적 소유권을 획득하여 초기 토호세력의 사유적 경제기반이 되었던 민전을 영업전의 성격으로 변화시켜 세습토지화함으로써 그들의 중추적인 경제적・물질적 기반을 이룩하였다.5)

직전과 전통적 소유의 토지 이외에 비록 일부 향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鄕職·武散階의 수혜에 따른 전시의 지급과 同正職·其人役, 기타 軍職을 가짐에 따른 토지지급 또한 향리의 경제기반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외에도 국가 통치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중앙 권세가들이 토지를 겸병할 때 지방관이나 향리들과 결탁하여 남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탈하거나 고리대를 경영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 때 향리는 토지겸병의 말단실무자로서 頁役價 정취 등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수탈방법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부를 축적한 일면도 있었다.6)

이러한 향리의 경제적 기반의 안정은 중앙관료로의 진출에 있어 경제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향리세력은 家業田을 바탕으로 한 토착성과 직역에 따른 경제력의 우위성 확보를 통하여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예를 들면 향리층은 자영농민적 토지소유자로서 그들 자의로처리할 수 있는 所耕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고려 후기에 발달한 중소농장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향리들은 그들의 신분상승 및 免役을 위해 이 소경전을 권세가에게 투탁하였던 것이다. 기이는 비록 그들로서는 일시적인 토지의 상실이지만 투탁 후의 획득된 권세 내지 신분상승을 배경으로 다시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하였다.

한편, 고려 후기에 있어 전시과체제의 붕괴로 인한 사전의 확대 및 농장의 발달과 지주·전호제의 성행은 향리로 하여금 중소지주적 자영농민으로

⁵⁾ 李佑成, 〈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3~4\.

^{6)《}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借貸.

^{7) 《}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서의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중앙에 나아가 당시 대농장 소유주인 권문세족에 대응하는 하나의 공동적 이익집단인 신진사류 집단을 형성하게 하였다. 즉 경제적 이익의 갈등을 매개로 신분상승을 꾀하는 욕구를 집단화하여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향리는 호족적전통을 가진 토착성을 배경으로 지방에서 행정력과 경제력을 겸비함으로써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고려 후기 지방교육의 향상과 신유학의 수용 또한 향리층 신분상승의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신란을 계기로 기성 관인과 문인들의 낙향생활에 따른 지방교육의 육성은 그 교육대상의 중심이 지방유력자인 향리층이라볼 때 이들의 上京從仕와 在地品官化를 촉진시켰다. 무신란 이후 고려사회는 극도로 문란하였으며 새로운 정권수립에 위협을 느끼고 정치적인 화를 피하여 스스로 낙향하거나 혹은 파직·유배당하여 지방에 정착한 관인층이 생겨났다.8) 그들은 낙향 후에도 그들의 학문적·족적·경제적 기반에 따라 지방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사사로이 지방교육에도 힘써 향리층의과거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유학의 수용은 기득권을 가진 권문세족이 기존 통치이념을 배경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것과 대응하여, 사회개혁을 위한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정착해 가면서 이를 수용한 신진사류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하였다. 따라서 신진사류로 등장했던 많은 향리층은 신유학을 수용하면서 시대상황에 편승하여 중앙 진출을 꾀하였다.

다음 고려 후기 향리의 신분상승의 배경으로 찾은 전쟁에서의 군공과 이를 통한 중앙 진출을 들 수 있다. 무신정권 성립 이후 趙位寵의 난, 대몽항쟁, 三別抄의 항전, 홍건족·왜구의 침입 및 각종 지방민란 등으로 이어진고려 후기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한 주체는 바로이들 향리층이었다. 아울러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 향리층은 신분상승의 계기를 포착할 수 있었다. 즉 향리는 주현군의 장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전란이 많았던 시대상황에서 上京侍衛・選軍應募・地方軍引率赴戰 등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군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논공 결과에 따라

⁸⁾ 朴恩卿,〈高麗後期 地方品官勢力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44, 1984), 51~56~56.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

나) 신분상승의 유형

고려의 신분체제는 국가의 운영체제에 종사하는 일종의 기능 즉, 役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이 역은 혈연집단을 단위로 부과되었고 대대로 세습되었다. 향리에게 주어진 鄕役 역시 세습적 성격을 띠고 존속되었다. 그러나 고려 신분체제의 원칙은 그 이면에 신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구성의 복합적인 환경을 운영해 나아갈 능력있는 자의 필요성은 곧 원칙적인 역의 고정이나 신분의 세습을 동요케 하였던 것이다. 특히 향리층의 중앙으로의 진출은 문반 형성의 한 요소를 이루면서 부단히 중앙관인층을 보충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런데 고려 향리가 관인이 되는 길은 일정한 교육과정과 문학적 실력에 의해 과거에 급제하는 방법과, 武弁에 의한 무반으로의 진출 및 吏科로의 진출방법 등이 있었다. 먼저 과거를 통해 향리층이 중앙관인으로 진출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사회에 있어서 중앙귀족과지방향리는 그 혈연적 기원을 같이 하는 존재였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고려 건국 초 호족세력으로서 형제간에 중앙관인과 지방향리를 자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음은 그 후 지방세력의 중앙 진출에의 문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여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고려 초의 정치적 변동이 일단 정비된 성종 때의 지방 향리자제에 대한 교육 강화는 바로 이들을 중앙 관인층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배경이되었다. 이것은 관인의 자질을 육성하고자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학적 실력을 시험하는 과거제도에 의한 향리의 중앙 진출은 가장 보편적인 신분상승의 방편이 되었다. 특히 향리층은 중앙관직에 蔭敍로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분상승은 주로 과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고려왕조에서는 향리의 과거 응시자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그들의 관료 진출을 보장하였다. 《고려사》選擧志 科目條에 보면 향리층 가운데 副戶長 이상의 자손과 副戶正 이상의 아들에게 鄕頁의 신분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주현의 인구수에 따라 1,000丁 이상에

서는 3인, 500丁 이상에서는 2인, 그 이하에서는 1인씩 향공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1,000정 이상의 주현의 경우 호장 8인, 부호장 4인, 兵正 2인, 倉正 2인 등의 편제로 되어 있어 향공을 배출할 수 있는 향리군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공은 문음의 혜택이 없고특별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界首官의 선발을 통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신분상승의 방법이었다.

한편 향리들은 고려시대 입사직인 胥吏職으로 나아가 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으며, 서리직 재임중에 과거에 응시하여 등제함으로써 達官하기도 하였다. 향리의 경우 3子 중 1자의 從仕가 國制로 인정되었고,⁹⁾ 이 종사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서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향리자제가이 과정을 거쳐 광범위하게 관직에 나아갔음을 추측케 한다. 따라서 향리가서리직을 통해 문반으로 진출하는 것은 거의 제도화되어 그들의 신분 상승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숙종 때 등제한 李永의 경우를 볼 때, 그는 호장으로서 京軍에 나아간 부친의 영업전을 계승하기 위하여 서리로 나아갔으며10) 寧越郡吏 嚴守安, 茂松人 尹諧 등도 서리로 출사하여 달관하였다.11) 이들은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현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거를 통한 중앙 진출이 향리의 신분상승을 보장받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拓俊京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谷州東의 자손으로 서리직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숙종이 鷄林公으로 있을 때 그의 從者가 되었으며 그 인연으로 추밀원의 서리직인 別駕에 임용되었다가 이어 군공으로 달관한 자이다.12) 여기서종자란 곧 王府의 給使와 丁東일 것으로, 척준경은 군공에 의한 달관에 앞서하급 잡류직 및 서리직을 거쳐 무반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그가 향리의 자손으로 먼저 서리직을 구하고자 했음은 결국 향리의 서리직을 통한 중앙진

^{9) 《}高麗史》 권 106. 列傳 19. 嚴守安.

^{10)《}高麗史》 권 97, 列傳 10, 李永.

^{11) 《}掾曹龜鑑》 권 2. 觀感錄.

^{12)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叛逆 1, 拓俊京.

출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향리의 서리직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其人의 존재를 연관시켜 볼수 있다. 즉 향리의 자제 혹은 중견 향리층이 직접 選上되어 중앙 吏職에 해당하는 제반 잡역에 종사하고 그 신역에 대한 대가로 입사의 길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기인을 통해 입사직의 서리직을 거쳐 중앙관직으로의 진출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其人選上 규정에 따르면 주현의 丁數에따라 선상된 기인은 일정 기간 입역하면 同正職을 가하고 역을 마치면 加職함으로써 제도적인 입사의 길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기인제는 군현의 향리출신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의하나였다.

다음으로 향리들은 지방 주현군 및 주진군의 장교직을 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말미암아 군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14) 따라서 향리세력은 시대상황에 따라 군직을 통하여 중앙관직으로 나아가거나 군공을 통하여 출사하기도 하였다. 즉 향리들은 주현군의 지휘자로서의 여건이 주어짐으로써 경군에 나아가 무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신분상승의 방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이영의 부친 仲宣은 安城戶長으로서 경군에 선군되고 있으며, 恒陽人 咸有一은 서리로 나아가 군공으로 등사하여 尚書左丞에 이르렀고, 泰山郡人 田寵文은 역대 郡司戶의 가계에서무반으로 나아가 대장군에 이르고 있다. 또 寧州人 宋子淸, 天安府人 申甫純, 咸陽人 朴康壽의 경우도 향리가계에서 출신하여 무반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고려시대의 향리들은 武弁의 호족적 전통과 주현군의 장교 역할을 통하여 군직에 의한 중앙 무반으로서의 신분이동이 상당히 활발하였다.

그 밖에 고려 전기에 보이는 사례이지만 勤幹·淸白·夤緣攀附 등 특별한 경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함으로써 신분상승의 계기를 이루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土山小吏인 李周憲은 성종 때 근간으로 출세하여 監察司憲이 되었다가 후에 右僕射에 이르렀다.¹⁵⁾ 郭尚은 小吏 출신으로 선종이 잠저에 있는 동안의 인연으로 궁궐에 출입하면서 출사하게 되었으며 숙종·예종조에 걸

^{13)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其人.

^{14)《}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15) 《}高麗史》 권 94, 列傳 7, 李周憲.

쳐 내외 요직을 역임하다가 참지정사에까지 올랐다.16) 李俊陽은 직접 全州吏에서 시작하여 일의 처리능력과 청백함으로 출사하였는데 中書侍郎平章事에이르렀다.17) 이러한 경우는 고려 전시기에 걸쳐 비록 신분제사회라 하더라도인간사회 구성상의 예외적인 한 부분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 왕실 및 귀족자제들이 활동하였고 상층사회의 일부분을 형성하였던 불교계에도 향리의 자제들이 大禪師・僧統・王師・國師 등 고위 승직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향리세력의 직접적인 신분상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향적 신분이동으로는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智光國師 海麟, 僧統 知侮, 大禪師 祖膺, 眞覺國師 慧諶, 圖妙國師 了世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군리・호장・향공진사의 자제로 왕족・귀족출신 승려들과 대등한 지위를 지녔다. 이는 향리층의 승려직을 통한 신분적 지위 상승의 특수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향리세력은 고려사회가 안정되고 문벌이 형성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분상승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서리직·군 직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중앙에 진출하여, 신진세력으로서 문벌귀족과 병립하였다. 이것은 고려사회에 있어서 지방세력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로 지방세력의 기반을 가지고 중앙관료화하는 사회적 신분상승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것을 말해준다.

다) 사대부로의 성장

고려 말 지배적 중심세력은 권문세족과「能文能吏」의 기반을 가지고 출사한 신진사류 내지 신흥사대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신정권에 의해 중앙문벌귀족이 제거되고 지방 토착세력인 향리층의 중앙진출이 뚜렷해졌다. 그후 원과의 관계를 가지며 고려 말기에 실권을 장악한 권문세가 가운데는 이미 지배세력으로 중앙에 진출한 경우도 나타났다. 또 신흥사대부 역시 상당수가 향리출신으로 달관한 가계에서 등장하였으며 이 사대부는 조선 양반관

^{16) 《}高麗史》 권 97, 列傳 10, 郭尚.

^{17) 《}高麗史》 권 17, 世家 17, 의종 즉위년 9월.

료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다.18)

그러면 여기서 고려 후기의 정치·사상계의 주요 인물의 행적을 통해 향 리층의 사대부로의 성장 내용을 살펴보자.

무신정권 특히 최씨정권 때에는 문인우대정책으로 지방의 향리세력들은 능문능리의 자격으로 중앙 관인층에 진출하여 사족화되기도 하였다. 당시 최 씨정권 밑에서 文才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신진사류 중의 한 사람으로 李奎報를 들 수 있다.19) 그는 명종 20년(1190)에 과거에 급제하여 신종 3년 최충 현에 의해 權補直翰林에 발탁되어 그 후 국자좨주·보문각학사·문하시랑평장사를 역임하였다. 그런데 이규보의 가계는 驪州 李氏로 증조 李殷白은 향직 中尹을 가졌던 토착세력이었고 조부는 檢校校尉 和이며, 부친 允綏는 호부낭중으로 아버지대에 이르러 처음 실직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규보는 향직을 가진 토착향리 가계에서 출신하여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하였으며 그 후손들도 계속되는 등제로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즉 아들인 涵은 지주사에 이르고, 손자인 益培는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충렬왕 때 版圖判書를 거쳐 재상의 지위에 이르렀다.

또 고종 때 추밀부사를 지낸 蔡靖은 본래 陰城縣吏로 과거에 등제하여 사 족화하였다.20) 채정은 그의 청렴과 덕망을 배경으로 慶州·永川의 민란을 진 정시킨 인물인데 大司成·同知貢擧를 역임하였던 그의 행적에서 신진사류로 서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역시 고종 때 등제한 朱悅도 綾城縣吏를 세습한 가계에서 출사하였는데, 그의 조부 潛은 호장이었고 부 慶餘는 현리로서 恩賜科에 올랐다.²¹⁾ 知都僉 議府事에까지 오른 주열은 문장이 뛰어났으며 權貴에 아부하지 않고 청렴하

¹⁸⁾ 무신집권기 이래의 能文能吏의 文士와 성리학을 수용하여 불교를 배척하고 고려 말 개혁의 주체가 된 신진사대부와는 동질성이 적어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鄕吏集團이라는 사회계층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학문·사상적인 측면보다는 신분적 출신과 중앙 관료 진출에 따른 제도적 보장 등 정치·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기반으로부터 發身하여 士大夫・世族 등을 형성하고 계속적인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전체적인 흐름을 전제로 하여 구별 또는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¹⁹⁾ 李蘭暎 編,〈李奎報墓誌〉(《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化社, 1968), 203\.

^{20) 《}高麗史》 권 103, 列傳 16, 蔡靖.

^{21) 《}掾曹龜鑑》 권 2, 觀感錄.

기가 한결같아 달관하여도 치부하지 않았다. 즉 가산을 돌보지 않고 높은 벼슬에 있어도 스스로 寒土와 같이 하여 公康淸白한 신진사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아들 朱印遠은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달관하고 있으나, 왕의 嬖幸으로 백성들을 탐학하여 선대의 신진사인상을 혼탁하게 하였다. 어쨌든 주열의 가계는 지방 향리가계로부터 무신정권하에 과거로 출사하여 사족화하였으며 그 후손들 역시 과거로 달관하여 신흥사대부층을 형성하였다.

한편, 晋州牧 姜彰瑞의 경우는 향리자제의 과거를 통한 起家와 그 후손의 명문화 및 신진사인층의 孝意識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²²⁾ 즉 강창서는 향리의 자제로서 향교에서 수학하여 희종 때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과거응시는 부친의 죄를 방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효에 대한 당시 신진사인의 사상은 성리학적 효에 대한 관념과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창서의 기가를 계기로 여말 晋州姜氏는 그 족세가 번창하였으며 그 후손 姜蓍 이후 최고 문벌을 자랑하기에이르렀다.

이렇게 무신정권 하에서의 향리출신 신진사류들의 활동을 보건대 권귀에 아부하지 않고 청렴한 일면을 지닌 일군의 인물상이 부각된다. 나아가 이러 한 일면은 뒤로 이어지는 여말 선초의 사대부의 전형과 연계시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신진사류 가운데는 무신정권의 측근에서 정방 및 서방 등 권력부서에 적극 참여하여 정권주체의 총애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琴儀는 奉化縣人으로 삼한공신 容式의 후예로 명종 14년에 등제하여 최충헌의 측근이 되어 華要職을 역임하였다.²³⁾ 그런데 그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 淸道監務를 지낼 때는 청렴하고 강직하여「鐵相公」이라 칭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과거에 오른 인물로서 초기 관직생활에서 청렴한 士類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충헌을 아부로 섬겨 2學士·3大夫를 겸하고고종 때는 문하시랑평장사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신진사인이 권신의 비호를 받아 세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변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2)《}新增東國輿地勝覽》 권30, 晋州人物.

^{23) 《}高麗史》 권 102, 列傳 15, 琴儀.

또 愈千遇는 長沙縣人으로 고종조에 급제하여 정방에 참여하였다. 그는 권세가에 뇌물을 바치는 등으로 아부를 하였으며 최이의 門客이 되어 樞要職에 나아가 뇌물을 받아 치부하고 전주를 맡아 친지를 발탁하여 주위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²⁴⁾

이상과 같이 무신정권기의 향리출신 신진사류들은 관계에 진출하여 정방 등에 참여하여 전주를 담당하고, 화요직을 겸임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청렴결백한 사대부로서의 표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무신정권기의 향리출신 신진사류들이 중앙 정치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존재여건은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이들 신진사류계층 전체의 신분적 지위상승 형태는 아직 미숙했던 것으로보여진다. 즉 무신정권이 통치체제를 운영하면서 신진문인의 필요에 따라 보충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아직은 정권주체에 편승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권주체나 기존 세력권에 대응한 정치집단으로 성장하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향리출신의 신진사류의 진출은 다음 시대로이어지면서 신분상승의 추세를 진작시키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다시 말하면,무신정권기에는 향리출신 신진사류들이 아직 확고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으나 同系出身 세력간에 공동체적 정치의식을 키워나가는 토양을형성시켜 나갔다고 하겠다.

이렇게 무신정권 이후 계속 성장한 능문능리형의 신진사류층은 원간섭기에도 꾸준히 성장·발전하여 일군의 정치개혁세력으로 대두하여, 對元關係가 전개되면서 부원적인 권문세족이 새롭게 등장하자 이들과는 대립되는 정치성향을 띠었다. 물론 권문세력이 「宰相之宗」을 이루며 최고 지배세력으로 군림하였지만 정치실무에 밝은 능문능리형의 官人群은 그들을 인식하면서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조정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대원관계를 배경으로 권세를 차지한 세력집단을 중심으로 적체되는 사회·경제적 모순과 이에 대한 고려왕권의 개혁 시도는 고려 후기사회를 끊임없이 변모케 하였다. 따라서 충선왕·충목왕이 제도개혁을 통해 새로운 통

^{24) 《}高麗史》 권 105, 列傳 18, 兪千遇.

치질서를 만들고자 하였을 때는 기존 권세집단에 대응한 개혁세력의 존재가 요망되었고, 이러한 개혁세력으로는 무신정권 이후 능문능리로 성장한 세력 들이 적격자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충선왕은 권문세력을 숙청하고 정방을 폐지하여 부원세력을 배척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때 정방을 대신해서 詞林院을 설치하여 전주·왕명출납 및 정치고문의 일을 맡게 하였는데, 이 사림원의 구성원은 모두 과거를 통하여 출세한 사람들이며 대부분 지방출신의 신진사류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선비의 기질인 「청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곧 사대부의 속성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충선왕의 개혁은 기존의 권문세력 중심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이 사대부정치를 지향한 것이었다.25) 물론 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고려 후기사회의 변화 방향과 그 주체세력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즉 지방세력 출신의 정치적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데 큰의의가 있다.

그 후 권문세력의 불법 토지점탈 등으로 사회질서가 와해되자 충목왕 때다시 개혁이 착수되었는데 이는 整治都監의 설치와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정치도감이 설치되어 다시 설치되었던 정방을 혁파하고 祿科田制度를 정비하는 등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을 주도한 王煦는 權溥의 아들로 충선왕이아들로 삼아 賜姓한 사람이었다.26) 그는 안동 권씨로 권문세력 출신이지만그 선대는 호장계 향리가계에서 기가하였으며 사대부적 기질을 가졌다. 따라서 충선왕의 사대부 정치와 연계성을 가지면서 충목왕 때의 개혁을 주도해나갔다. 그리고 이 정치도감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安軸・田禄生・白文寶 등신진세력은 과거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그 중 지방출신이 많이 있었다.27)

이와 같이 충렬왕 이후 원 간섭기의 고려왕권의 독자성 강화 및 부원권문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개혁정치의 추진과 더불어 신진사

²⁵⁾ 李起男,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歷史學報》52, 1972), 98~99\.

^{26) 《}高麗史》권 110. 列傳 23. 王煦.

²⁷⁾ 閔賢九,〈高麗後期의 權門世族〉(《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 50쪽. 金光哲,《高麗後期 世族層과 그 動向에 관한 研究》(東亞大 博士學位論文, 1987), 168~210쪽.

류들은 기존세력들에 대한 공통적인 대응을 갖는 정치세력으로 성장되었다. 나아가 무신정권 이후 착실히 성장해 온 이들 지방 향리출신의 신진문인들은 권문세족에 대응하여 정치·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공동체적인 관료군을 형성하였으며, 원 간섭기의 중심 정치세력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개혁정치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사대부 정치체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이 정치·경제·사상적으로 자기성장을 계속하면서 공동체적인 정치집단으로 등장하였음은 다음에 전개될 시대상황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한 것이다.

그러면 원간섭기의 향리가계 출신 신진문인들의 사대부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薛公儉의 경우를 보면, 그는 추밀부사 薛愼의 아들로 고종 때 서리직 都兵馬錄事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충렬왕 때 밀직부사를 거쳐 찬성사에 이르렀으며 충렬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그의 부친 설신은 郡司戶의 증손이며 외가 역시 군사호직을 가지고 있었다. 설신은 詩賦와 吏幹에 능하여 과거를 거쳐 내외 요직을 역임하였고, 공검은 여ㆍ원간을 왕래하면서 최고 관직에 올라 배향공신이 되어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혔다. 이어 공검의 아들 之冲 역시 찬성사에 올랐다. 따라서 淳昌 薛氏는 향리가계에서 출신하여 설신의 등제와 달관으로 기가하고 그 자손들이 현달함으로써 사족으로 정착하였던 것이다.28) 한편, 설공검의 경우는 청렴 정직하고 검소하였으니 이는 사대부의 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충선왕 때 성균좨주에 오른 禹倬은 증조·조부가 호장이었던 丹陽 향리가계의 후손으로 향공진사 天珪의 아들이다.²⁹⁾ 그는 충렬왕 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司錄·監察糾正을 역임하였는데, 특히 經史와 易學·卜筮에 능통하였고 程朱學에 조예가 깊었다. 말년에는 禮安으로 내려가 글을 벗하는 등 사대부생활을 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왕조에 들어 영의정에 추증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우탁의 경우는 향리가계에서 과거를 통하여 사족화하고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사대부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鄭可臣의 경우도 향공진사의 아들로 고종 때 등제하여 충렬왕 3년(1277)

²⁸⁾ 李蘭暎 編,〈薛愼墓誌〉(《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化社, 1968), 205\.

^{29) 《}高麗史》 권 109, 列傳 18, 禹倬.

보문각대제를 거쳐 화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의 성품은 정직·단엄하고 일의 처리에 정밀하게 살펴 공정성을 띠었으며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서생 과 같이 행동하였으니³⁰⁾ 사대부의 한 면모를 느끼게 한다.

충숙왕 때 檢校僉議政丞에 오른 李瑱은 사림원 설치에 따른 충선왕 개혁 정치의 4학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삼한공신 金書의 후손으로 그의 고조와 증조가 軍尹・甫尹 등 향직을 소유하고 있는 바 역시 향리가계에서 기가한 것을 알 수 있다.31) 한편, 이진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겨 제자백가에 정통하고 시문에 뛰어났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직한림원・대사성・정당문학 등을 역임하고 과거를 관장하였으며, 또 충선왕 때는 시정 적폐를 일소하자는 상소를 올려 그 실현을 보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당시 권문세족의 득세에 의한 사회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흥사대부적 개혁정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그의 아들인 李齊賢은 시중의 지위에까지 오른 대학자였다. 이처럼 慶州 李氏는 향리가계에서 출신하여 이진 이후 과거에 의해 사족화하여 명문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정치도감에 참여한 田祿生은 潭陽의 향리가계 출신이었다. 그는 충렬왕 때 담양호장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田得時의 후손으로 충혜왕 때 등제하였다.32) 이렇게 담양전씨는 전득시·전녹생 부자대에 이르러 향리직을 벗어나 과거를 통해 사족화하였던 것이다. 전녹생은 충목왕 3년(1347) 整治官이되어 부원세력인 奇三萬을 치죄하였고, 공민왕 때에는 이색 등과 더불어 鹽鐵別監의 폐단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우왕 때에는 북원 배척과 李仁任 주살을 청하는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그의 행적이나 동지공거·정당문학, 우왕의 사부 등의 관직을 통하여 그는 원 간섭기의 신진문인세력으로서 권문세족과 대립하면서 신흥사대부들의 정치력을 성장시키는 데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또 전녹생과 같이 정치도감에 참여했던 안축 역시 대대로 호장직을 세습

^{30) 《}高麗史》 권 105, 列傳 18, 鄭可臣.

³¹⁾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304\.

^{32) 《}高麗史》 권 112, 列傳 25, 田祿生.

해 오던 향리가계 출신이다. 즉 안축의 가계는 조부대까지 대대로 與州戶長이었으며 아버지 碩은 현리로서 급제하였으나 不仕하였다. 이렇게 안축은 호장가계의 후손으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충숙왕 11년(1323) 원나라 制科에다시 급제하였다.33) 그 후 成均學正・典法判書・尙州牧使를 역임하였으며 충목왕 때에는 僉議贊成事로 判整治都監事가 되어 양전 등 개혁정치에 참여하였다. 또〈關東別曲〉・〈竹溪別曲〉을 남겨 문명도 높았다. 이와 같이 그의 행적이나 문명으로 보아 청렴・강직하면서 문학적 교양을 겸비한 사대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의 아들 宗源은 충혜왕 때 급제하여 우왕 때 대사성・대사헌・지공거를 역임하고 조선 태조 때 판문하부사에 이르는 등 두왕조에 걸쳐 현달하였다.

安珦 역시 조부 때까지 興州吏였으며, 아버지 孚는 홍주리에서 醫業에 올라 밀직부사에 이르렀다. 그는 원종 원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어사를 거쳐 충렬왕 11년(1285)에 尚州判官으로 나아가 미신을 타과하였으며, 高麗儒學提擧로서 원에 들어가 《朱子全書》를 필사하여 돌아와 주자학을 연구하였다. 한편 문교진흥을 위해 贍學錢을 만들고 國學에 大成殿을 낙성하여 공자의 초상을 비치하는 등34) 고려에서 유학이 크게 떨치게 하였다. 이후 文翰之任을 역임하고 都愈議中贊에 이르렀다. 이렇듯 順興 安氏는 본읍호장을 세습하다가 원 간섭기에 안향 및 安軸・安輔・安輔 형제가 상경종사하면서 신흥사대부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 후손은 조선왕조에 이어지는 명문이되었던 것이니 순흥 안씨의 가계는 원 간섭기 이후 향리가 사대부화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李兆年은 星州戶長 長庚의 아들로 충렬왕 20년에 향공진사로 등제하여 정당문학에 이르렀다. 향리가계에서 일어난 이조년 일가는 그의 5형제가 모두 등과 출사하여 중앙에 포열하고 그 자손들 또한 현달함으로써 곧 권문이 되어 고려 말에 극성을 이루었다. 이조년은 어려서부터 뜻을 품고 학문에 힘썼으며 문장에도 능하였다. 그는 충숙왕이 원에 억류된 지 5년이나 되자 藩王롭의 왕위계승 책동에 발분하여 혼자 원의 중서성에 가서 충숙왕의 정당함

^{33)《}高麗史》 권 109, 列傳 22, 安軸.

^{34) 《}高麗史》 권 105, 列傳 18, 安珦.

을 밝혀 원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또한 충혜왕이 연경에 숙위하였을 때에 따라갔는데, 이 때 충혜왕의 생활이 방종무도하여 수행하는 신하들이 모두실망하고 말하지 못하였으나 이조년만은 進戒를 올려 견제하였다.³⁵⁾ 그 의성품은 날래고 겁이 없고 의지가 굳으며 강직한 사대부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의 아들 褒 역시 성품이 순후하여 충실하게 예의를 지켰으며 벼슬은 檢校門下侍中에 이르렀다. 이어 포의 아들은 8형제인데 4인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그 중 仁復은 충혜왕 때 원의 제과에 급제하여 검교시중에 이르렀으며, 仁敏은 공민왕 9년(1360)에 급제하여 대제학・밀직사사를 역임하고 조선 건국에 따라 사직・환향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稷은 우왕 3년(1377)에 급제하여 조선조에 이르러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이렇듯 星州 李氏 이조년의 가계는 대대로 호장직을 계승한 향리신분에서 원 간섭기에 이조년 형제의 등과로 사족화되었으며,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현달함으로써 명문으로 성장하였다. 비록 이인임의 전횡과 왕조 교체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조선시대에도 仕宦은 계속되었다.

또 李穀은 韓山郡吏였다가 井邑監務를 지낸 自成의 아들로, 충숙왕 7년 (1320)에 등제하였으며 충숙왕 후원년(1332) 원의 제과에 급제하고 도첨의찬성사에 이르렀다.36) 이어 그의 아들 稽과 손자 種德・種學・種善이 재상을지내는 고위직에 나감으로써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였다. 이곡은 어려서부터 독서에 열심이었고 일찍이 부친을 잃고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다. 그는 도평의사사의 서리로 나아갔는데 경사를 열심히 연구하여 많은 학자들이 모였다. 그는 충숙왕 때 원의 童女 정발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중지하기를 청하여 실현을 보았으며 충혜왕 때는 관작이 외람됨을 지적하기도하였다. 또 충렬・충선・충숙왕의 三朝實錄을 편수하였으며 성품이 단정하고 강직하였으니 여기에서 또한 사대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아들 색은 고려말 대학자로 공민왕 2년(1353)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이듬해 원의 會試에 급제하였다. 이어 대사성·정당문학·지공거·문하시중 을 역임하였으며 동방의 성리학을 일으키고 유학을 일신하였다. 그의 아들

^{35) 《}高麗史》 권 109, 列傳 22, 李兆年.

^{36) 《}高麗史》 권 109, 列傳 22, 李穀.

종학·종선 역시 우왕 때 급제하여 조선조에 현달하고 있다.37) 이렇게 韓山 李氏 이곡의 가계는 대대로 호장직을 지닌 향리층에서 기가하여 원 간섭기 에 과거로 출사하여 고려 말기에 걸쳐 사대부층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후손 들은 왕조 교체에도 그 지위를 지켜 명문으로 성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원 간섭기에도 향리가계 출신의 신진사류들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여 신분상승을 이룩했고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대원관계에 있어 고려왕조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통하여 당시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부원세력에 대응하여 일련의 개혁정치세력으로서의 공동체적 성향을 키워 나갔다. 나아가 현실모순을 타파하기위한 이들의 꾸준한 성장과 도전은 공민왕대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공민왕 5년(1356) 친원세력의 제거로 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동 14년에 후盹이 등용되어 田民辦正都監의 운용 등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권문세족들의 정치·경제적 세력기반을 약화시켰다. 이 때 공민왕은 강화된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이를 통하여 등장한 신진사류를 개혁의 주체로 참여시켰는데, 이는 곧 사대부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신진사대부세력은 계속적인 개혁의 추진으로 권문세력의 지배적 지위를 대신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주체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공민왕 이후 개혁정치에 참여한 주요 인물의 행적을 통하여 이들이 향리가게 출신으로 사대부층으로 진출하였음을 살펴보자.

먼저 李集은 廣州地方의 토착 향리가계의 출신으로 선대 호장직을 세습한 尉의 손자요 州吏 唐의 아들이다.38) 그는 충목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색·정몽주 등과 교유하였으며, 공민왕 때 신돈의 배척으로 永川으로 피신하였다가 신돈이 주살된 뒤 개경에 돌아와 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사직하고 驪州에 내려가 독서로 세월을 보냈다. 따라서 그는 留鄉士族의 선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위의 차자인 당의 가계는 이집이과거로 기가하여 사족화하였으며, 아들 之直, 손자 仁孫 및 증손 克培 5형제

^{37)《}東文選》 · 129, 墓誌, 有明朝鮮國特進輔國崇祿大夫韓山伯牧隱先生李文靖公墓銘.

^{38) 《}掾曹龜鑑》 권 2, 觀感錄.

로 이어지면서 여말 선초에 재상직으로 현달하여 명문이 되었다. 역시 주리였던 이위의 장자 漢의 가계는 여말까지 광주의 향리직을 세습해 오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의 증손 知가 향공으로 출사하면서부터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廣州 李氏는 여말 선초에 향리층으로부터 사대부층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다음 여말 선초의 대학자요 정치가인 鄭道傳 역시 향리가계의 출신이다. 그는 충숙왕 때 급제하여 형부상서에 이른 云敬의 아들로 공민왕 11년에 등 제하여 사대부로 성장하였다. 정운경은 奉化戶長 鄭公美의 증손으로 처가를따라 榮州에 이주하였다. 그는 등제하기 전 安東州吏 權授와 함께 향교에서 수학하고 출사 후 良吏로서 외직을 거쳐 검교밀직제학에 이르렀다. 이어 정도전은 이색의 문하에서 정몽주 등과 교유하면서 경사를 강론하였으며 문장이 뛰어나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39) 그는 우왕 원년(1375)에 북원의 사신접대를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기도 하였으며 성리학적 입장에서 排佛論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등 고려 말 개혁의 주체로 활동하였으며,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주역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다. 이렇게 세력기반이 빈약한 향리가계 출신인 정도전은 선대의 등제에 의한 중앙 진출에 이어 사대부로 성장하였으며 그의 사상과 정치활동은 전형적인 신진사대부의 모습이었다.

또 정도전과 더불어 고려 말 개혁정치를 주도한 尹紹宗 역시 향리가계 출신의 사대부였다.40) 즉 그의 가계는 茂松縣의 호장을 세습해 오다가 충렬왕때 고조 諧가 현리로서 급제, 출사하면서 사족화하였다. 그는 청백을 몸소지키어 한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는 등 사대부상을 보여주었다. 이어 조부 尹澤 때에는 外鄕을 따라 錦山으로 이주하여 留鄕士大夫로 정착하였다. 그는 충숙왕 4년(1317) 문과에 급제하여 왕의 은택을 받았으며 뒷날 공민왕에 대한 遺託을 받아 그 추대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민왕 때 큰 신임을 받았으며「孔子之道」를 강조하면서 崔承老의 시무책을 진강하는 등 치국의 도를 왕에게 건의하였다.41) 이어 윤소종에 이르러서는 청렴결백한 사대

^{39) 《}高麗史》 권 119, 列傳 32, 鄭道傳.

^{40) 《}掾曹龜鑑》 권 2, 觀感錄.

부의 자세를 더욱 견지하였다. 윤소종은 공민왕 14년(1365)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사관·정언·대사성을 역임하였으며 여말에 이성계와 밀착됨으로써조선왕조 개창과 더불어 병조판서·동지춘추관사에 올라 그 가세를 확고히하였다. 그는 이색의 제자로 시문에 뛰어나고 성리학과 경사에 밝아 문명이높았으며, 배불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또 상소문을 올려 天命을 논하고관직의 소중함을 말하며 또 民本을 주장하였다. 42) 그의 동생 會宗 역시 우왕때 등제하여 司宰副令에 이르렀다.

공민왕 2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토지개혁에 적극 참여한 李行 역시 여주의 토착향리가의 후손이었다. 李行의 가계가 언제 사족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으나 고려 후기에 更族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⁴³⁾

한편, 조선 건국 초 사대부로서 집현전학사를 지낸 鄭麟趾・申叔舟・梁誠之 등도 고려 후기에 향리층에서 사족화한 가문의 후손이었으며, 조선시대성리학자로 이름이 높던 金馹孫・李彦迪・李滉의 가계 역시 고려 후기에 향리층으로부터 사족화하였던 것이다.44)

이상과 같이 고려 후기에 지방 향리가계에서 출신하여 사대부로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이들 군현향리에서 등과 출사한 인물들은 물론 권문세족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개 능문능리형의 신진사류로 활동하였으며 생활은 청백하고 권세가의 비리와 사회모순을 공격하면서 일군의 정치세족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무신란 이후 정권의 주체가 바뀌면서 중앙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재지토착세력으로서의 향리층은, 점차 그들의 지배적 속성을 중앙관료층에 정착시켜 사대부층을 구성하였으며, 在地品官化한 세력과 더불어 시대변혁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다. 향리의 계층분화

가) 잔류 향리역의 고역화

13세기 중엽 몽고의 고려 침략은 고려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41) 《}高麗史》 권 106. 列傳 19. 尹諧 附 澤.

^{42)《}高麗史》 권 120, 列傳 33, 尹紹宗.

⁴³⁾ 李樹健, 앞의 책, 267쪽.

^{44) 《}掾曹龜鑑》 권 2, 觀感錄.

놓았다. 지배세력의 변동과 더불어 지방사회는 수십 년간의 대몽항쟁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피폐해지고 촌락은 황폐하여 많은 유망민이 생기게 되었다. 아울러 향촌사회의 붕괴는 향리층의 존재 토양을 잃게 하였다. 즉 고려 향리는 혈연성을 바탕으로 지방에 토착하여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지배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권위와 세력은 많은 전란과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에 따른 향혼질서의 붕괴와 함께 무너졌고 향역자체의 고역화를 경험하여야 했다. 《고려사》식화지 田制 畓驗損失條의 충숙왕 5년 하교를 보면, 주군에는 원과 결탁한 권세가의 대규모 농장이 있어 그들이 조세를 내지 않자 조세징수 담당자인 향리가 이를 대신 충당하다가 해결하지 못하여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도산 유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자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역은 고역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 향역이 고역화 내지 천역화되는 경우는 기인역의 변화에서도 살필 수 있다.45) 주지하다시피 기인은 고려 초 향리의 자제로서 선상되어 지방세력의 국왕에 대한 군신간의 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 초 지 방호족의 자제로서 상경한 이들은 국왕의 측근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고위 관등이 주어지는 등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초기 기인은 일정한 身役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종 때의 其人選上 규정을 보면, 상경향리로서 노동의 인적 자원으로 신역을 갖는 그 기능이 제도화되고 있다. 반면 입역에 따른 同正職 수여나 加職을 통한 일정한 신분적 지위를 누렸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전국적으로 지방관 파견이 확대됨에 따라 토착적 세력을 유지하던 향리의 정치·사회적 지위 전략과 더불어 기인역 또한 고역으로 변하였다. 고종 43년(1256)에는 租賦의 감소에 따른 경비보충을 위한 閑地 경작에 기인이 동원되고 있으며,46) 충선왕 때에는 주로 궁실의 조영과 관부의 사령역을 맡아보는 등으로 그 역이 고역화되었다.47) 나아가 충숙왕 5년(1336)에는 기인의 역사가 노예보다 심하여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逋亡함

^{45)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其人.

^{46) 《}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47)《}高麗史》 권83, 志37, 兵3, 工役軍.

이 끊이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다.48) 이러한 기인역의 고역화 내지 천역화는 향리의 향역 변화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즉 향리신분층이 시대변천에 편승하여 중앙관료로 상승하는 부류가 존재하는 반면, 지방에 잔류한 一群의 향역은 상대적으로 고역이 되었으며 이는 기인역을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역의 고역화 내지 향리들의 지방으로부터의 유망은 심지어 향리들이 한집도 남아있지 않은 군현이 출현하는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49)

그런데 이렇게 고역화된 향역을 면하고자 하는 노력은 호장 등 상층 향리들이 우선하였다. 그리하여 지방통치는 자연 지방관이 남아있는 하급 향리들을 직접 운용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이 편제되는 실제 향역은 독자성을 상실한 채 고역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향리의 신분 자체도 천시되어 갔다.

나) 사족화 동향

고려 후기 향리층의 사족화 동향은 과거 이외에 권문세족에의 투탁과 문과에 비해 품관으로 나아가기가 보다 수월한 잡과로의 진출, 기타 군공 등에 의한 동정직·첨설직·封君 등을 통한 非實職品官化의 진로 등으로 대표된다.

먼저 몽고의 침략을 겪은 후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이 멋대로 권력을 부리자 향리세력은 향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상층 향리들은 과거 등 정규과정을 통하여 신분상승을 꾀하기보다는 권문세족에 붙어 중앙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이 결과 그들은 京職을 대규모로 받게되었다. 즉,《고려사》선거지 향직조의 충숙왕 12년 교서를 보면, 지방 향리와 그 자제들이 권세가에게 붙어 本鄕東役을 탈피하여 중앙관직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의 호구가 줄어드니 관직 7품을 한계로 다시 향역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지방 향리들이 권문세족의 힘을 빌려 많은 수가 중앙으로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중앙 진출세력은 지방에서 강력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던 호장층이었다

^{48) 《}高麗史》 권81, 志35, 刑法1, 職制.

⁴⁹⁾ 위와 같음.

고 여겨진다.

이러한 향리의 본역으로부터의 이탈은 공민왕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예를 들면 正科 대신 보다 쉬운 잡과로의 진출을 통한 향리의 면역이 심하게 나타나고,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침략에 따른 전공에 따라 첨설직이 남발됨으로써 이에 편승한 향리들은 당대를 이어 자손대에는 사족에 편제되어 재지사족으로 변하였다. 앞에 든《고려사》향직조 공민왕 12년 5월 교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향리들이 잡과로 출신하여 본역을 탈피하자 지방통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 결과 향읍이 황폐됨으로써 국력 동원에 지장을 초래하게되었다. 이에 製減・明經 이외의 잡과를 통한 향리의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왕 9년(1383) 左司議 權近 등의 진언에서도 향리들의 본역이탈과 잡과를 통한 중앙 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0) 實才가 없는 향리들도 잡업으로 면역함으로써 지방 향리의 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행정의 업무수행에 곤란을 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당시 향리들의 중앙 진출을 통한 사족화의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잡과에 의한 향리의 면역은 충숙왕 12년의 교지 내용에도 나오고 우왕 9년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향리의 잡과를 통한 면역은 실제에 있어서는 60년 가까운 기간에 비록 공민왕 때와 같이 금하기도 하고 통제를 가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으나 커다란 제약없이 진행되었다.

공양왕 원년(1389) 趙浚의 上言에서도51) 향리세력 일반의 면역 내지 신분 상승의 제유형을 통한 향역의 변화 실태를 엿볼 수 있다. 고려 말기에 있어 향리들은 군공을 칭하거나 거짓으로 관직을 받고 잡과로 나아가 면역을 하 거나, 권세가에게 투탁하여 品秩을 올려 달관하고 있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 을 정도로 나타나 이러한 향리의 신분상승 내지 향역의 변화가 일반적인 사 회현상이 되었다. 이리하여 지방사회가 텅비고 황폐해짐으로써 향리층의 還 役을 도모하고 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족화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 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준은 3정 1자로 3·4대 면향이 되었더라도, 文契를 살피고 군공과 잡과 진출 내용을 조사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50)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⁵¹⁾ 위와 같음.

향리역으로 환역케 하고자 하였으며, 첨설직의 하위자도 역시 이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향역의 환역 조처가 강력히 대두되었음은 당시 시대상황의 혼란과 변동에 따라 항상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던 향리층을 중심으로 한 신분체제의 일대 변혁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밖에도 첨설직을 통한 대규모의 향리층의 사족화가 이루어졌다.52) 첨설직은 공민왕 3년에 군공포상을 위해 수여되었는데 매우 남발되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고려는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력의물적・인적 자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고려 조정은 국용이 고갈되어 군공자에게 물질적 포상도 할 수 없었고, 한계가 있는 관직에유공자마다 실직을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첨설직을 수여할 수밖에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향리세력들은 여말의 시대상황에 따라 대대적으로 첨설직을 받음으로써 비실직 품관으로서 사족화되었으며, 여기서 지방세력의사족과 이족의 분화가 더욱 심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족화하지 못한 향리세력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법전체제로 신분이동이 억제됨에 따라 중인신분으로 고정화되어 자기도태 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첨설직을 받을 수 있었던 계층은 군현행정을 장악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역역을 동원하며 주현군의 장교직을 맡아 전란에 동원되었던 호장층의 상급 향리가 대종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며, 하급 향리층은 잔류하여 記官層을 중심으로 새로운 향리조직으로 재편성되어 갔다.

이상 살펴본 고려 후기 향리의 신분동요는 다음과 같이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많은 향리층들이 사족화하고 이들이 지방에서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하였다는 양적 팽창은 곧 고려사회 질서체제에 있어 그들의 존재가 질적으로 상승 변화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우리는 흔히 귀족제사회로부터 관료제사회로의 전이의 특징을 먼저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을 우선하는 지배집단의 형성을 들고 있다. 즉 소수 가문에 의해 관직이 세습적으로 독점된 것이 아니라, 점차 보다 많은 가계집단들이 제한된 관직을 놓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진출함이 그 객관적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많은 가

^{52)《}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添設職.

계집단이 토착적인 향리층의 사족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함은 새로운 지배 집단의 질적 비약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외형이 토지개혁과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로 나타났으며, 이들 새로운 지배층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이고 숫적으로 팽창된 양반관료층으로 정착되었다. 물론 양적 팽창에 참여하지 못한 잔류향리는 새로운 질서체제에 의해 도태된 지위를 견지해야만 했다.

(2) 양반귀족의 신분동요

가. 문 · 무반의 신분적 융합

고려 후기 양반 귀족의 신분동요는 양반귀족의 신분상의 몰락이나 상승을 의미하기보다는 지배계층 내부의 상호간 위상변화 즉, 권력의 우위권이나 신분 특권상의 변화 등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곧 무신란 이후 정치권력 담당자의 성격 전환과 그들의 지배적 특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새로운 사회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는 곧 고려 후기 신분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고려 전기에 있어서는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귀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신분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이 귀족계급은 오로지 문반에 의해서만이 형성되었고 같은 관료층인 무반은 한 단계 낮은 신분으로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 통치체제 운영의 근간이 되었던 문무양반체제 내에서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 상호집단간에 갈등을 일으킬수 있는 내적 모순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문신 중심에서 무신 중심으로 정권이 교체된 무신란을 계기로 문신 중심의 귀족사회는 변질되고 새로운 형태의 양반제와 신분제가 운영되 었다. 무신의 정권 장악에 따라 무신의 지위는 상승되었고 아울러 문반과의 신분상의 차별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문반귀족이 몰락하고 무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양반제는 유지 되었다. 이 변질된 양반제도는 형식적인 외형은 무신란 이전과 다름 없었으 나 실질적으로는 문무간의 상호교통이 일반화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무반의 문반직 겸직과 무신정권의 비호를 받는 문신들의 무반직 겸직이 일 반화되었다.53)

먼저 무신란 이후 무반에 의한 문반직 겸직을 살펴보자. 원래 무신란 전에는 무반의 문직 겸유는 그 관직 수여의 경우나 또는 수여되는 문관직 자체에 제한이 있었지만, 무신란 후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무반의 문반직 겸유가 일반화되었다. 이는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 그들의 통치기구인 문반직을 자의로 차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무신들의 문반직 겸유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무신란 직후 무신에 대한 회유책으로 전원을 일급 특진시키고 있다. 이 때 상장군은 守司空僕射에 가하였는데 이는 무신란 전의 무신의 문직 겸유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이며 명종 즉위 후 본격적인 문직 겸유가 시작되었다. 무신들의 추대로왕위에 오른 명종은 일대 인사개편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 무신들이 많은 문무관직을 차지하여 鄭仲夫와 梁淑은 참지정사, 李紹膺은 좌산기상시가 되는 등 무신의 문반직 겸유가 실제화되었다. 이후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모든 문무관직의 전주권을 오로지함으로써 그들이 정부의 주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명종 즉위 직후 참지정사가 되었던 정중부는 결국 문하시중에 오르고 李義旼도 수사공좌복야・판병부사가 되며, 杜景升은 문하시중에 오르는 등 재상들이 무신들 가운데 많이 배출되었다.

다음으로 명종 16년(1186)에 장군 車若松 등 43인을 內侍院과 茶房에 겸속시키고 있다.54) 이러한 사실은 이제는 무신들이 중앙의 문반직 뿐만 아니라 내시·다방의 近侍職까지도 겸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문반직인지방관직에도 무인이 진출하였다. 명종 3년에는 3경·4도호부·8목의 관인은 물론 군현 및 심지어 館驛之任까지도 무관이 병용되었다.55) 이렇게 하여무신란 이후에는 文武交差制가 시행되어 무신이 지방관에 파견되는 경우가많아졌다. 그리고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충렬왕 원년 다시 복구되는 등무신의 외직 임명이 일반화되었다.56) 따라서 대장군 洪仲方과 같은 무신은

⁵³⁾ 邊太燮、《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 1971), 322~327\,

^{54)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6년 10월.

^{55) 《}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3년 10월.

^{56)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選用守令.

무신들에 의한 문관직 독점을 중지하고 양반제의 정착을 주장하기도 하였 다.57)

이처럼 무신란 후에는 무신에 의한 문반직 겸유가 보편화되어 양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文翰職까지도 무인이 겸하게 되었다. 원래문한직은 문관 중에도 유학과 문장에 능통한 유신과 문사만이 등용되었다. 따라서 무신란 전에는 무반이 문직을 겸유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문한직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무신란 이후에는 무인으로서 儒官職을 겸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상장군 崔世輔는 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무인이었으나 명종 16년 史館의 同修國史가 되고 있다. 또 장군 崔連과 金富가 모두 예부시랑이 되어 이 때부터 무관으로 유관직을 겸하게 되었으며,58) 그 후 무인 두경승은 判吏部事로 修國史를 겸하였다. 국사를 편찬하는 사관직이 문한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예부의 관직도 전형적인 유관직인데도 이제는 이들 유관 문한직도 무인이 겸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과 서장관 등은 문관에 한하였는데 무신란 이후 무인들이 보내지는 것이 일반화되고, 또한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는 유교적 지식이 뛰어난 자만이 임명되었던 자리에까지 무인들의 세력이 침투하였음을 알려준다.

마지막 형태를 살펴보면, 당연한 경우 같지만 무관이 군직을 갖게 되었다. 무신란 전에는 姜邯贊이나 尹瓘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관이 양계병 마사나 출정군의 군직을 겸하여 병마를 지휘하고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고 있 었다. 그러나 무신란 이후에는 무관이 이를 담당하였다. 이를테면 정중부는 명종 2년에 재상직과 더불어 북면병마판사와 행영병마 겸 중군병마판사의 군직을 가졌다. 그 후 고종 3년 및 4년의 거란 침공 때 고려 방어군의 편성 을 보면, 병마사가 모두 무관으로 편성되어 있어 출정군 지휘부의 군직과 양 계 병마사직이 무반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59) 이는 원래 무반이 가져야 할 군사권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신란 이후에는 무반이 문관직을 겸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문반

^{57)《}高麗史》 권 100, 列傳 13, 洪仲方.

^{58)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6년 12월.

^{59) 《}高麗史》 권 103, 列傳 16, 金就礪.

이 무반직을 겸하는 사례가 널리 나타났다.60) 정권을 장악한 무반에 비해 열세한 지위가 되어버린 문반이지만 하나의 정권이 문·무 양반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이들의 존재는 계속 유지되었다. 또 문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체 세력유지를 위해서는 생존이 우선이었다. 도피와 은둔으로 화를 면한 문신들은 무신세력과 타협하여 벼슬을 하기도 하고 끝내 초야에 묻히기도 하여 새로운 질서체제에 적응하였다. 실제 무신정권은 자기 정권 강화를 위하여 문직을 담당할 문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舊文臣을 포섭 등용하고 신진문인을 활발히 등용하였다.

이로써 문신세력은 무신정권에 부용된 위치에서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무신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난 문신의 경우로, 예로부터 사람됨이 덕성이 있어 평소에 존경을 받아오던 자, 성격이 청렴하고 곧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오던 자, 언관으로서 그 직분을 다하여 直臣으로 알려진 자 등은 그 인간성이 훌륭하여 그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화를 면하게 되었다. 그 밖에 무신 또는 무신에 포섭된 문신과 사제관계 등 천분 또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 관용 또는 의협심이 있는 무신에게 의탁한 자등도 화를 면하였다.61)

한편 무신정권은 살아남은 문반들을 문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적에 임용하였고 이들 문신들은 자기 보신책으로 무신정권에 결탁하기에 이르러 재상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 무신정권하의 문신 가운데는 무직을 겸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무신란 전에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문신이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반직을 가질 리 없었지만 이제 무신정권하에서는 무반의 지위가 우세하여졌으므로 문관 중에 무반직을 점유하는 예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화를 면한 文克謙은 무신정권에 협력하여 명종 즉위후 右承 宣·御史中丞을 거쳐 龍虎軍上將軍이 되고 다시 재상에 이르러 상장군을 겸 하여 문관으로 무반직을 겸하는 시초가 되었다. 그 후 尹鱗瞻도 문신으로서 무직을 겸하게 되었다. 윤인첨은 등제한 문신으로 무신란 후 명종조에는 국

⁶⁰⁾ 邊太燮, 앞의 책, 327~332쪽.

⁶¹⁾ 閔丙河, 《高麗武臣政權研究》(成均館大出版部, 1990), 57~62\.

자감 대사성의 儒官職을 가지고 재상에까지 올랐는데, 마침내 무직인 상장군을 검하는 중방에 나아가 議事까지 하였다.⁶²⁾ 이와 같이 문극검은 문재가 뛰어난 문관이었고, 윤인첨은 대사성을 역임한 유관이었는데, 상장군의 무직을 가지고 중방에서 參署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무신란 이전의 낡은 구조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문・무양반의 신분적 변화의 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신의 무반직 겸유는 그 후 고종 때 趙冲이 한림학사·승지로서 상장군이 되었고, 柳璥이 국자대사성을 역임하고 지주사가 되어 좌우위 상장군을 제수 받은 경우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문신이 무반직을 겸하게되는 현상은 무신정권이라는 전제조건 아래 문신들이 무반직을 선망하였고 아울러 무직의 겸유는 일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직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심있는 문신들은 무직을 겸함으로써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문반 중심의 새로운 질서체제를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반직이 문반직보다 천대되었던 고려 전기에 비하여 무신정권 성립 후에는 무반관직은 그 지위가 상승하여 사회일반에서 우대되었다. 이러 한 점은 충렬왕 때 제정된 納粟補官制에 있어서도 증명되고 있다.63) 이러한 무반직의 지위 상승은 문무반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양자의 상호교통을 초 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문무반 관직의 겸유로 상호교통이 있게 되었지만 출신으로서의 문반·무반의 관계는 명확히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상황에 따라 엄격한 문무반의 불변성은 이들간의 상호대립과 경쟁이 계속되는 요인이었다. 또한 양자간의 신분동요 및 사회변동의 내재적인 추진력이되었다. 실제에 있어서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이라 하지만 문신세력을 억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는 고려 전기 이래에 계승된 출신신분에 대한 문신 우위의 인식이 잔존하였음을 알려준다. 곧 그들은 무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상승의 실제를 문반직을 겸유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했고, 상대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문신의 세력확대를 억제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내재적인 대립관

^{62) 《}高麗史》 권 96, 列傳 9, 尹鱗膽.

^{63) 《}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賑恤納栗補官制.

계는 무신정권하에서도 무신관료들이 갖는 신분적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신란 후에는 문무관직의 상호교통을 통하여 문무반의 신분·문벌상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는 무신란에 의해 신분이 낮은무신들이 문반귀족에 대응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양반간 신분질서의 필연적인 변화 현상이었다. 신분과 문벌이 모든 사람의 정치적 권력과경제력, 사회적 특권을 결정하는 주요조건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실력과 능력이 특권을 누리는 중요한 요건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무신란 이후의 귀족세력은 그 이전의 귀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었다. 요컨대 무신란 이전의 귀족은 오로지 문반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하여 무신란 이후에는무반도 宰相之宗이 되기도 하였다.

충선왕 하교에 있는 15개 재상지종 가운데 원종의 비 順敬太后의 가문은 金慶孫·金暉으로 이어지는 慶州 金氏로 무반가문이었으며, 金方慶·金忻 부자 역시 무신이었다. 또 金就礪로 대표되는 彦陽 金氏는 무반가문으로 신진 재상지종이 되고 왕실의 외척까지 되고 있으며, 蔡松年의 平康 蔡氏와 趙仁規의 平壤 趙氏 또한 무반가문의 신진 재상지종이 되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재상지종에 무반가문이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신란 이후의 양반 귀족사회의 변질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전히 문반계통의 재상지종이 강력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반의 지위 상승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들 문반귀족 가문에서 무직을 겸하거나 무반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남을 통하여 문무반의 신분상 융합을 볼 수 있다.

또 무신란 후에는 무반으로 공신호를 받은 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졌다. 崔 竩를 주살한 공으로 衛社功臣이 된 사람 가운데 13명의 壁上功臣 중 12명이무인이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인 문신 柳璥도 뒤에 상장군을 경유하였다.64이렇듯 무신란 후에는 공신호도 거의 무반이 독점하게 되어 그들 가문의 신분상승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따라서 무신란 후에는 무직이 비하되지 않고 무반으로서 귀족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제는 귀족가문의 자제도 음직으로 무반직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64) 《}高麗史》 권 25, 世家 25, 원종 3년 10월.

이에 문무반의 신분상의 차이가 없어지자 문반귀족 내의 폐쇄적인 연혼관계를 탈피하여 문무 양반간의 통혼이 행해지게 되었다. 먼저 무신란을 계기로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그들의 미천한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문신귀족과 통혼하고자 하였다. 문무반 사이의 통혼은 이미 명종 3년에 문신들의 반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신들에 의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으며,65) 이에 의해 양반간의 신분상 융합이 더욱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출신이 미천한무신들이 무신귀족으로 상승하여 무인정권 이후는 문무양반층이 상대적인귀족층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신분 전통에 대한 관념은 극히 보수적이어서 비록 무신란을 계기로 새로운 신분질서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존의 문벌가문의 권위는 끊임없이 잠재해 있어 신분의 우월성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따라서 무신란후 정권을 장악한 무반의 지위가 실제적으로 상승된 점과 더불어 무인신분에 대한 전통적인 멸시감이 병존하는 신분의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신란이후 고려사회는 실질적으로 문무관 관직의 상호교통과 통혼, 그리고 무반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질서를 창출하는 변화를 보였다.66)

나. 양반귀족의 신편제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 새로운 대원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 때 양반귀족의 신분상의 동요는 역시 문무 양반계층상이나 하층 신분층과의 동요를 말하기보다는 지배세력 내에서의 보수와 개혁, 또는 외세의존과 토착 등 새로운 관인층의 형성과 그들의 성격상의 변질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관인형성층이 새로운 정치상황에 따라 신분상 어떻게 변질되었고, 이들과 대응하여 신진관료층의 등장은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지배질서체제에 편제되었는가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신분동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지배세력의 성장과 새로운 통치질서 체제의 확립이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신정권을 몰락시킨 원의 간섭과 부마국체제의 성립은 기존의 정치세력

^{65) 《}高麗史》 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⁶⁶⁾ 邊太燮, 앞의 책, 339쪽.

을 새로운 대원관계에 적응케 하였고, 전혀 새로운 권세가를 성립시켰다. 따라서 부원세력이나 왕실 측근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이 편성된 정치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무신정권 이후 계속 성장하기 시작한신진사류층이 이들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양반관료사회를 지향하였다. 이렇게 왕실을 포함한 외세의존적 정권주체와 고려사회내에서 모순을 직접 체험하면서 관료사회에 진출한 신진사류가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공민왕 이후에는 신진사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모순의 개혁세력들이 정치주체로 등장하는 지배세력 내부의 변질을 가져왔다.

아울러 공민왕 때 등장한 신흥세력 가운데 공민왕의 실지회복운동, 홍건적의 침입, 계속되는 왜구의 침략 등 많은 전란을 통하여 성장한 새로운 형태의 무장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양반귀족의 후손이거나 당대 자신의 무공으로 발신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나갔으며, 때로는 보수적으로 때로는 개혁세력으로 활약하며 새로운 형태의 무반으로 정착하였다.

다. 양반수의 증가와 불복신

고려 후기의 양반층의 신분동요에 있어서는 이들의 숫적 증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려 후기에는 관제상의 정원이 원래의 수보다 훨씬 늘어난다. 예를 들면 본래 宰樞는「宰五」8명과「樞七」9명을 합하여 17명이 정원이었는데 고려 말에는 70~80명으로 늘어났으며,67) 이러한 현상은 문무반 각품 모두 그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관제상의 증가와 더불어 양반 귀족층 자체의 인구증가에 따른 숫적 증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앞의 향리의 신분변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 지배층의 양반층으로의 신분 상승이 양반수 증가에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다. 즉 향리층의 正科·雜科 등을 통한 신분상승과 첨설직·납속보관제·투탁 등을 통한 광범위한 진출을 통하여 양반층의 팽창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양반수의 절대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관제의 문란을 가져왔는데 이는 제한된 관직과 인적 자원의 확대에 따른 현상이었다.

^{67)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選法.

한편 무신정권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맞아 중앙관인들이 낙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잇따른 정치적 사건과 빈번한 정권교체, 많은 전란에 따라 파직 및 유배자가 지방에 정착하거나 일시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지방에서 일정한 사회적·신분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관인으로서의 신분적 우위와 지식층이라는 이유로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족층으로 대두하였다. 즉 양반 귀족의 한 존재형태로 地方品官勢力이 형성되어 갔다. 이들 지방 품관세력은 호족출신 관인층이 경제적・혈연적으로 맺어지는 지방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여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정착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들의 영향을 받은 지방 토착세력들은 동정직이나 첨설직을 받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실직 관인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숫적 증가는 양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족층의 숫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의 변동에 따라 토착세력의 사족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중앙관인층이 여말 선초의 새로운 정권에 불복함으로써 향리층으로 전략하기도 하였다. 즉 고려의 遺臣으로 조선왕조에 불복하여 지방의 호장 등 향리화한 경우 이들 불복신 후손 향리들은 '不服臣戶長'등으로 그 명칭이 계속 이어졌으며 그 중 武弁이 있는 자는 驛吏로 전략되기도 하였다.⁽⁸⁸⁾

〈羅恪淳〉

2. 농민·천민의 봉기

1) 농민·천민봉기의 배경

우리 나라 농민항쟁의 역사에서 민중들의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 고려 무신정권기의 1세기처럼 앙양된 시기는 그 유례가 보기 드문 것이었다. 민란

^{68) 《}掾曹龜鑑》 권 1, 不服臣罰定錄.

의 주체인 민중은 특정한 역사적 통치체제나 경제구조 아래에서 통치지배와 경제적 수탈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농업생산이 사회적 생산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전근대사회에서 농민이 민중을 대표하는 기본계층으로 인 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민도 농민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양인 농 민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따로 언급하여 그 특수성을 부각시키면서 봉기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중앙 통치체제의 문란

무신정권기에 발생했던 농민·천민의 봉기는 고려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순이 폭발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무신정권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무신집권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우선 무신정권이 성립하기 이전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인종대에 李資謙과 妙淸의 난이 발생하여 집권층 내부의 권력 다툼이 표면화됨으로써 중앙집권체제가 동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종은 인종대 이래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에 위배되는 여러 귀족들을 숙청하였으나, 문신 지배층의 압력과 그 자신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의종은 사치와 향락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강화하였으므로 농민들의 유망이 더욱 늘어갔다.1) 그리하여 의종 6년에 洪川,2) 9년에 全州,3) 16년에는 伊川・安峽・東州・平康・永豊(平山)・宜州(德原)・谷州 등 각지에서 도적이 일어났으며4) 그이후에도 남쪽에서 계속적으로 소요가 일어났다.5) 따라서 의종 24년(1170)에

¹⁾ 의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설도 있으나(河炫綱,〈高麗 毅宗代의 性格〉,《東方學志》26, 1981) 그것은 지배층 내부에서 귀족과의 대립관계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을 뿐 농민의 입장에서는 의종의 방탕과 이로 인한 수탈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E. J. Schultz, 〈韓安仁의 立場과 그 役割〉(《歷史學報》99・100, 1983), 174~180等.

^{2) 〈}李文著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402\.

^{3) 〈}林景軾墓誌〉, 위의 책, 383쪽.

^{4)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16년 5월.

일어난 무신란이 성공하게 된 원인은 무반 지위의 상승과 더불어 귀족사회의 수탈체제에 신음하던 피지배층의 광범위한 지지와 성원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신정권은 일반 군인층, 농민들의 호응으로 성립하였음에도 피지배층을 위한 수취체제의 개편이나 지방관 수탈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무신들의 목적은 문신을 대신해서 정권을 장악하여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일 따름이었다. 그리하여 李高·李義方·鄭仲夫 등 무신집정자들은 무신들의 회의기관인 重房을 중심으로 서로권력 다툼을 벌여 높은 관직을 경쟁적으로 차지하고 토지겸병에 열중하였다.

- ① 처음에 의종이 私第 셋을 지어 館北宅・泉洞宅・藿井洞宅이라 이름짓고 재화를 거두어 모아 巨萬을 헤아리게 되었는데 仲夫・義方・高가 다 이를 나누어 가졌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 ② 仲夫는 성질이 본래 貪鄙하여 재물 늘리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侍中이되어서는 널리 田園을 확장하였으며, 家僮과 門客이 권세에 의탁하여 멋대로 방자하니 中外가 이를 괴롭게 여겼다(위와 같음).
- ③ 義方이 딸을 東宮에 바친 이래 더욱 威福을 제멋대로 하여 조정의 정치를 濁亂하게 하니 사람들이 분노하고 원망하였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方).

사료 ①의 내용에서처럼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의종의 집과 재화를 빼앗아 나누어 가진 일이었다. 이후 정권은 이의방에서 정중부・慶大升・李義旼을 거쳐 崔忠獻에게로 옮겨졌는데 그 과정에서 무신들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죽이는 등 치열한 권력투쟁을 계속하였다. 즉 초기의 정치권력은 이고・이의방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선 이의방은 명종 원년에 정권을 독점할 뜻을 품고 승려 및 惡小의 무리와 결합하여난을 일으키려던 이고를 주살하고, 이어 함께 이고를 죽여 방자하여진 內侍將軍 蔡元을 살해하였다.6) 이고와 채원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이의방은 사료③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의 딸을 태자비로 삼고 국정을 함부로 하였다.

^{5) 〈}醴泉龍門寺重修碑〉(《朝鮮金石總覽》上), 410쪽.

^{6)《}高麗史》 권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方.

이 때 정중부의 아들 鄭筠은 서북민의 항쟁으로 조정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의방과 그의 측근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정중부 또한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자신의 일파를 재추의 요직에 앉히고 아들 균, 사위 宋有仁과 더불어 백성을 수탈하고 토지를 겸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균은 무리하게 공주와 결혼하려 하였고, 송유인은 권신 文克 謙과 韓文俊을 貶斥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장군 경대승에 의해 모두 처형되었다.7) 그러나 무신란과 관련없는 인물인 경대승의 대두는 무신란에 가담하여 출세한 무신들을 그의 적대세력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경대승은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都房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는데, 정권을 장악한 지 4년 만에 병사하였다. 그가 죽은 후 정권을 잡은 이의민 또한 동중서문하평장사·판병부사가 되고 공신호를 받아 권세가 커지니 銓注를 함부로 하고 토지를 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다가 모두 최충헌 형제에게 주륙되었다.

이상과 같이 무신들의 정권 장악을 위한 내부 투쟁은 국가의 기강을 더욱 문란하게 하여 중앙의 통치체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 여 무신정권 초기에 상장군·대장군이 모여 국정의 전반을 논의하던 重房政 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방에서 어떤 일을 명령하면 그 아래 將軍房 에서 반대하고 장군방에서 명령하면 그 아래 郞將房에서 반대하여 서로 대 립하는 형세에 이르렀다.8) 지배층 내부 갈등의 표출과 무신권력자들의 부패 타락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켜 지방관의 가렴주구를 감시하 는 능력을 상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지방관의 탐학

전근대사회에서 지방관의 탐학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파탄이 농민봉기의

^{7)《}高麗史》 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8) 《}高麗史》 권 101, 列傳 14, 宋詝.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틈타 지방관은 농민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시켰다. 지방관의 탐학은 이미 무신정권 이전부터 성행하여 백성들이 유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니 다음의 예종과 인종대의 기록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① 지금 諸道州郡의 수령 가운데서 청렴하여 백성을 돌보아주는 자는 열에 한 둘도 없고 거의가 이익을 탐내고 공명에 팔려서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도모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니, 유망이 연이어져서 열 집 가운데서 아홉 집이 비게 되어 짐은 매우 가슴 아프다(《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즉위년 12월).

② 지금의 수령은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利로 삼는 자가 많고 근면과 검소함으로 撫民하는 자가 적어 창고가 비고 백성들이 궁핍하다. 여기에 力役이 더해지니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되어 일어나 함께 모여 도적이 되었다(《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인종 6년 3월).

예종대에 유민이 성행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종대에는 유망민이 모여도적이 되었는데,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령의 탐학임을 위의 기사는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무신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명종 2년(1172) 6월에 정부는 전국 53개의 속현에 監務를 파견하였다. 사실 감무의 파견은 주·군·현에 예속된 속군·속현민의 오랜 열망이었다. 고려시대의 지방 통치조직은 군현제도로서 주군·주현이 있고, 주군·주현에 예속된 속군·속현, 그리고 그 아래에는 향·소·부곡이 있었다. 따라서 東京·尙州·晋州 등 대읍은 조세부과 및 역역동원에 있어서 주읍의 東들이 중앙에서 그들 군현에부과시킨 부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속읍에 지웠다.》이에 속읍민들은 주·군·현의 과다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연이어 유망을 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편으로 감무제를 실시하였다. 즉 속읍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주읍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다음 예종의 조서는 감무를 파견하게 되었던 당시의 실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난번 西海道의 儒州(黃海道 信川)·安岳·長淵 등의 현에서 사람들이 유망 한다는 해당기관의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監務官을 과견하여 안무시키기 시작

⁹⁾ 金潤坤,〈羅·麗郡縣民 收取體制의 結負制度〉(《民族文化論叢》9, 嶺南大, 1988).

했더니, 드디어 유민이 점차 돌아와서 산업이 날로 성하게 되었다. 지금 牛峰 · 兎山 · 積城 · 坡平 · 沙川 · 朔寧 · 安峡 · 僧嶺 · 洞陰 · 安州 · 永康 · 嘉禾 · 靑松 · 仁義 · 金城 · 堤州 · 保寧 · 餘尾 · 唐津 · 定安 · 萬頃 · 富閏 · 楊口 · 狼川 등 군현 사람들이 또한 점차 유망하고 있으니 마땅히 유주의 예에 의거하여 감무를 설치하여 招撫토록 하라(《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원년 4월).

위의 기록에 의거해 볼 때 명종대에 파견했던 감무도 主郡縣의 속군현민에 대한 침탈을 근절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신들의 지방관 파견은 백성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쿠데타에 참여했던 하급 무인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무신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통치권의확보에 근본이 있었다. 그리하여 牧民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무인들이 많이임명됨으로써, 감무가 파견된 지역의 주민들은 주군현의 억압보다 감무의 수탈을 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신집정자들은 명종 3년 10월에는 3京·4都護·8牧으로부터 郡·縣·館·驛의 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인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었다.10)

요컨대 지방관의 탐학은 무신정권 이전에도 빈번하게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으나, 무신정권 이후에는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역량이 없으면서 재물에만 눈이 어두운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농촌사회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무인 집권자 중에는 재물을 탐하여 벼슬을 파는 자까지 있어서, 이제 지방관의 탐학은 중앙의 권세가와 연결되어 자행되고 있었다. 이들의 농민수탈은 남도뿐 아니라 양계지방까지 확산되고 있었으니, 예컨대 鄭世猷는 아들의 관직 제수를 위하여 병마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재화를 거두어 중앙에 바쳤으며, 동북면병마사 曺元正은 재화뿐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잘라 땋은 머리로 만들어 자기집으로 가져갔다. 이같은 불법적인 농민수탈 외에도 백성들은 가중되는 조세와 공역으로 고통은 날로 심해갔다.

① 문종 7년 6월에 三司가 아뢰기를, '옛 제도에 稅米 1碩(섬)에 耗米(축난쌀)는 一升(되)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제 12倉의 곡식을 京倉으로 輸納하는데여러 차례 水陸을 지나쳐 오기 때문에 손실이 많아 수송자가 이를 변상하느라고통이 심합니다. 청컨대 세미 一斛(10말)에 모미 7되로 增收케 하소서'하니

^{10)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3년 10월.

制하여 좋다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 ② 처음에 左右倉에서 쓰는 말(斗)을 재는 저울이 정확하지 않아 쌀 1섬을 바칠 때에 정액 이상으로 받는 것이 2말이나 되므로 지방 아전들이 이를 빙자하여 과중하게 거두어 오랫동안 민폐가 되어 왔었다. 이제 이를 바로잡고자 왕 명으로 租 1섬에 耗米를 합하여 17말을 넘지 못하게 하였더니 민심이 흉흉하므로 이 때 이르러 制하여 본래대로 거두게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1, 田制 租稅 명종 6년 7월).
- ③ 명종 18년 3월에 制를 내리기를, '여러 州府郡縣의 백성은 각각 貢役이 있는데, 요사이 지방관리들이 使습에게 시켜 공역의 값을 거두고 그 貢賦는 해당년도가 지나면 면제시켰다. 이에 따라 아전들도 모두 이 방법을 따르게 되어역이 고르지 못하므로 貢役을 맡은 백성들이 정처없이 떠나가고 있다'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貢賦).

고려 초에는 농민들이 국가에 쌀 1섬의 조세를 바칠 때 耗米가 1되였는데 문종대에는 7되로, 그리고 무신정권 이후인 명종 6년에는 2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가 1섬의 조세에 축난 쌀까지 합하여 17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관과 아전이 극구 반대하여 다시 예전대로 모미를 2말 이상 받도록 허용하였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미가 1되에서 2말 이상으로 늘어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국가가 이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민심을 빙자하여 지방관 임의대로 모미를 거두어 들이기로 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정부가 백성들의 편의보다는 지방관・향리등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무신정권이 사소한 개혁조차도 시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전보다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貢賦는, 이것을 수취하는 왕실·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수공업품·자연산물 등 현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지만 이를 헌납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 頁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위 사료 ③에서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부강한 자는 지방의 관원이속과 결탁하여 미리 役價를 바치고 공역에서 면제되도록 하였으니, 이로 인해 頁戶의 부담이 고르지않아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 농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유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사료에 나타나지 않으나 요역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보여진다. 본래공역 그 자체도 무거운 것이었지만 공부의 수취과정에서 불공평하게 자행된

관리의 폐단은 토지겸병 및 조세의 과중과 더불어 농민의 생산기반을 파괴하여 유랑민이나 도적이 되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대규모의 농민항쟁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3) 대토지겸병의 확대

무신란 이후에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농민항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권세가의 토지겸병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파탄에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은 田柴科體制였다. 전시과 제도는 문무백관을 비롯한 국가의 공직자에 대하여 그들이 공직에 복무하는 대가로서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다. 전시과 제도에 의하면 전국의 토지는 公田·私田으로 구분되었는데 공전은 주로 國用·麻棒의 재원이되는 토지로서 民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公廨田·屯田·內莊田 등도 이에 포함되었으며, 사전은 주로 궁원·사원의 사유지와 양반·직역자에지급된 分給收租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관리들은 국가에 대한 복무의 대가로 수조지를 분급받았고, 정부의 각 기관들 역시 토지를 배정받아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지인 민전의 자가경영을통하여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조세를 납부하여 녹봉과 국용 및 군수등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이르러 권세가의 탈점으로 인하여 재래의 자영농민의 토지지배에 큰 변동이 생겨, 토지겸병이 성행하고 농민의 佃戶化가 진행되니 전시과체제는 그 기반이 동요하여 마침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토지탈점에 관한 기사는 이미 12세기 초인 예종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토지겸병은 귀족사회의 동요가 시작된 인종대에 심화되어 무신 정권이 성립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같은 대토지겸병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전시과체제의 모순이 표면화된 데다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전시과체제의 제도적인 모순점으로는 양반관료에 지급할 분급수조지가 항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사실과 또 분급수조지 제도는 이념적으로 토지국유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功蔭田柴나 賜田같은

실질적으로 사유지와 다름이 없는 토지의 존재가 용인되고 있었다는 점이 다.11) 따라서 토지분급 질서가 무너지니 수조권에 입각한 전시과체제는 흔들 리게 되고 소유권을 강화시킨 토지겸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2세기 농업기술의 발달은 수리시설의 발전, 施肥法의 발달, 그리고 새로 우 종자의 보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歲易農法이 不易常耕 農法으로 전화되었다.12) 李齊賢의《益齋亂藁》에 의하면 경종 때에는 "압록강 이남 지방은 모두 산이므로 田地로서 해마다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없 다"13)고 하여 고려 전기에는 休耕田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 전기에는 수조법이 同積異稅制로 量田尺도 단일척이었으므로, 농산물의 소출을 기준으로 마련한 면적의 단위인 結負制가 실제의 면적을 표시하는 頃畝法과 일치하였다. 그런데 고려 중기부터 말기에 이르는 어느 시기부터는 결의 실적이 頃面積의 몇 분의 1로 축소되어 隨等異尺制라는 새 로우 양전법이 채택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일반적으로 耕地가 휴한농법의 단 계를 지양하여 常耕田化하고 다시 그 상경화한 토지가 비척도에 따라 소출 액에 차등이 있었다는 사실의 전제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농경의 발전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농업기술의 발달에 의해 상 경화가 고려 중기부터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민층에 현저한 빈부의 차이를 가져와 계층분화를 촉 진시킴으로써 많은 몰락농민을 탄생시켰다. 또한 현실적으로 토지가 많은 부

¹¹⁾姜晋哲、〈田柴科體制의 崩壞〉(《高麗土地制度史研究》,高麗大出版部、1981),313

¹²⁾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金容燮은 고려 말, 조선 초에 1結의 단위면적 이 축소 재조정되는 사실을 고려 후 · 말기 이래의 농업기술 발달의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를 발표하였으며, 李泰鎭은 《農事直說》의 연구를 통해 대몽항쟁 기를 농업기술 발달의 전화기로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魏恩淑씨는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12세기부터 농업기술이 발달하였음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들이 참고된다.

金容燮、〈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1975).

李泰鎭、〈14・15세기 農業技術의 발달과 新興士族〉(《韓國社會史研究》,知識 産業社. 1986).

魏恩淑. 〈12세기 농업기술의 발전〉(《釜大史學》12. 1988).

^{13) 《}高麗史節要》 권 2, 경종 6년 7월 李齊賢 贊.

이외에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經理 문종 8년 3월의 기사 내용에서도 고려 전기에는 歲易田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를 창출하게 되니 권세가의 토지지배 의욕을 한층 자극시켜 農莊이 형성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서 토지탈점으로 인한 대토지겸병의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최초의 인물은 인종대의 이자겸이다. 그러나 이 때는 아직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고 토지 탈점이 심화된 것은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정중부·이의민 그리고 최충헌 등 무신집정자들은 노골적으로 토지 침탈을 감행하였으니 다음은 그 예를 든 것이다.

- ① 廉信若의 토지가 峰城에 있었는데 정중부가 이를 빼앗았다가 후에 돌려보냈다. 신약이 奴를 보내어 수확하게 했는데 중부의 家奴가 중도에서 기다려이를 탈취하려 하여 서로 싸웠다. 중부가 신약의 노비를 街衢獄에 가두어 죽이고 重房을 시켜 신약을 탄핵하였다(《高麗史》권 99, 列傳 12, 廉信若).
- ② (義旼이) 백성들이 사는 집을 많이 점령해서 큰 집을 짓고 남의 토지를 빼앗아 그 탐학을 마음대로 하니 中外가 震恐하였다(《高麗史》권 128, 列傳41. 叛逆 3. 李義旼).
- ③ 최충헌이 죽으니 怡는 그가 모은 금・은 등의 진기한 보물을 왕에게 바쳤다. 이듬해에 또 충헌이 점탈했던 공상의 田民을 각기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怡).

무신집정자들의 토지겸병은 국가의 기강을 더욱 무너지게 하여 대토지소유자들의 상호 쟁탈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사료 ①에서 정중부는 判大府事로재직하고 있던 염신약의 토지도 빼앗았다고 하니, 무력한 백성들의 민전 침탈은 일상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토지겸병을 방지하여 백성과 국가의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던 최충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명종대의「賢宰相」으로 칭송을 받았던 문극겸조차도 토지를 넓히는데 주력하였다고 한다.14)

권세가의 토지겸병을 위한 수단은 이의민의 경우처럼 함부로 탈점하기도 했지만 가장 일상적인 경우는 수조권을 통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즉 科田主는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기화로 점차 규정 이상의 액수를 거둬들여 수조권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수취과정에서 농민이 조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권세가들은 황무지 등 陳田 개간이나 柴地의 전토화를 통한 토지소유권의 확보, 그리고 長利・寄進

^{14) 《}高麗史》 권 99, 列傳 12, 文克謙.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토지겸병을 확대하였다. 이들 토지 탈점은 명종 18년(1188)에 반포했던 왕의 조서에 잘 나타나 있다.

- ① 모든 州縣에는 각기 서울과 지방에 양반·군인의 家田과 永業田이 있는데 이에 간사한 吏民이 권세있는 자들에게 의탁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閑地라청하고는 권세가의 이름으로 등기하였다. 또 권세가 역시 이를 자신의 가전이라 주장하면서 公牒을 요구하여 취득하려고 즉시 사환을 보내어 편지를 써서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그 주의 관원들은 간청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田租를 징수하므로 한 토지에서 받는 조세가 두세 차례에 이르게 되었다.이에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어디에 가서 호소할 곳도 없게 되었다. …이 使喚을 잡아 칼을 씌워 서울에 알리고 登記한 吏民은 끝까지 추궁하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紫科 명중 18년 3월).
- ② 각처의 부강한 양반이 빈약한 백성이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옛부터 내려오던 丁田을 빼앗으므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더욱 가난해졌다. 富戶는 겸병과 침할을 하지 말 것이며 빼앗은 토지는 각기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借貸 명종 18년 3월).
- ③ 서울 사람으로서 향읍에 농장을 크게 벌여놓고 폐해를 끼치는 자는 농장을 몰수하고 법으로써 서울로 돌려 보내도록 하라. 道門의 승려가 여러 곳의 農舍에서 함부로 貢戶라 하며 양인을 부리고 또 거친 종이와 직물을 강제로 빈민에게 주어 그 이익을 얻으니 이를 다 금지하라(《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명종 18년 3월).

위의 사료 ①은 양반의 가전과 군인전마저 권세가의 겸병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군인전은 직역의 대가로 받은 수조지로서, 이것의 침탈은 토지분급제에 기초한 정권의 지배 질서를 동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15) 그리하여 농민들은 원래의 소유주인 군인과 권세가 두 곳에 조세를 수탈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토호들도 토지를 겸병했으며 승려들까지 대지주로서 백성을 괴롭혔으니 결국 농민들은 유망하거나 봉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극히 미약하였다. 즉 정부는 토지침탈에 대해 겸병의 주체자인 권세가는 놔 두고 사환과 이민에게만 죄를 물었으며, 사료②의 부호들에게는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이 무조건돌려주라는 지시만 내리고 있다. 즉 대토지 소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권세가들의 이익을 크게 침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¹⁵⁾ 박종기, 〈농민항쟁과 대외관계〉(《한국사》6, 한길사, 1994).

사실 정부로서도 대토지 소유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에 치명적이므로 방지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정책 시행자가 대토지겸병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다. 또한 승려들도 권세가와 더불어 농장을 설치하여 농민을 수탈하고 강제로 매매의 차익을 획득하였으므로 사원 또한 농민들의 타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12세기 이래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인해 토지를 통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니 중앙 집권체제의 문란을 틈타 권세가들의 토지겸병은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초기에는 陳田・山田 등의 개간을 통해 농경지를확대했으나 나중에는 군현의 민전, 나아가서는 양계지방의 국유지인 둔전까지도 사유화하였다.16) 권세가의 토지겸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명종 26년에 최충헌이 올린 封事에서도 "관직에 있는 자가 貪鄙하여 公私田을 빼앗아 점유하니, 일가의 비옥한 토지가 주・군에 걸치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다. 지배층은 토지겸병과 탈점을 통하여 농장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들은 조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대립하였으며 각종 수탈과 고리대운영을 통하여 농민층을 몰락시켰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는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농민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 되어 농민층의 성장이 가시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농장 확대와 국가의 수취력 강화로 인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잉여생산물에 대한 권익 이 송두리채 수탈당하고 있었다. 이제 고려사회는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던 국가 대 농민의 예속관계에서 지주 대 전호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특히 국가는 많은 농민들이 대토지 소유자의 전호로 바뀌어 조세·공부·역역을 납부하지 않아 재정이 고갈되니, 남아있는 농민들을 더욱 수탈하여 이를 보 충하려고 하였다. 이같은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11세기까지는 유리 와 도망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12세기 후반기에 무신정권이 들어서서 내부의 갈등으로 중앙 집권체제가 악화되자 같은 수탈당하는 계층 으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된 농민·전호는 연합하여 농민봉기와 같은 적극적 인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16) 《}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공민왕 5년 6월.

(4) 신분제의 동요

무신집권기의 광범위한 피지배층의 항쟁에는 단지 농민·천민·노예들만이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 지배층에 가까운 향리·토호 그리고 同正職 소유자들도 상당수가 이에 호응하였다. 무신집권기의 지방관은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부유하나 중앙과 연계된 권세가 없는 토호들에 대한 수탈도 병행하였는데, 이것이 西北民의 항쟁이나 慶州와 濟州民의 봉기에서 토호 등 향리층이 광범위하게 가담했던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公州 鳴鶴所民의 봉기나 경주민의 항쟁에서는 정치권에서 소외된 관인층인 동정직 소유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농민·천민들 못지않게 고려사회의 불만계층은 동정직 소유자들이었다.17) 동정직은 正職에 준하여 설정된 散職으로서 閑職 및 初入仕職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에 初補되는 자들은 대기하였다가 규정에 따라 實職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료층이 팽창하여 동정직을 가진 산직자들이 희망하는 실직으로의 진출은 어려워졌다.

徐兢의《高麗圖經》에 의하면 인종조에 時官이 3,000명, 散官同正이 14,000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같은 동정직 소유자들 중 특히 문관직을 지닌 사람들은 무신정권 수립 이후 실직으로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여진다. 결국 동정직 소유자들은 지배층인 관인층에 속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우가선행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그들로 하여금 농민·천민들의 봉기에 가담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신정권이 들어섬에 따른 신분제도의 변화로 인한 피지배층의 사회의식의 성장이 항쟁의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고려사회는 신분제사회로서양반귀족·중간층·양민·천민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이러한신분체제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문신귀족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신란으로 문신귀족이 몰락하고 대신 신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신이 집권함에 따라 종래 엄격했던 신분질서는 동요하게 되었다. 우선 양인에서 출세하여 병부상서

¹⁷⁾ 金光洙, 〈高麗時代의 同正職〉(《歷史教育》11·12, 1969).

(정3품)·지문하성사(종2품)까지 지낸 李英播·白任至가 있다. 그리고 이의민은 아버지가 소금과 체를 파는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延日縣 玉靈寺의 婢였는데 경대승에 이어 최고의 무신집정자가 되었다. 이 밖에 조원정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관기로서 賤出이었는데 무신란 후에 추밀원부사(정3품)까지 지냈으며, 石麟도 본래 미천하여 창고 부근에서 쌀을 주워먹으며 살 정도로 가난했으나 점차 승진하여 상장군(정3품)으로서 동서북면병마사까지 지냈다.18)

이들의 출세는 정치권에서 지배층이 교체됨으로써 가능해진 경우로서 무신정권이라는 정치적 변혁이 이들 양인·천민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다면, 명종대에 평장사 金永寬의 사노였던 平亮의 예는 경제적 부를 통해 신분을 상승시킨 경우이다. 평량은 見州에 살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된후, 권세가에게 뇌물을 바쳐 양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산원동정이라는 관직까지 얻었다. 또한 그의 아들 禮主는 隊正이 되어 八關寶判官 朴柔進의 딸과, 仁茂는 明經學諭 朴禹錫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고 한다.

평량은 외거노비로서 생산물의 반을 지주에게 바쳤으리라 생각되는데,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토대가 되어 부자가 되고 불법이기는 하나 신분해방까지획득한 특이한 예이다. 그러나 사노인 그가 특별한 무공도 없이 경제적 부를기반으로 산관이기는 하나 관직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신분이 절대적으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상황이 신종 때에 萬積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만적은 그의 연설문에서 "公卿將相의 씨가 따로 있으랴"하고 부르짖었는데19) 이는 무신정권기 피지배층의 의식구조의 단면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다.

정치·경제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혁을 촉구하고 있었다. 봉건사회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중요한 도구의 하나였던 신분제는 서서히 동요되고 있었다. 피지배층은 신분이란 태어나면서 받아들여야 할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도 있고 또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제 피지배층은 그들도 힘만 있으면 정권도 장악할 수 있다는

^{18) 《}高麗史》 권 128, 列傳 41, 叛逆 2, 曹元正 附 石麟.

^{19) 《}高麗史節要》 권 14, 신종 원년 5월.

단계로까지 의식이 향상되었다. 그리하여 고려시대 농민·천민의 항쟁은 초기에는 단순히 지방관의 탐학에 대한 항거로 출발했으나, 그들이 항거하는 과정에서 점차 의식의 각성을 가져와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자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요컨대 고려사회는 토지소유관계나 군현제, 그리고 신분제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순이 무신정권의 성립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전국적인 농민·천민의 항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李貞信〉

2) 무신정권 성립기의 농민·천민봉기

(1) 서북지역의 농민봉기

가. 서북민의 1차 봉기

무신의 난이 일어나고 이의방이 정권을 장악한 후 최초로 일어났던 대규모의 농민봉기는 서북지역에서였다. 서북지방은 군사적 특수지대로서 서경과 더불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역사적·지리적 특성으로 서경은 고려 초기부터 수도 개경과 같은 유사한 통치기구와 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기반을 확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귀족사회가 오래 지속되면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문벌귀족이 중앙의 정치권력을 독점함에 따라 서경 등 지방세력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1) 이들의 대립은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집단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인종 초에 발생한이자겸의 난의 여파로 개경세력은 약화되고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세력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묘청의 난이 실패하자 서경세력은 위축되어, 이제는 개경과 대등한 자리를 유지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고려정부는 묘청의 난을 진압한 직후에 西京畿를 없애고 江東·江西·中和·順化·三和·三登의 6현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서경 관제도 개편하여 監軍과 分司御史臺만을

¹⁾ 金潤坤, 〈高麗 貴族社會의 諸矛盾〉(《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3).

남기고 나머지 官班을 모두 없애 버렸다. 2) 서경의 제도적인 격하는 당연히 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이어졌으리라 판단되는데, 이로 인해 西京 吏民은 개경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종은 자주 서경에 행차하여 西京 吏民을 위무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나무신란으로 정권이 문신에서 무신으로 바뀌면서 다시 서경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북민은 중앙 집권체제가 동요하고 있는 틈을 타서 서경을 중심으로 봉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서경토호의 목적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면, 서경민은 사신의 행차 등으로 인한 지나친 요역 동원과 지방관의 탐학에 대한 불만에서 봉기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 양계의 경우, 이곳은 북방 이민족과 국경이 맞닿고 있는 변방지대이었으므로 고려는 특수 행정구역으로 설정하여 남도와는 다르게 통치하였다.3) 양계에 거주하는 모든 장정을 州鎭軍에 소속시켜 방수에 참여케 했으며,4) 양계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는 京倉에 운반하지 않고 모두 그 지역의 군수에 충당시키는 등 둔전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5) 양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이 많으며 토지가 척박하고 기후가 한냉하여 논농사는 거의 지을 수가 없었고 밭농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남도에 비해 수확량에 많은 차이가 있는 열등한 생산조건 아래서 경작에 종사한 둔전군은 비단 그신분이 천민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여건도 극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으리라 생각된다.6) 더욱이 고려 전기가 지나면서 점차 토지의 사유화 경향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음 내용은 후기의 사료이지만 권세가에 의해 양계지방의 토지 소유관계가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① 공민왕 5년(1356) 6월에 교지를 내려, '서북면의 토지는 일찍이 조세를 받지않고 防戍에 쓰이게 한 것이 이미 오랜 전례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권세가가 겸병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관청에서 조사, 장악하여 1결마다 賦稅 1석씩을 받아서 軍需로 지출토록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2) 《}高麗史》권 58, 志 12, 地理 3, 西京留守官 인종 13년.

³⁾ 邊太燮,〈高麗 兩界의 支配組織〉(《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李基白. 〈高麗兩界의 州鎮軍〉(《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⁵⁾ 安秉佑、〈高麗의 屯田에 관한 一考察〉(《韓國史論》10, 서울大 國史學科, 1984), 20等.

⁶⁾ 姜晋哲,〈高麗時代의 農業經營形態〉(《韓國史研究》12, 1976), 42\.

② 北界는 예전에는 私田이 없고 관청에서 租를 거두어 군량에 충당하였는데 뒤에 권세가가 다투어 점유하여 사전으로 삼았다. 그 때문에 군량의 공급이이어지지 못하여 백성에게서 양식을 거두니 백성들이 이를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다. 安州 이북이 특히 그 폐해를 많이 입었다(《高麗史》권 82, 志 36, 兵 2,屯田 신우 원년 10월).

위의 사료는 13세기 후반의 것이지만 이미 12세기 경부터 남도지방에 대한 권세가의 토지겸병과 더불어 양계지방에도 토지의 사유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계지방은 선대로부터 세습되는 남도의 민전과는 달리 북방으로 이주해 온 徙民들에게 생활보장을 위해 나눠주거나 投化한 여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곳은 개인의 소유권이 약한 민전이 많았으며, 7 國屯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계기만 마련된다면 이곳의 실정에 밝은 관리에 의해 탈점이 용이하였으며, 특히 북계지역의 토지가 먼저 권세가의 不輸私田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같은 양상은 동계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되지만, 이곳은 북계에 비해 토지가 더욱 척박하므로 권세가에 의한 사유화가 보다 완만히 진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서 북계는 토지겸병뿐 아니라 지방관에 의한 수탈도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명종 때의 병마사 정세유는 백성의 재화를 거두어 중앙에 바쳐 아들 尤當의 승진을 청탁하였으며,80 조원정은 동북면병마사로 부임하여 백성의 재물을 거두었는데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잘라 가졌다.90 또한 서북면병마사 季知命은 왕명에 의하여 군수물자인 龍州창고의 苧布를 팔아서 거란실을 사서 상납하였다.100 이같은 관리들의 백성들에 대한 수탈 양상은 중앙과 연결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었으니 양계 주민들의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민정책과 북방사신들의 빈번한 왕래로 인한 역역 부담에 대한 고통 등은 개경정부에 대한 반감을 한층더 쌓이게 하였다. 이 때 조위총이 난을 일으켜 서북면의 여러 성에 동참하도록 호소하자 병마사 등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게 불만이 쌓여있던

⁷⁾ 鄭鍾瀚、〈高麗 兩界의 民田과 그 所有關係의 變化〉(《慶北史學》6. 1983).

^{8)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4년 12월.

^{9)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15년 2월.

^{10)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5년 정월.

서북계의 토호인 都領과 주민들 대다수가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서북민의 항쟁은 이미 명종 2년에 昌州・成州・鐵州에서 그 전초전이 시작되었다.11) 이들 북계 3주민의 봉기는 지방관의 탐학에 대한 분노와 지역세력의 약화로 인한 불만에서 파생된 단순한 민란이었으나, 병마사 송유인은이들이 두려워서 수습을 시도하지 않고 관직을 포기할 정도로 불온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북계의 모든 지역이 동요하고 있었다고판단된다. 이후 명종 3년에는 문신 복고를 바라는 반무신란의 성격이 강한金甫當의 난이 일어났으며12) 이듬해에 趙位龍이 봉기하였다. 다음은 조위총의 봉기 과정을 적은 내용이다.

(조위총은) 의종조 말기에 兵部尚書로서 西京留守가 되었다. 정중부・이의방등이 의종을 죽이고 명종을 세웠으므로, 명종 4년에 位寵이 병사를 일으켜 중부등을 토벌하기를 모의하여 드디어 東北兩界 諸城의 군대에 격문을 보내어 호소하기를, '듣건대 上京의 重房이 의논하기를, 북계의 여러 성에는 대개 사납고 교만한 자가 많으므로 토벌하려고 하여 이미 대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한다. 어찌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죽음에 나아가리오. 마땅히 각자의 병마를 규합하여 빨리서경에 집결하도록 하라'하였다. 이에 岊嶺 이북의 40여 성이 모두 호응하였으나 오직 延州만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趙位寵).

조위총은 의종 때에 병부상서로서 서경유수를 겸임한 것으로 보아 문신이었던 것 같다. 무신들은 김보당의 난 이후 문신을 제거하여 중앙에서 무신위주의 정치권력을 확보한 이후 지방관까지 모두 무신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13) 따라서 조위총은 조만간 관직에서 쫓겨날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14) 그는 김보당이 문신들의 지지만으로 난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서북계의 吏民을 그의 세력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11)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2년 6월.

¹²⁾ 金甫當의 난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邊太燮,〈武臣政權期의 反武臣亂의 性格〉(《韓國史研究》19, 1978). 黃秉晟,〈金甫當亂의 一性格〉(《韓國史研究》49, 1985).

^{13)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3년 10월.

¹⁴⁾ 金錫亨은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을 무신들에 대한 문신의 복수라기보다는 혼란된 시국에 처하여 한몫 보려는 투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는데(《봉건지배계급에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 열사람, 1989), 받아들일 만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서북계 농민과 토호들의 불만을 이용하였다. 그는 서북계 주민에게 무신들이 서북계를 공격하려고 하니 이를 방어해야 한다고 선동하여, 평소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중앙정부에 대한 피해의식을 자극하였다. 그런데 연주를 제외한 절령 이북의 40여 성이 모두 호응하였다고 한다. 연주가 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지역 토호인 도령 玄覃胤·玄德秀 부자가 자신들의 토착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15)

이제 서북민과 관군은 절령을 경계선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정부는 중서시 랑평장사 尹鱗瞻에게 3군을 거느리고 가서 서북민을 공격하게 하고, 內侍禮部郎中 崔均을 東北路指揮使로 삼아 동북지역 주민이 가담하지 않도록 타이르게 하였다. 윤인첨이 거느린 관군이 절령역에 이르렀을 때, 西兵은 눈보라를 무릅쓰고 내려와 이들을 대패시켰다. 윤인첨 부대가 서병과의 첫 접전에서 패배하니 정부는 동북면으로 우회하여 서병을 공격할 계획을 세워 동북계를 선무하던 최균에게 병마사와 더불어 동북면에 주둔하여 서북지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서병을 치기 위해 和州營(永興)으로 들어갔을 때 서병과 내통하던 동북계의 주민에게 잡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16) 이제 서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반란이 양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서북민의 봉기가 절령 이북 전역에 확산되어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을 무렵에 서북면병마부사 杜景升은 창주에 있었다. 그는 서북면 전역이 조위총에 가담하여 전세가 불리하고, 그의 휘하에 있던 分道將軍 朴存偉・李彦功 등이조위총에게 잡히자, 도주하여 창주를 떠나 香山・撫州를 거쳐 지름길로 야행하여 겨우 개경에 도착하였다. 왕은 그에게 東路加發兵馬副使로 삼아 동북방면으로 보내어 반군이 동북부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경승은 孤山(安邊)・宜州(咸南 德原)・定州・長州・孟州・德州・撫州 등 동계를 거쳐 서경 북쪽의 여러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반민들의 세력이 서경부근에 한정되도록 하였다.17) 더욱이 무주 부근에는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며

¹⁵⁾ 李貞信、〈西北地域의 農民抗爭〉(《高麗 武臣政權期 農民‧賤民抗爭 研究》,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1), 44~47等.

^{16)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4년 10월.

^{17)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杜景升.

서북민에 저항하고 있는 연주가 있었으므로 관군은 순조롭게 진격할 수 있 었다.

서북계의 여러 주가 정부군에 함락당하거나 항복을 하자, 다급해진 반란 민들은 한편으로는 연주를 공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경을 공격하여 북쪽 과 남쪽에서 압축해 들어오는 정부군의 봉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연주와 개경에서의 전투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雲州郎將 君禹가 邊孟에게 편지를 보내어 延州를 달래며 말하기를, '西京 差使員이 40여 성과 여러 사원의 승려·雜軍 만여 명을 거느리고 그대의 성을 침략하고자 하니 마땅히 신중히 생각하여 속히 소집에 응하도록 하라'하니 林耀才가 (변)맹의 머리를 베어서 성 밖에 효시하였다. 조금 후에 西兵이 와서 성을 공격하자 탁재가 격파하였다. 저녁에 서병이 다시 성 남쪽에 주둔하여 타이르기를, '동북의 여러 성이 군사를 일으켜 三韓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오직너의 성이 따르지 않으므로 군사 1만여 명을 동원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다만 체厚 兄弟나 탁재・당취 등을 죽이고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는 자가 있으면 장차 후한 상을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하였다. 德秀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공격하니 서병이 크게 무너졌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4년 10월).
- ② 서병이 다시 연주를 여러 겹으로 둘러싸니 德秀가 高勇之·李唐就 등을 보내어 급히 공격하여 패배시켜 사로잡고 죽인 자가 매우 많았다. 서병이 다시성을 공격하므로 덕수가 또 나가서 격파하여 兵仗을 획득한 것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4년 11월).
- ③ 서병이 서울에 와서 개경 서쪽의 權有路에 주둔하였다. 이의방이 매우 노하여 서경사람 尚書 尹仁美, 大將軍 金德臣, 將軍 金錫材 등 귀천의 구별없이 모두 죽여 시가에 효수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다. 먼저 崔淑 등 기병 수십 명을 보내어 적진을 뚫고 돌격하여 여러 사람을 죽이니, 여러 군사들이 그 기세를 타고 공격하였다. 서병이 놀라 흩어져서 크게 패배하여 달아났다. 의방이 승전의 기세를 타고 북으로 쫓아 대동강에 이르렀다. 位寵이 흩어진 병사를 수습하여 다시 성을 지켰다. 의방이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켜 달포를 머물렀으나고통스러운 추위에 싸울 수가 없어서 다시 서병에게 패배하고 돌아왔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4년 10월).
- ④ 이 때에 行營兵馬使 및 四摠官이 싸웠으나 불리하여 서울로 돌아오는데 서병이 길을 막았다. 경숭이 이를 맞아 대동강에서 격파하였는데 무릇 20번 싸움에 모두 승리를 거두어 서병을 대패시켰다. 경숭이 돌아와 平州에 이르렀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杜景升).

서북계의 군대는 雲州의 토호가 중심이 되어 연주를 공격하였으며, 서경의

아랫쪽인 개경은 조위총을 중심으로 한 서경병이 주축이 되어 공격하였다. 특히 서북계는 연주와 운주가 인접해 있으면서 두 지역의 토호들 사이에는 북쪽 지역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곳은 연주가 완강히 버팀으로써 무려 1만 이상이 되는 군대로서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서북민 항쟁에서 결정적인 실책은 연주를 끌어들이거나 항복시키지 못한 점이었다. 연주가 배후에 있음으로써 서북민은 관군과 안심하고 싸울 수가 없었으니, 개경이 있는 남쪽만 신경을 쓰다가는 협공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연주성은 견고할 뿐 아니라 유능한 지휘자로 인해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앞의 사료 ①에 의하면 승려들도 연주성의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보아 양계의 사원들도 서북민의 봉기에 합세한 것으로 판단된다.18)

한편 조위총이 이끄는 서경군은 개경을 공략하려다가 이의방의 군사에 쫓겨 서경으로 퇴각하였다. 이로써 절령을 경계로 서북민이 장악하고 있던 북쪽 지역이 점차 축소되어 반민들의 기세가 약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군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었으니, 관군과 연주 토호들이 각기 서북민과 싸우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세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 즉 두경승이 이끄는 군대가 불리하여 서북민에게 쫓겨 북방에서 점령했던 지역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올 때도 연주민은 도와주지 않았다. 물론 연주의 토호 또한 서북민과의 싸움에 급급하여 도울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연주 토호들은 자신의 세력권을 보호・유지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지켰을뿐 정부군과 크게 연관을 맺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양계 토호들의 개경정부에 대한 독자적인 자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그들이 반민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여길 뿐,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없었다.

¹⁸⁾ 사원의 승려들이 서북민의 봉기에 합세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서북계의 전 사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 사원이 토호인 도령의 위협에 못이겨서인지, 혹은 문신들과 결탁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원이 무신정권에 반대하여 함께 봉기하게 되었는지 그 실상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사원은 지주적인 성격이 내재해 있어 농민들과 대립되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서북민의 1차 봉기에서는 토호들이 대다수 가담했던 만큼 사원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토호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봉기에 가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경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정부는 두경승을 後軍摠管使로 삼아 서경 주위의 군현들을 진압하게 하였다. 한편 명종은 조서를 내려 조위총 등에게 항복을 권유하였다. 19) 그런데 일시적이나마 조위총이 「請降」한 것으로보아 고려정부를 무너뜨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조위총은 항복을 요청했다가 다시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원래 문신출신으로서 고려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는 승산이 불투명해지자 잠시 항복할 것을 고려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조위총의 난을 계기로호응하여 봉기했던 서북지역의 농민들은 조위총 등 지배층과는 목적한 바가달랐으므로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주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항복을 번복하였다고 보여진다.

관군은 승세에 힘입어 서경을 공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앞서 관군은 서 북계의 반민들의 근거지인 連州(平南 份川)를 공격함으로써 서경의 배후세력을 없애고자 하였다. 연주가 관군의 공격으로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 조위총 은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奔院・龍岡 등 서경 주위의 군현민이 관군에 항복함으로써 연주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고 결국 두경승이 이끄는 관군에 게 함락당하였다.20) 이제 남은 반민은 서경성을 지키는 조위총을 위시한 주력 부대뿐이었다. 관군이 연주성을 함락시킨 후 곧 이어 서경성을 포위하고 총공 격을 가해오니 조위총은 그들만의 힘으로 정부군에 대항하기에는 한계에 달했 음을 깨닫고 북방의 금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무려 3차례나 금나 라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1차와 2차의 사신은 가는 도중에 죽 임을 당하거나 조위총을 배반하고 정부군에 붙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갔으며, 3 차 때 徐彦이 금나라에 도착하였으나 금에 의해 도리어 포박을 당하여 고려정 부로 보내졌다.21) 그리하여 금나라와 합세하여 고려정부를 공격하려던 조위총 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금나라로서는 조위총이 비록 절령 이북의 40여 성을 귀속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얻기 위해 승산이 불확실 한 고려의 내전에 말려듦으로써 오히려 고려와 송이 함께 금을 공격하게 되

^{19)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5년 정월.

^{20)《}高麗史》 권 100, 列傳 13, 杜景升.

^{21) 《}高麗史》 권 100, 列傳 13, 趙位寵.

는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외세를 끌어들여서라도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던 조 위총의 계획은 무위로 끝났다. 그는 서경 이북 여러 성에 사람을 보내어 구 원병을 보내도록 설득하였다. 한때는 조위총의 거병에 적극 가담했던 서북지 방의 토호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대다수가 정부측으로 돌아서 버렸다. 이같 이 변심하게 된 이유 중에는 금나라와 제휴하여 고려를 무너뜨리려는 조위 총의 행위가 서북민을 불안하게 한 점도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정부측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지역으로 宣州를 들 수 있는데 다른 성도 이와 마찬가지였 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은 선주에 관한 내용이다.

房瑞鸞은 宜州의 鄕貢進士이다. 조위총이 병사를 일으키자 서북 여러 성이모두 그에게 귀부하였다. 방서란이 그의 형 孝珍·得齡에게 말하기를, '… 하물 며 위총이 도모하는 바가 역모에 있으니 종국에는 반드시 자멸할 것입니다. 형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십시오'하였다. 효진 등이 옳게 여겨 밤에 비밀리에 고을 사람들을 달래며 말하기를, '위총이 처음에 賊臣을 처단할 것을 명분으로삼은 까닭에 여러 성이 호응하였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향하다가 개경교외에서 관군과 싸워 번번이 패배하니 관군에 의해 추격당하다가 죽은 시체가서로 겹칠 정도였다. 그들이 남은 병사를 수습하여 다시 항거하고자 하나 이미사기가 떨어져 다시 떨쳐 일어날 수는 없고, 다만 믿는 바는 험준하고 견고한성뿐이다. 만약 관군이 하루아침에 서경을 함락시키고 병력을 이곳으로 옮겨온다면 전체 성이 반드시 가루가 될 것이다'하였다(《高麗史》권 100, 列傳 13,房瑞鸞).

선주가 언제 조위총을 배반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관군이 서경을 함락시킨 다음에는 선주를 침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으로보아 윤인첨이 서경을 포위한 명종 5년 6월 이후의 어느 시기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로 보아서도 서북 여러 성의 토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는 데유리하다면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토호들의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조위총으로서는 봉기가 성공한다면, 일정한 지위를약속하는 僞官을 주어 달래거나, 심지어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민족이라도 손을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서북민의 봉기는 서경성이 정부군에 의해 포위되고, 金나라의 원조도 바랄 수 없게 되자 서북 여러 성이 정부군에 항복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 때 조위총의 원조 요청에 적극 호응한 사람들은 서북지역의 토호가 아닌 일반 농민들이었다. 다음 기록에서 토호와 백성들의 태도가 명확히 잘 나타나 있다.

麟州사람 康夫・祿升・鄭臣 등이 防守將軍 蔡允和를 죽이니 왕이 內侍祗候 崔存을 보내어 달래게 하였다. 얼마 후에 또 義州分道 尹光輔・防禦判官 李彦升을 죽이고 위총에 호응하였다. 위총이 사람을 보내어 여러 성의 우두머리를 僞官에 임명하였다. 인주도령 낭장 洪德이 강부 등을 잡아 위총에 항거하려고 하였다. 강부 등이 소매 속에 칼을 넣고 (홍)덕의 집에 이르러 그를 해치려고 하니 덕이 문에 복병을 두었다가 그를 살해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6년 3월).

위와 같이 조위총의 모병에 대해 도령 등 토호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강부·녹승·정신 등 일반 주민들은 적극 지원하였다. 이것은 서북민의 1차 봉기가 끝난 이후에 봉기가 일어난다면 이제 토호들이 아닌 농민들의 주도로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였다. 토호들은 자기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위총이 거병했을 때 호응하여 급속히 일어났으나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의를 상실하고 조위총에 호응하는 주민들을 붙잡아 정부에 바침으로써 그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이와는 달리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거할 자세를 견지했던 것 같다. 그들은 정부에서 파견한 防守將軍 등을 죽임으로써 농민항쟁을 다시 유발시켰다. 그러나 조위총은 농민의 결정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토호들에게 위관을 주어 회유하는 등 양계 지배층의 환심을 사기에만 급급함으로써 그의 패망은 필연적이었다. 결국 명종 6년 6월에 무려 1년 동안이나 버티던 서경성은 윤인참·두경승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조위총은 처형되었다.

서북민의 봉기는 무려 2년 이상 지속되어, 개경정부를 공포에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진압시킨 후에도 다시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강경한 탄압책을 쓰지 못하였다. 즉 서북계의 40여 성과 동북계의 많은 주진들이 난에 가담하였으나, 그 책임을 물어 참수된 사람은 조위총 한 사람 뿐이며 나머지 110여 명은 감옥에 가둔 것으로²²⁾ 보아 처벌이 최소한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북민을 가혹하게 처벌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

^{22)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6년 6월.

유는 서경성을 관군이 장악했다고는 하나 아직 항복하지 않은 반민들이 곳 곳에 상존해 있었으므로 개경정부가 안심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 서 묘청의 난이 끝난 이후에 처벌당한 사람들의 수나 그 가혹함을 보면²³⁾ 이 때에 얼마나 가벼운 형벌만 가했는지 잘 비교가 된다. 이같이 끝까지 투 항을 거부한 서북민을 중심으로 서경성이 함락된 지 1년도 못되어 다시 봉 기하게 되었다.

나. 서북민의 2차 봉기

서경성이 함락되고 조위총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서북지역은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다시 소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북민의 봉기를 진압한 후에 공이 큰 장수들을 치하하고 관직을 높여주었을 뿐 봉기의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은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서북민의 2차 봉기는 명종 7년 4월 靜州・義州에서 일어났으며이어서 5월에는 서경에서 발생하였다.

- ① 조위총의 남은 무리 500여 명이 난을 일으켜 留守判官 朴寧과 먼저 항복했던 자들을 죽였는데, 副留守 朴挺義・司錄 金得礪・書記 李純正 등은 몰래 도피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처음에 관군이 서경을 포위 공격했을 때 성을 넘어와 항복한 자가 무려 천여 명이었다. 성이 함락되려 하니 성안의 장정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다. 그 뒤에 항복해 온 자들이 도피한 자의 처라고 하여 부녀자를 약탈하고 재산을 강탈하였으므로 장정들이 난을 일으켜 이러한 변란에 이른 것이다. 大將軍 李景伯, 郎中 朴紹를 보내어 달래게 했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7년 5월).
- ② 조위총이 이미 패함에 남은 무리들이 다시 모여 3軍으로 나누었다. 思進・ 軾端・進國은 中軍行首로 삼고 戒訓은 指輸가 되고 金甫는 前軍行首로 삼고 光 秀는 後軍行首가 되었다. 嘉州・渭州・泰州・漣州・順州의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 면서 앞뒤에서 겁탈함에 크게 백성들의 근심이 되었다. 慈州・肅州를 불태우고 妙德寺・香山寺 등 여러 사원을 도륙하였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朴齊儉).

서경의 경우, 앞서 1차 봉기에서 서경성이 함락될 때 항복하지 않고 도망 갔던 무리 500여 명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이 다시 봉기하게 된 원인은 먼저 관군에 투항했던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고 도주했던 사람들을

^{23) 《}高麗史節要》 권 10, 인종 14년 2월.

역적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부녀자와 재산을 약탈하므로 분개하여 난을 일으켰다고 한다. 서경뿐 아니라 서북계의 주민 역시 조위총이 죽고 서경‧璉州가 함락된 후에도 다시 일어나 험난한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계속적으로 관군에 저항하고 있었음을 위의 글은 보여준다. 그들은 관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리를 모아 3군으로 나누었는데, 이들 지도자의 이름을 보면 思進‧軾端‧進國‧戒訓‧金甫‧光秀 등이다. 이들 중 姓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김보 한사람 뿐이다. 여태까지 《高麗史》의 기록으로 보아 성이 누락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대다수가 농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로써 이제 서북계의 대정부항쟁의 주도권은 도령 등 토호계층에서 농민들에게로 넘어갔다고 파악된다.

사실 도령 등 토호들은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었던 만큼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부는 관군에 투항하고, 일부는 북방의 금나라와 제휴하여 그들의 살길을 모색하는 데 급급했을 뿐, 굳건하게 싸우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조위총의 주도로 시작된 서북민의 1차 봉기가 무려 2년 이상 계속될수 있었던 원인도 사실은 농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힘입은 것이었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도령들의 명령에 의해 정부군과 맞서 싸웠지만, 차츰 난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봉기해야 하는 당위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막상 1차 봉기가 종식되었을 때 생활기반이 무너졌을 뿐아니라 정부의 보복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남도의 농민들과는 달리 유사시에 병사가 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서경과 서북계의 묘향산을 중심으로 두 세력으로 나뉘어 관군에 대항하였다. 정부는 抄猛班行首 李頓綽·金立成을 파견하고 뒤이어 5軍別 號와 서북면병마사 두경승, 상장군 이의민 등에게 여러 방면으로 군대를 보내어 서경과 서북계를 공격하게 했다.²⁴⁾ 이 때는 남쪽에서 일어났던 명학소민의 봉기가 진압되고 그 주모자였던 亡伊가 항복을 요청하던 시기였다. 정부는 이제 남쪽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고 서북계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서경민은 물자가 풍부한 관군과 직접 부딪치기에는 전력이 미치지

^{24)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7년 7월~9월.

못함을 깨닫고 그들이 주둔하던 서경 曇和寺를 버리고 香山(炒香山)으로 근 거지를 옮겨 서북민과 합류하였다.

정부는 다시 서북계에 박제검을 보내어 興化·雲中道의 병사를 모집하여 반민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들은 우세한 무기와 물자를 지닌 정부군과 맞서 싸우지 않고 주로 산골짜기에 숨어서 유격전을 통해 관군과 대치하였다. 특히 그들은 주변 농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관군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여 연전연승할 수 있었으니, 당시 민심의 동향을 나타내 주는 일면이다. 특히 농민들은 妙德山·향산에 있는 여러 사찰들을 불태웠을 뿐아니라 寧州 靈化寺를 공격하여 사찰에 대한 적개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으며, 또한 승려들을 몰아쳐서 병사로 만들어 漣州를 공격하게 했다. 농민군이연주를 공격했다는 사실은 이제 산속에서 내려와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경지역을 다시 장악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谷州・遂安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개경과 서경 사이에 있는 여러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서경을 관군으로부터 고립시켜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 같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서경성의 관군을 몰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淸野작전에 의한 식량부족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변 농민들에 의해 식량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졌으며, 많은 농민들이 정부군과 싸우느라고 농사를 짓지 못하여 농토는 황폐해졌다. 결국 양식부족을 견디지 못한 대다수의 반민들은 정부군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기록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① 西賊의 우두머리 광수를 校尉로 삼고 김보를 攝校尉로, 사진·식단·계혼을 隊正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다니며 노략질하는 날이 오래되니 보루가 없는 촌은 이미 약탈되어 남은 것이 없고 大城은 굳게 지키고 있어서 금방 깨뜨릴 수 없었다. 들에서는 구할 것이 없어서 점차 굶주려 군색해졌으므로 스스로 투항하여 목숨을 연장시키려 하였다. 그 때 마침 嘉州賊이 길에서 昌州의 記事 白公軾을 만나 먼저 항복할 뜻을 말하였다. 齊儉이 그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달래며 부르니 여러 곳에 주둔해 있던 적들이 서로 이끌고 와서 항복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8년 10월;《高麗史》권 100, 列傳 13, 朴齊儉).

② 齊儉이 매번 투항자가 오면 번번이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너희들도 모두 우리의 백성이다' 하면서 창고를 열어 진휼한 것이 전후 합하여 무려 600여 석 에 달하였다. 이에 그들의 소망을 들어줘서 龜州·漣州 등에 나누어 살게 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그 3군의 行首에게는 모두 驛傳의 편의를 제공하여 서울로 보내었다(위와 같음).

③ 오직 中軍行首 進國만 항복하지 않고 그의 무리 150여 명을 이끌고 북쪽 오랑캐에게 투항하고자 하였다. 제검이 군사를 보내어 모두 잡아 죽였다. 龜州 別將 東方甫 등 17명은 일찍이 적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 왕래하였으므로 역시 모두 죽였다(위와 같음).

위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민군의 결정적인 패인은 보급품의 부족이었다. 특히 북쪽지방은 남도에 비해 토지가 척박하며 겨울이 춥고 길어서, 그들이 산속에서 자급자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변 농민들의 양식을 빼앗아서는 안되었다. 그런데 농민군은 주민들을 약탈하여 주변 마을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농민군에 대한 지지도를 약화시켜 정부군의 공격이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그들은 점차 고립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 때를 기하여 관군은 농민군의 투항자에게는 양식과 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 우두머리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겠다고 회유하였다. 위의 사료 ①과 ②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농민군이 항복을 하고, 반민의 우두머리였던 광수·김보·사진 등은 각기 교위·섭교위·대정의 벼슬을 제수받았다. 오직 중군행수 진국만은 항복을 거부하였는데, 아마 그는 농민군이 목숨을 바쳐가며 투쟁한 보람도 없이 무조건 투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급품이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항쟁은 무리였다. 그리하여 진국을 따라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은 150명에 불과했다. 역부족을 느낀 그들은 북방의 이민족에게 가서 구원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미처 출발하기도 전에 관군에 의해 붙잡혀 처형되었다. 이로서 서북민의 2차 봉기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다. 서북민 봉기의 의의

서북지역의 농민봉기는 초기에는 서경유수 조위총이 양계의 도령을 움직여, 당시 무신정권 초기의 혼란한 정세를 틈타 무신집정자들을 배격하고 그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봉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수탈로 고통을 겪고 있던 농민들과 자기세력 구축에 목적을 둔 양계 토호들이 이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양계지방의 농민들은 유사시에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점이 주변 농민들의 지원과 더불어, 관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조정은 반민들을 달래려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

⑦ 짐이 不德한 몸으로 잘못 왕위를 계승하여 지혜가 적고 어두우며, 刑政이어긋나고 위엄은 가볍고 덕은 적어서 아랫사람들을 잘 통솔하지 못하여 서북지방의 백성들이 잇따라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다. ④ 여러 고을에서 백성들과 근심을 나누는 지방관은 백성들을 해롭게 함으로써 그들이 유리하여 살 곳을 잃어버리게 하지마라. ④ 너희들 刑官은 자비심을 가지고 형옥을 처결하라. ② 요사이 奔競이 풍습으로 되고 형정이 매우 어긋나며, 公門을 열고 私路를 막지못하여 어진 이를 받아들이는 길을 넓게 하지 못하고 있다. ④ 만약 忠・孝・友・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천을 묻지 말고 특별히 표창하여 권유하도록 하라. ④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이 정도를 넘고 연회가 너무 지나치니 그런 것을모두 제거하도록 하라(《高麗史節要》권 12, 명종 5년 4월).

①에서 국왕은 서북민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을 지방관의 탐학과 형벌의 남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그리하여 지방관의 백성 침해, 형벌의 남용을 막아 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였다. ④는 토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인다. 즉 뇌물의 수수에 의해 관직에 등용되는 분경으로 인해 지방, 특히 양계의 인재들이 중앙에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로무신 권력자들이 행하였다고 하였다.25) 이로써 그는 당시 정치적 모순이 무신들의 전횡에 의한 것이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봉기의 원인을 무신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양계 토호들을 중앙정치권에서 멀리한 것은 무신정권 이전부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사료에서 알 수 있다.

²⁵⁾ 朴龍雲,〈高麗時代의 科擧 製述科의 運營〉(《高麗時代 蔭叙制와 科學制 研究》, 一志社, 1990), 318쪽에서는 제술과의 급제자 1/3 정도만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편성하였지만 광종대에서 공양왕 때까지 전체 급제자의 1.4%가 북계, 3.3%가 동계 출신이다. 과거시험을 통한 관계 진출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서를 통한 진출은 더욱 미미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玄德秀를) 후에 이부낭중을 제수하니 간관이 아뢰기를, '변방 사람에게 제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였다. 이에 병부낭중으로 고쳐서 임명하였다 (《高麗史》권 99, 열전 12, 玄德秀).

현덕수는 延州地方의 도령으로서 조위총의 난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서북계의 40여 성이 모두 조위총이 일으킨 반란에 호응했을 때 오직연주만이 끝끝내 반민들에 투항하지 않아 관군이 서북민의 봉기를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공로가 큰 현덕수에게 邊城人이라고 하여 특정한 관직을 제수하지 않은 사실은 이전부터 서북인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물론 개경의 집권자들이 변성인이라는이유로 특정한 관직을 제수할 수 없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북계의 토호세력이 중앙 정치권에까지 침투하는 것에 대한 견제책이었다. 그러나변성인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자체가 양계 토호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보여준다. 이같은 차별정책은 서북민의 항쟁이 끝난 이후에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위의 사실은 말해 주고 있다.

그 외에 국왕은 충·효·우·공 등의 유교도덕을 선양하였다. 이는 서북민의 봉기가 고려왕조를 부정하는 반역임을 강조하여 충에 위배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으리라 보여진다. 농민봉기에서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계급간의 갈등으로 생각되는데, 앞의 조서 가운데 때의 내용은 지배층의 사치로 인해 빈자와 부자와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치금지가 일반 농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배층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권세가나 대토지 소유자의 지나친 사치는 빈곤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충분히 비판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종의 조서는 지배층의 시혜 조치로서 서북인에 대한 일시적인 위무책에 불과할 뿐 농민봉기의 근본 원인을 살펴 사회체제를 개혁하고자하는 의지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북민의 1차 봉기가 실패하여 대부분의 토호들이 이탈한 이후에도 농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계속하여 봉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서북민의 2차 봉기가 끝날 즈음인 명종 8년 정월에 정부는 농민들이 다시 봉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탐학한 지 방관을 축출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察訪使를 파견한 것이다.

- ① 찰방사로 공부낭중 崔詵을 興化道에, 형부원외랑 崔孝著를 雲中道에, 합문지후 林惟謙을 朔方道에, 감찰어사 崔敦禮를 沿海溟州道에, …장군 宋君秀를全羅州道에, 형부시랑 李文中을 廣淸州道에, 기거주 皇甫倬을 春州道에 나누어보내어 백성들의 질고를 물어서 관리 및 奉使者의 상벌을 실시하였다. 그 시기를 10년 이전까지로 한정시켜 성적의 우열을 追論토록 하였는데 무릇 탄핵받은자가 800여 명이나 되었다. (최)효저는 조사함에 정밀하지 못하다고 하여 파면되었다. 《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8년 정월).
- ② 전라도의 宋君秀는 승진과 파면을 마음대로 하였으나 권문의 자제라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8년 정월).
- ③ 각 도 찰방사가 잡아온 贓吏 35명을 용서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8년 3월 신해).
- ④ 조서에 이르기를, '짐이 듣건대 지난 해에 10도 찰방사가 관리를 출척할 때 어긋남이 많았다고 한다. 그 중에 지나치게 포상을 받은 자는 오히려 괜찮으나, 잘못 형벌을 받고도 원통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자들은 가히 애석하지 아니한가. 그 모두를 용서하고 옛날 관직에 따라 서용토록 하라'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1년 9월 병자).

정부는 각 도에 찰방사를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 탐학한 수령을 내쫓게 했다.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북민을 회유하기 위해서이지만 그 외에도 남쪽지방에서 명종 6년(1176)부터 1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결과 무려 800여 명이 탄핵됨으로써 지방관 비리의 쇄신을 꾀하였다. 그러나사료 ①·②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파견된 찰방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인물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위의 내용에서 최효저는 출착이 정밀하지 못하다고 파면되었지만, 송군수는 관리들의 파면과 임명을 마음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권세가의 한 사람인 송유인의 아들이므로 아무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찰방사도 세력의 강약 여부에 따라 폄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지방관의 탐학은 중앙에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가 한 요인이었다면, 중앙의 권세가들이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면서 지방관의 수탈을 방지하겠다는 자체 가 한계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정부는 서북민의 항쟁이 미처 나기도 전에 찰방사의 탄핵을 받아 이송된 贓吏 35명을 사면하였으며, 서북 민의 항쟁이 끝난 이후에는 모두 복직시켰다. 결국 정부는 백성들을 일시적 으로 무마시키기 위해 찰방사를 보냈을 뿐 피지배층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서북지방 농민들에 대한 시책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았으나 토호들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은 서북민의 2차 봉기가 끝난 직후에 정부가 행한 토호들에 대한 회유책이다.

왕이 便殿에 나아가 동서 양계 여러 성의 上長과 都領을 인견하고 상장에게는 匹段을, 도령에게는 비단옷과 金帶와 말 1필씩을,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각각 포 10필을 하사하였다. 西賊을 평정한 이후에도 도적이 자주 일어나므로 다시 동요할까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하사가 있었으니, 식자들은 그 고식책을 한탄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8년 11월 무자).

정부측에서 볼 때는 양계 토호들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농민들과 토호 두 계층을 모두 적으로 만들고서는 양계를 다스리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고려의 국경지대였다. 정부는 양계지역의 기득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고려정부에 대항할 수 없던 토호들을 포섭함으로써 서북지역민의 항쟁을 종식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양계 토호들은 정부측의 후대를 받았다. 그리고 만일 고려정부에 대항하지만 않는다면 앞서 봉기에 가담했던 일을 불문에 붙일 뿐 아니라, 양계지역에 대해 정부측의 지나친 간섭은 배제하겠다는 모종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같은 토호들과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자신감을 얻게 되어, 2차 봉기 이후에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반민들에 대한 정부측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즉 정부는 서북지역의 도령 등과 화해하였으므로 양식을 나누어 주어 농민군을 위무한다고 하여 龜州·嘉州 등 여러 성에 모이게 하고는 곡식창고에 가두었다. 이에 농민군은 정부가 그들을 속인 데 분개하여 곡식창고에 불을 질러 함께 타 죽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다.26) 이는 양계 토호들의 묵인이 없었더라면 함부로 자행될 수 없는 일로서, 2차 봉기가 끝날

^{26) 《}高麗史》 권 20, 世家 20, 명종 9년 4월 경술.

무렵에는 토호들이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정부측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살아남은 반민들은 牛方田을 중심으로 뭉쳐서 계속 항거하였으나 결국 역부족으로 패배하였다.²⁷⁾ 이에 따라 토호들을 제외하고는 서북지방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별다른 개선책을 약속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서북민의 항쟁은 무신정권이 들어선 후에 최초로 대규모로 일어나서 민중의 힘을 과시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묘청의 난에서도 많은 인명을 학살한 정부가 서북민의 항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 수뇌급인 최소한의 인원만 죽이거나 가두는 데 그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이제는 민중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방관의 탐학이나 중앙 정부의 과도한 공물 징수에 분개하여 일어났으나 이같은 수탈체제가 고려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것임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젊은 서북민의 항쟁이

비록 실패했으나 5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서북민의 봉기를 시발점으로 남쪽에서는 공주 명학소에 이어 全州・雲門・草田・慶州 등 각지에서 농민・천민의 항쟁이 계속되었다. 이 봉기의 후유증으로 서북지역은 명종 10년 이후에는 다소 조용해졌지만, 고종대에 몽고족의 침입으로 고려 조정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시 일어났다. 즉 서경의 군인 崔光秀가 중심이 된 고구려부흥운동, 韓恂・多智로 대표되는 義州民의 봉기가 그것이다. 서북민의 봉기는 무신정권기 농민항쟁의 효시로서 피지배층의 힘을 결집하여 지배층에 항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5년 이상이나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도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정부 수립까

지는 표방하지 못했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

가. 명학소민의 1차 봉기

북쪽에서 서북민의 항쟁이 치열할 즈음 이번에는 남쪽에서 농민·천민들이 봉기하였다. 명종 6년(1176) 정월에 公州 鳴鶴所에서 시작된 봉기는 천민집단 인 所에서 발생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우선 소의 성격을 간단히 알아

²⁷⁾ 위와 같음.

보자. 소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라에서 주・군을 설치할 때 그 田丁・호구가 현이 되지 못하는 것은 鄕이나 部曲을 두어 그 곳에 있는 읍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는 또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金所・銀所・鍋所・鐵所・絲所・紬所・紅所・瓦所・炭所・鹽所・墨所・藿所・瓷器所・魚梁所・薑所의 구별이 있어 각각 그 생산물을 공급하였다(《新增東國與地勝覽》권 7. 京畿道 驪州牧 登神莊).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각지에 존재하던 동족집단을 신분적 계층적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향·부곡처럼 소가 군현제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향·부곡이 농경을 주업으로 했던 데 비해 소는 금·은·동·자기 등 특수공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므로 농경을 주산업으로 하고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려사회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소에게 집중적으로 요구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소는 국가의 대안없는 수탈체제에 시달려 왔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현종대 이후는 거란과, 인종대 이후는 여진과의관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려정부가 이들 국가에 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던 대외관계 역시 소민의 수탈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소를 기반으로 발달하는 수공업이 국가의 소에 대한 맹목적 수탈체제에 시달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해 농업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고려 전기에는 一易田・再易田이 많아 常耕田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²⁸⁾ 그러나 인구의 증가・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점차 상경전이 증가되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문종대 이후의 통치기구 체제의 완비, 문물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토대로 중세사회에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도 상당히 진척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 토지제도사 연구에 관한 여러 학설에 따르면 結負制는 농산물의 소출을 기준으로 마련한 제도(면적의 단위)로서 그것이 실제의 면적을 표시하는 頃畝法과 일치하여 고려 중기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 후기 언제부터인지 그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隨等異尺制라는 새로

^{28) 《}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經理 문종 8년 3월. 李齊賢、《益齋亂藁》권 9, 史贊 景王 참조.

운 量田法이 채택되어 결부제의 내용에 큰 변동이 생겼다. 이같은 변화는 경지 일반이 휴한농법의 단계를 지양하여 常耕化하고, 다시 그 상경화한 토지가 비척도에 따라 소출액에 차등이 있었다는 사실의 전제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²⁹⁾ 특히 무신정권 전후의 혼란기와 원 간섭기에는 봉건지배층의 수탈이 가중되고 있어서 생산계층으로서의 농민층에게는, 休耕을 통한 농지 경영의 소출을 넘어서는 토지생산력의 증대가 요청되고 있었다.³⁰⁾ 이같은 농경의발전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상경화는 고려 중기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경전의 확대로 인해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생활은 점차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생산력이 증가하여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자 지배층은 그들의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토지겸병에 착수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은 이자겸이었다. 이 이후에도 권세가들은 탈점·매매·기진·개간 등 여러 형태를 통하여 민전을 탈취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려사회는 지주와 전호 혹은 전호도 되지 못하고 토지로부터 유리되어 떠돌아 다니는 유랑민 등 여러 계층으로 분리되어 가고 있었다. 이는 무신정권이 성립된 이후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화되는 형편이었다. 이같은 농경사회의 분화로 인해 토지를 잃어버린 농민층의 불만과 국가의 직접 수탈체제에서 벗어나고자했던 소민들의 신분해방운동이 합세하여 드디어 명학소민의 봉기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²⁹⁾ 金容燮、〈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1975), 80쪽.

³⁰⁾ 후대의 사료지만《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우 14년 7월 조 趙浚의 1차 상소문에 의하면 '兼倂之家'가 收租하면서 1결을 3~4결로 늘려 잡았다고 한다. 이는 조준이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一易田·再易田 따위가 常耕田으로 변천함에 따라 일어날수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金泰永,〈科田法體制下의 土地生産力과 量田〉,《韓國史硏究》35, 1981, 50쪽 참조).

또한 이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지만 우왕대에 伊金이라는 사람이 彌勒佛로 자칭하면서 민심을 선동한 기사가 남아 있는데, 이 내용에는 당시 백성들의 바라는 바가 축약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즉 농경에 가장 중요한 소·말을 잡아먹지 말 것과 부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한 해에 두 번 수확을 거두었으면 하는 이모작에 대한 꿈이 나타나고 있다. 이금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에게 민심이쏠리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고려 말기에 농민들이 이모작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상경전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처음 명학소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전한다.

公州 鳴鶴所 사람 亡伊・亡所伊 등이 무리를 불러 모아 山行兵馬使라고 스스로 칭하고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정부는 祗候 蔡元富와 郎將 朴剛壽 등을 보내어 달래었으나 적은 따르지 않았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6년 정월).

위의 기사 내용으로서는 난이 어떤 연유로 발발되었는지 구체적인 실상은 알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민란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그 지역의 토호나 지방관의 가혹한 수탈이 원인이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서 명종 12년(1182)에 일어났던 管城・富城 그리고 全州民의 봉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가의 대민수탈체제에 대한 반발, 피지배층 의식의 향상, 지배층의 변화로 인한 중앙집권체제의 약화 등 내부적으로 잠재된 고려사회의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봉기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지방관의수탈로 인한 반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반란은 대체로 탐학한지방관을 교체하고 백성들을 진무함으로써 진압되었다. 그런데 이들 농경민이지방관의 직접 통치 하에 있었으므로 지방관아에 일차적으로 대립하는 형세를보임에 비해 所는 중앙정부의 직접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31) 명학소의 봉기는 바로 중앙정부에 대립되는 형태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반란의 주모자는 망이·망소이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世宗實錄地理志》姓氏條에 亡氏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이를 이름으로 본다면 추측컨대 천민, 즉 所民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명학소는 어떤 소였는지 확실하지가 않다.32) 현재 대전지역인 이곳은 토지가 척박하고 지하자원이 전혀 생산되지 않으며 바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수공업집단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봉기에서 그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에 의해 폭발된 것이 아니고 서북민의 봉기나 경 주지역 농민항쟁처럼 미리 계획된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무 파견 등으로 회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수취체제의 변

³¹⁾ 北村秀人、〈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朝鮮學報》50, 1969).

^{32)《}新增東國輿地勝覽》권 17, 公州牧 古蹟條에 의하면 명학소는 儒城에서 동쪽으로 10리에 있었다고 한다.

화나 신분구조의 개편 등 국가적인 큰 변혁을 통해서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점이 명학소민의 봉기가 명학소라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 백성들의 호응을 받을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이들의 봉기가 장기화될 것을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였다.

이들이 봉기했을 때 소민뿐 아니라 주변 농민들도 적극 호응하였다. 망이 · 망소이가 이끄는 명학소민이 일어나서 바로 공주를 함락시켰다는 사실은 주변 농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국가나 지방관의 수탈과 더불어 권세가의 대토지겸병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표면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명학소민의 봉기는 천민집단이라는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지나일반 농민에게까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후 蔡元富, 낭장 朴剛壽 등을 파견하여 진무하였으나 빈민들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3,000명의 군대를 보내었다.³³⁾ 그러나 관군이 반민들에게 번번이 참패를 당하니, 놀란 정부는 명학소를 忠順縣으로 승격시켜 회유하였다.³⁴⁾

충순현으로의 승격은 국가의 기본정책에 위배되는 조처였다. 고려정부의 향·소·부곡과 같은 천민집단에 대한 대책을 보면, 유공자의 출신지역은 군·현으로 승격시키고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군·현을 부곡·소 등으로 강 등시키는 것이 상례였다. 위기감을 느낀 고려정부는 명학소를 승격시켜서라도 봉기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적 지배질서의 원칙을 정부에서 먼저 무너뜨림으로써, 이제 백성들이 힘을 앞세워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쟁취하려고 할 때에는 정부도 양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어 피지배층에게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를 통해 이제 피지배층은 국가의 직접 수취대상인 소가 원래부터 있었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지배질서의 일환으로 존재했을 뿐임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명학소민의 봉기는 소민들만의움직임이 아니었다. 주변의 농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커졌으므로, 망이를위시한 명학소민들이 현으로의 승격에 만족하여 봉기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33) 《}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6년 2월 정해.

^{34) 《}高麗史》 권 19, 世家 19, 명종 6년 6월 병술.

하더라도 마음대로 될 수는 없었다. 또한 정부의 말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문제였다.

다음의 사료는 반민의 계통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지배층 내부의 불만세력들이 이에 동조하는 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① 南賊이 禮山縣을 함락시키고 監務를 죽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 중 6년 9월 신해).
- ② 良醞令同正 盧若純과 主事同正 韓受圖가 (咸)有一 및 平章事 李公升・內侍郎將小監 獨孤孝 등을 사칭하고 편지를 써서 忠州賊 亡伊에게 보내니 망이가 ユ 使者를 붙잡아 安撫別監 盧若冲에게 보내었다(《高麗史》 ヲ 99. 列傳 12. 咸有一).
- ③ 南賊首의 우두머리 孫淸이 스스로 兵馬使라 칭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6년 11월 임인).
- ④ 大將軍 鄭世猷와 李夫를 處置兵馬使로 삼아 좌우도로 나누어 가서 남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정세유 등이 開國寺 문 앞에 모여 군사를 훈련한 지 달포가 지난 후에 떠나갔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6년 12월 경자).

망이 등이 충주까지 점령하였음에도 정부의 회유로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양온령동정 노약순과 주사동정 한수도가 농민군에게 가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농민·천민 못지 않은 고려사회의 불만계층은 동정직 소유자들이었다. 고려시대의 동정직은 정직에 준하여 설치된 산직으로서, 그에 보충되는 자들은 대기하였다가 규정에 따라실직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료층이 팽창하여 동정직 散官들이 희망하는 실직으로의 진출은 어려워졌으며 인종대에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 35) 결국 동정직 소유자들은 지배층인 관인층에 속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이러한 불만으로 피지배층과 이해가 접근될 수있었다. 36) 그러나 망이 등은 관인층의 제휴 요청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명학소민은 使者를붙잡아 관군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들과 연합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이같은 행위는 정부가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확실하

³⁵⁾ 徐兢,《高麗圖經》 권 16, 官府 倉廩.

³⁶⁾ 金光洙、〈高麗時代의 同正職〉(《歷史教育》, 11·12, 1969), 167~169\.

다면 더 이상 진격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때 명학소민이 아닌 또다른 南賊이 보인다. 위의 사료에 의하면 남적이 예산현을 함락시키고 감무를 죽인 기록이 나오며, 그로부터 두 달 후에는 손청이 병마사를 칭하였다고 한다. 예산현의 남적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수 없지만 명종 7년(1177) 2월에 伽倻山의 적괴 손청을 죽였다는 기록에서 예산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 일대는 손청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즉 손청 등은 명학소민이 봉기하여 공주지역이 소요에 휩싸인 틈을 타서 예산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가야산을 거점으로 영역을 넓혀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무렵 망이 등은 공주의 동북쪽으로 나아가 충주까지 영역을 확보하였다.

망이 등이 이끄는 주력부대가 소민인 데 비해 손청은 토호이며37) 또한 농민군을 이끌고 있으므로 미묘한 갈등은 예상되지만 일단 연대관계는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판단된다. 즉 그들 공동의 타도대상인 정부군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들의 제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망이 등이 표명한 정부군과의 화해의사는 손청을 가장격분케 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병마사로 칭하였으며 망이 등과의 연합항쟁을 포기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그는 농민군을 지휘했던 만큼, 신분해방보다는 수탈체제의 극복이나 토지겸병으로 인한 고려사회의 모순의극복에 더욱 초점을 두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반민들의 분열은 점차 대오를 정비하여 난을 완전히 진압하려는 정부측에서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현상이었다.

정부는 우선 최초로 봉기했던 소민들을 회유하여 연합전선을 깨뜨린 후, 세력이 약화된 반민들을 각각 따로 진압하려는 작전을 감행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망이와 손청은 완전히 두 파로 나누어 졌고, 이 때를 기해 중앙에서는 정세유와 이부로 하여금 각기 좌우도로 나누 어 충주와 예산방면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게 하였다.

중앙에서 대군을 보내어 반민들을 진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망이 등은 정부에 대해 강화를 요청하였다. 명학소민이 항복했다는 《고려사》의 저술 내용은 정부측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며, 사실은 정부와 명학소민 사이에는

^{37)《}世宗實錄地理志》권 149, 禮山縣의 土姓에 孫氏가 보인다.

강화가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강화를 맺은 구체적인 조건은 알 수 없으나 명학소민은 충순현으로의 승격과 지방관 파견에 만족하여, 정부가 반민에게 보복하지 말고 생업을 보장하라는 정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봉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나. 명학소민의 2차 봉기

1차 봉기가 끝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명학소민은 다시 일어났다. 그들은 가야사를 함락시키고 黃驪縣(驪州)・鎭州(鎭川)도 쳐들어갔다. 그리고는 竹州(竹山)의 弘慶院을 불지르고 승려들을 살해하고는 주지승을 위협하여 개경에 편지를 보내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의 향리를 현으로 승격시키고 또 수령을 두어 안무케 하더니, 다시 되돌려 군사를 내어 토벌하여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 가두니 그 뜻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차라리 창, 칼아래 죽을지언정 끝까지 항복한 포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서울에 이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38)

정부는 명학소민과 강화를 맺어 현으로 승격시키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주민들을 안무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사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민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 가두었던 모양이다. 이에 명학소민들은 정부가 소에서 현으로 승격시켜 준 자체가 봉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처였음을 깨달았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봉기의 진압이지 봉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피지배층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신분해방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정부타도가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기만적이고 미봉적인 대책과 더불어 또 하나의 불만 대상은 지방의 토호와 더불어 대지주의 성격을 지닌 사원이 었다. 반민들의 사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고려시대의 불교가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종교로서 피지배층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관심이나 이를 구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농민을 수탈하는 정도에 있어서 지방관이나 토호 못지않는 사원의 지주

^{38) 《}高麗史》 권 19, 世家 19, 명종 7년 3월 정해.

적인 성격이 그들을 가장 괴롭혔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사원은 왕실이나 귀족들의 개인 사찰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많았으며, 또 그들의 비호를 받아 많은 토지와 인구 그리고 소도 장악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이전의 通度寺의 寺領지배 상황을 기록했던《通度寺 舍利 袈裟事蹟略錄》의 寺之四方山川裨補條에 의하면 사찰이 茶所를 소유하고 있었다. 39) 이와 같은 사찰에 소속된 所는 비단 다소뿐만 아니라 사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납하는 다른 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사원경제가 그 사회에서 생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도 추측이 가능하다. 40) 따라서 경제적으로 비대해지는 사원에 대한 피지배층의 괴리감은 국가가 그 곳에 제공하는 특혜와 더불어 더욱 커져갔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사원에 대한 분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축적되어 갔는지 2차 봉기 때 가장 피해가 심했던 弘慶院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 ① (현종은 姜民瞻과) 金猛을 別監使로 삼아 弘慶院 신축을 함께 관리하게 하였는데 모두들 공치사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인부를 사역할 때는 농사철을 피하였으며 물자도 국가의 창고에서 꺼내지 않았다. 기와장이는 기와를 대고 나뭇군은 목재를 공급하였다. 톱질과 자귀질은 일없는 목수들을 모아서 시키고 괭이질・삽질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일하였다(崔忠,〈奉先弘慶寺碣記〉、《朝鮮金石總覽》上, 260~262쪽;《東文選》권 64, 記).
- ② 이자겸이 홍경원을 수리하게 하였다. 僧正 資富와 知水州事 奉佑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 때 주·현의 장정을 징발하여 그 폐해가 매우 컸다(《高麗史》권 98, 列傳 11, 高兆基).
- ③ 呵吒波拘神道場을 홍경원에, 般若道場을 選軍廳에 모두 27일간 설치케 했는데 묘청의 말을 좇아서였다(《高麗史》권 16, 世家 16, 인종 8년 8월 임자).

사료 ①은 홍경원을 설립할 당시의 일을 적은 것으로, 국가는 사찰을 지으면서 국고금 없이 오직 백성들의 노동력에 의거하였다. 정부는 기와장이, 나

^{39) 〈}通度寺 舍利袈裟事蹟略錄〉(《通度寺志》, 亞細亞文化社, 1979), 26쪽.

⁴⁰⁾ 고려시대 사원경제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劉教聖,〈高麗 寺院經濟의 性格〉(《白性郁博士還曆紀念 佛教學論文集》, 1959). 李載昌,〈麗代 寺院領擴大의 研究〉(《佛教學報》2, 1964). 閔丙河,〈高麗時代 佛教界의 地位와 그 經濟〉(《成大史林》1, 1965). 李炳熙,《高麗後期 寺院經濟의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尺군, 목수들을 정발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원 건립에 필요한 물자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무려 5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하였다. 마찬가지 내용으로 사료 ②도 홍경원을 개수할 때에 주현의 장정을 정발하여 그 폐해가 매우 컸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의 강제노역에 의한 사원 건립은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정부나 지방관에 대한 원망으로 표현되겠지만, 또한 그들이 지은 후에 정부의 비호 아래 많은 賜田을 가지고 그 곳에 안주하는 승려들이나 사원이지닌 성격 자체에도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원의 귀족적이고 지주적인 성격은 농민봉기가 발생했을 때 타도의 대상으로 나타난것이다. 홍경원은 현종 때 창설된 후 계속해서 왕실과 문벌귀족들의 비호를받고 있었는데, 따라서 稷山의 토호세력으로서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내용에서 반민들이 홍경원을 불태우고 승려들을 죽인 것으로 보아 이곳이 백성들을 수탈하여 원성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홍경원의 경우와 같이 명학소민의 표적이 되었던 덕산의 가야사에 대해서는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원래 가야산 기슭은 사찰이 많았으며, 가야사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풍수지리학상으로도 명당으로 유명했다고 한다.41) 따라서 가야사 또한 홍경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거느렸으며, 주변 주민들을 수탈하여 원성을 샀을 것은 뻔하다.

이후 반민들은 牙州 등 충청도 전역을 공략하여 공주뿐 아니라 청주관 내 군현이 모두 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오직 청주만이 남게 되었다. 이 에 정부는 회유를 통해 난을 진압하려는 작전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42) 그 해 5월에는 宣旨使用別監을 보내어서 남적을 제압한 전공을 살펴 관군의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또한 충순현을 삭제하였다. 정부는 손청·이광 등 망이 주위의 반민들을 진압하여 명학소민을 고립시킨

⁴¹⁾ 가야사는 조선시대 말기에 명당을 탐낸 대원군이 이곳을 불태우고 그의 아버지 南延君의 묘지로 만들었다.

⁴²⁾ 당시 南賊處置兵馬使로서 청주에 주둔했던 정부군의 지휘자는 鄭世猷이고, 南路捉賊左道兵馬使로서 驪州지역에 머무르면서 李光을 사로잡은 사람은 梁翼京이다. 그리고 南賊制置右道兵馬使로서 예산방면으로 가서 孫淸을 죽인 사람은 李夫였으리라 보여진다. 반란민이 3파로 나누어 북쪽으로 진격하자, 정부군도 청주를 거점으로 3파로 나누어서 그들을 방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후43) 총력을 다하여 공격하였다.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밀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망이 등은 항복을 요청하였다. 명종 7년 7월, 망이 등이 잡혀 淸州獄에 갇힘으로써 무려 1년 반이나 지속된 공주지역 농민·천민의 항쟁은 여기서 끝맺게 되었다.

다. 명학소민 봉기의 의의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는 무신정권 이후 남쪽에서 일어난 민란 중 상당히 대규모적인 것으로서 고려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신정권의 초기 단계인 이의방정권이 끊임없는 사원세력의 반발과 서북민의 항쟁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했다면, 그 뒤를 이은 정중부정권은 이 명학소민의 봉기와 서북민의 항쟁이 가져다 준 여파로 그 체제가 흔들리게 되어, 드디어 경대승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있다. 물론 무신정권 초기 단계에서 집권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정중부정권이 지니는 무신연합정권의 취약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고려사회에서 피지배층의 봉기가 지배계층을 무너지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중요한 의미가 있다.

명학소민의 봉기를 진압한 후, 정부는 이것이 소민에 한정되지 않고 농민 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일반 백성들을 진무하기위해서 미봉적인 조처나마 각지에 찰방사를 보내어 지방관의 탐학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권 자체의 도덕성이나 권세가의 탐학은 그대로 두고 지방관만을 속죄양으로 삼는 자체가 무리였고, 또한 찰방사가 정말 농민들을 위해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의문이었다. 게다가 왕은 찰방사가 압송해온 贓吏 35명을 즉석에서 풀어주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불과 수년 이내에모두 사면하여 복직시켰다.

사실 당시 고려사회로서는 수취체제의 개혁이나 중앙 권세가들의 탐학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지방관의 청렴만을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였 다. 더구나 각 지역의 지방관들 자신이 중앙의 권세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상례였다면, 탐학한 지방관을 제거하는 사실 자체가 개경권세가들의 세력

^{43) 《}高麗史》 권 19, 世家 19, 명종 7년 3월 무오.

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으므로, 장리들 전원을 무죄 방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농민·천민 등 피지배층이 목숨을 걸고 봉기한 대가는 유명무실해졌고 지방관의 탐학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즉 명종 12년(1182) 이후에 일어나는 관성·부성·전주 그리고 안동 등지에서의 민란은, 그 발발 동기가지방관의 탐학한 수탈을 이기지 못하여 봉기하게 된 것들로서 정부의 시책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돌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통치체제를 강구하였으니, 이것이 후일 이의민에 이은 최충헌의 독재체제를 낳게 된 하나의 원인이되기도 하였다.

두번째 조처는 권세가의 토지침탈 방지, 공부의 균등 배분·조세 탕감 등의 경제적인 배려였다. 고려사회는 예종대 이후 유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는데 유민의 발생이 경제적인 면에서 일반 농민들의 소극적인 조세저항운동이라면 농민봉기는 보다 적극적인 저항형태였다. 정부에서는 백성들을 안무하기 위해 감무를 파견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위해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조금 후기의 사료이기는 하지만 명종 18년 3월의 조서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 ① 명종 18년 3월에 制하기를 '무릇 州縣에는 각기 서울과 지방에 양반과 군인의 家田 및 永業田이 있는데, 이에 간교한 吏民이 있어 權要家에 의탁하고 자 망녕되이 閑地라 칭하여 권세가의 이름으로 등기하였다. 권세가 또한 자신의 가전이라 칭하고는 公牒을 취하고자 즉시 사환을 보내어 편지를 써서 부탁하니 … 이 사환을 잡아 칼을 씌워 서울에 신고하고 등기한 이민은 끝까지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柴科).
- ② 명종 18년 3월에 制하기를, '여러 州・府・郡・縣의 백성들은 각기 貢役이 있는데, 이래로 外官 員僚들이 使令에게 슬쩍 부탁하여 役價를 받고 그 貢賦를 여러 해 동안 면제시켰다. 그러자 아전의 무리들이 모두 이런 식을 따르게 되어 역이 고르지 않게 되고 있다.…공역을 균등하게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貢賦).
- ③ 명종 18년 3월에 下制하기를, '각 지역의 부강한 양반들이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이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옛부터 내려오던 丁田을 함부로 빼앗으니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더욱 가난해졌다. 富戶는 겸병과 침탈을 하지말며 빼앗은 토지는 각기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借貸).

명종 18년은 명학소민의 봉기를 진압시킨 지 이미 10년이 지난 시기였다. 이 이후에도 소규모나마 민란이 계속 일어나 정부로서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오직 명학소민의 봉기의 결과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명학소라는 특수 천민 집단에서 야기된 민란에 농민이 가세하여 상당히 큰 규모로서 충청도 전역을 뒤흔들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

위의 사료 ①과 ③은 권세가의 토지겪병을 막기 위한 조처이며 ②는 貢役 을 균등하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되지 못했음은 당연하다. 예컨대 ①의 경우를 보면 토 지겸병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권세가인데, 그들 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화과 이민에게만 죄를 물었다. 대토지 소유에 대 한 정부의 입장은 권세가들의 권익을 침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방지하 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③에서 정부는 농민들이 짊어진 빚을 해결해 주 기 위한 어떤 대안도 없이 양반들에게 무조건 땅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는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부강한 양반이 약한 백성들에게 토지를 돌려주게끔 만드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이 실제로 행해질 수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 는다. 이후에도 계속 대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본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정부 의 조칙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고려사회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부정하지 않고는 실시될 수 없는 것으로 근본적인 한계성를 지니고 있었다. ②는 지방관이 役價를 선 납한 자에게 공역을 면제시켜 나머지 주민들이 과중한 역을 부담하게 되었 으므로 잘못 부과된 공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러한 국왕의 일시적인 조서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국왕은 조서를 내리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농민들의 봉기로 인해서 정부는 농민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피지배층은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나타내게 되었 다는 점에서, 명학소민 봉기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소와 같은 천민들을 위한 시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고려사회는 향·소·부곡 등 천민지역이 점차 해체과정을 거쳐, 고려 말기에는 이것이 거의 없어졌으며, 조선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소멸되어 군·현과 같은 일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다. 고대적인 잔재를 극복하게 한 이같은 사실은 고려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명학소민의 봉기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봉기에서 또 하나의 의의는 망이라는 천민출신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에 일어났던 만적의 난의 효시가 된 듯하며, 그들의 목표가 신분해방을 거쳐 정부타도를 표방한 점에서는 경주민의 항쟁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3) 관성·부성·전주 등에서의 농민봉기

서북민의 봉기를 제외하고 남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란은 石令史의 난이었다. 석령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이 나타나지 않으나《高麗史節要》명종 5년(1175) 8월에 算業及第 彭之緒가 숭선 宋智仁과 진사 秦公緒를 南賊 석령사와 더불어 난을 모의한다고 참소하여 大府少卿 李商老 등 많은 관리들이 이에 연루되어 해도로 귀양갔다는 기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그해 11월에는 都校丞 金允升 등 7명의 문신이 유배되었다.44) 석령사가 어디에서 왜 난을 일으켰으며, 항쟁의 성격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며 난의 성격이 중앙관리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음을 파악함 수 있다.45)

명학소민의 2차 봉기가 일어날 무렵인 명종 7년 2월에는 全羅州道 按察使가 彌勒山賊이 항복했다고 중앙에 알려왔다.46) 미륵산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산으로서 이들이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봉기했던 원인에 대해 시사를 주는 내용은 없지만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집단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좌도병마사가 賊의 우두머리 季光 등 10여 명을 사로잡았

^{44)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5년 8월・11월.

⁴⁵⁾ 金塘澤은 石수史의 수史는 이름이 아니라, 지방관청에 소속된 品官 이하의 관 적으로 보았다(〈高麗 武人政權初期 民亂의 性格〉, 《國史館論叢》 20, 1990).

^{46) 《}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7년 2월 정축.

다고 한다.47) 지리적 위치와 시기로 볼 때 이들이 망이 등 명학소민과 일정 한 연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 구체적인 실상은 알 수가 없다.

이후 서북민의 항쟁이 끝난 지 3년 후인 명종 12년 2월에 富城(충북 옥천)·管城(충남 서산)에서 다시 농민들이 일어났다.

- ① 관성현령 洪彦이 백성을 괴롭히고 음탕하고 거칠기가 한이 없었으므로 향리와 백성들이 彦이 사랑하는 기생 및 기생의 어미와 형제를 죽이고 드디어 언을 잡아 가두었다. 有司가 接問하여 주모자 5~6명을 귀양보내고 언도 또한 종신 禁錮에 처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2년 2월)
- ② 또 부성현령은 縣尉와 사이가 나빠서 해가 죄없는 백성에까지 미치니, 전체 현민들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드디어 현위의 관리와 노비까지 죽이고 현령과 현위의 아문을 폐쇄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위와 같음).

사료 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성민이 일어났던 원인은 현령의 탐학과 기생과의 향락만을 일삼는 파렴치한 작태에 대한 분노였으며, 부성은 현령과 현위의 주도권 쟁탈전이 경쟁적으로 수탈을 야기시켜 농민을 이중으로 괴롭혔으므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주민에 의한 탐오한 관리의 구금은 가장 온건한 형태의 저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悖逆」이라는 죄목으로 이들을 단죄하여 이후부터는 두 현 모두 지방관을 설치하지 않고 현을 폐쇄시키는 강력한 정계를 가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전주에서 旗頭인 竹同이 농민·군인·관노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 봉기를 일으킨 원인을 살펴보자.

- ① 애초에 全州司錄 陳大有가 자못 청렴 고결함을 자부하고 형벌을 극히 가혹하게 쓰니 백성 중에 괴롭게 여기는 자가 많았다. 국가에서 精勇・保勝軍을 보내어 관선을 제작하게 하였는데 대유가 上戶長 李澤民 등과 더불어 역사를 감독하면서 몹시 까다롭게 굴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2년 3월 경인).
- ② 旗頭인 竹同 등 6명이 난을 일으켜 관노와 불평을 품은 무리들을 불러모아 드디어 大有를 山寺로 쫓아버리고 澤民의 집 등 10여 채를 불태우니 아전들이 모두 달아나 숨었다. 이에 판관 高孝升을 협박하여 고을의 아전을 바꾸어임명하도록 하니, 효승은 다만 직첩만 수여할 따름이었다(위와 같음).

사료 ①에서 전주민이 봉기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록 진대유가 형벌을 지

^{47) 《}高麗史》 권 19, 世家 19, 명종 7년 3월 무오.

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는데, 관선을 제작할 때 혹독한 사역으로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시키게 되니 기두인 죽동을 중심으로 피지배층이 합세하여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였다. 진대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위의 사료 외에는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아마 그는 백성들을 가혹하게 독려하더라도 국가에서 요구한 조선사업을 기일 내에 완수함으로써 이것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 원래 사록은 과거급제자가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관이므로 진대유로서는 전주사록으로서의 능력인정 여부가 승진의 디딤돌이었다. 따라서 그는 무리를 해서라도 중앙에서지시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록의 직책은 전주와 같은 큰 고을에서는 목사・판관의 아래에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서기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관 중 그 지역의 향리나 백성들과 직접적인접촉이 가장 빈번한 자리였다.48) 사록 위에 판관이나 목사가 있음에도 반민들이 일제히 진대유를 겨냥한 것은 그가 일반 주민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을하면서 혹독하게 굴었던 까닭이었다.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전라도는 농토가 풍부하고 기름진 천혜의 곡창지대였다. 그러므로 이곳은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겸병이 강화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토지 소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대토지소유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후대의 사료이나《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墾田結數가 비슷한 경상도에 비해 인구가 적어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상당히 넓었다.49) 어떻든 정부나 지방관의 입장에서는 경작되는 토지가많은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탈할 여지가 많은 곳으로 여겨졌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전주는 전국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아 논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50) 이에 따라 생산량이 풍부한 이곳은 지방관이나 토지겸병에 주력하는 권세가들의 치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 전주민의또 하나의 고통은 역역이었다. 일찍이 全州牧 古阜郡의 속현인 扶寧縣의 邊山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또한 그 질이 우수하여 궁궐 혹은 사원의 건축과

⁴⁸⁾ 金皓東、〈高麗武臣政權時代 地方統治의 一斷面〉(《嶠南史學》3, 1987).

⁴⁹⁾ 李鎬澈, 〈토지파악방식과 田結〉(《朝鮮前期 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278쪽

^{50)《}世宗實錄地理志》권 151, 全羅道 全州府 참조.

관선 제작에 이용되었다. 이들 나무를 베어 개경으로 보내거나 배를 만드는 일은 주로 농한기를 틈탄 농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농사철인 3월이 되면 농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부역을 중단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종 3년(1200) 3월에 李奎報가 保安縣에서 벌목을 독려하던 글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51) 농사철에 농민들에게 부역을 강행한 사례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농사철의 부역 강행은 농민들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규보가 혹독한 관리로 평판이 좋지 못해 파직을 당했던 것은 농삿일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중앙정부에서 시킨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데에서 생겨난 파문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52) 竹同 등 전주민의 봉기도 3월이 되어서까지 관선 건조를 강행시켜 농삿일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가장 큰 이유였다고 판단된다. 농민들은 가혹한 지방관과 州東의 사역을 견디지 못하여 천민・관노들과 함께 봉기하게 된 것이었다.

앞서 내용에서 旗頭인 죽동 등 6명은 관노·불평을 품은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고 한다. 반란의 주모자인 죽동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가 기두라는 것과, 전주에서 난을 일으켰다는 사실 뿐이다. 그러나 이로써 그가 국가에 의해 요역에 정발당한 주현군이었으며, 농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관노는 이같은 요역이 없을 때에도 인신적 수탈을 가장 많이 당하는 존재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불평을 품은 무리는 保勝・精勇軍이 아닌 一品軍이나 농민·천민 그리고 승도 등이었으리라 보여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합하여 난을 일으켜 사록을 산사로 내쫓고 향리들의 집을 불태웠다. 그들의 행위는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일어선 반란이라기보다는 오직 지방관과 향리의 가혹한 사역에 분노한 전주민의 시위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들은 전주사록을 내쫓고 주리를 교체하면 부당한 사역과 억압이중단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봉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⁵¹⁾ 李奎報,《東國李相國集》 권 10, 古律詩 三月又到保安縣江上課木.

⁵²⁾ 李奎報,《東國李相國集》 권 27, 與某書記書.

전주를 방문한 안찰사에게 그들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여 부당한 폐해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안찰사 朴惟甫는 전주지역의 소요를 무마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전주사록 진대유를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리고는 난민들에게 그들을 가혹하게 침탈했던 진대유가 문책을 받은 만큼 난을 포기해야 한다고 종용하였다. 53) 이것은 전주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안찰사가 대유의 失政을 깊이 인식하고 그가 시행했던 가혹한 부역이나 그 밖의 농민들을 수탈하는 제반 억압 요소들을 제거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안찰사는 아무런 개혁을 시행하지도, 시행할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무조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위협만을 가하였다. 전주민이 이를 따르지 않자 안찰사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도내의 군대를 징발하여 이들을 강제로 진압하려 하였다. 이에 놀란 전주민은 성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고 끝까지 대항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제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전주민과 안찰사가 직접 대립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개입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죽동 등 전주민의 봉기는 반란을 일으킨 주도층이 전라도 전체의 농민·천민들의 호응을 얻을 만한 적합한 명분을 내걸지 못하여 이 봉기를 전주목에 한정시킴으로써 전라도 전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전주 지방관과 향리의 탐학과 수탈을 거부했을 뿐, 지방관과 토호의 비리가 고려사회 전체의 모순의 결과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세는 강경하여 끝까지 전주성을 사수함에 따라 시일이 지체되어 이 사실이 중앙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은 중앙정부가 전주민의 봉기에 대해 대처한 내용이다.

① 합문지후 裵公淑, 낭장 劉永 등을 보내어서 죽동 등이 반역한 이유를 물어보게 하였다. 공숙 등이 성에 들어가서 1품군 隊正을 회유하여 역적의 괴수를 제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계획이 성사되려 할 때에 참소를 입어 파면되고, 낭장 任龍臂와 金臣穎이 대신 임명되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2년 4월 무신).

② 안찰사가 보낸 병사가 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 1품군 隊正이 승도와 더불어 죽동 등 10여 명을 죽이니 적이 평정되었

^{53)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2년 3월 경인.

다(위와 같음).

③ 龍臂, 臣穎 등이 도착해서 남은 무리 30여 명을 찾아내어 죽인 후, 城塹을 무너뜨리고 돌아갔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2년 4월 기사).

개경정부는 합문지후 배공숙 등을 보내어 전주민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연유를 물어보게 하였는데, 여기에 전주민이 크게 기대를 건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국왕의 사자로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려고 왔다고 하니 아무런 의심없이 성안으로 맞아들여 내부분쟁이 일어날 여지를 제공하였다. 즉 정부측에서 보낸 장수 배공숙이 마음대로 성을 드나들었고, 전주성을 지키던 1품군을 회유하여 정부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반민들은 국왕을 믿고 고려 정부와는 끝까지 대항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②에서 배공숙이 1품군 대정을 설유했다는 기사는 전주민의 봉기에 보승·정용군 등 피지배층뿐만 아니라 향리층도 상당수가 합세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런데 대정은 副戶正이나 副兵正・副倉正級의 지방향리로서이들은 과거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지방토호층이었다. 따라서 대정은 1품군을 통솔하는 계층으로서, 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중앙으로의 진출도 가능한, 농민들과 반대 입장을 지닐 가능성이 많은 계층이기도 하였다. 지방관에 의해 배를 만드는 요역에 동원되거나 나무를 베도록 강요받았을 때는 주민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던 그들도 똑같이 고통을 받아 죽동 등 전주민의봉기에 함께 가담하였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끝까지 싸우려는 의사가 없이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반민들도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만큼 농사철에 성 안에서 농성하는 사실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배공숙은 이를 파악하고 내부 교란을 선동하여 반민 주동자를 처단하면 쉽게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배공숙 등이 참소에 의해 파면됨으 로써 이 계획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참소를 당한 구체적인 이 유는 알 수 없으나 중앙에서는 난을 진압하는 데는 문신보다 무신이 나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즉 정부는 이들을 달래어 일시적이나마 그들의 요구 를 수렴하여 난을 포기하게 하려는 계획을 그만두고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 이었다. 그리하여 문신 대신 무신을 보내어 반민들을 진압하려 하였다. 그러 나 그들이 전주에 왔을 때 이미 대정·승도들에 의해 지도층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봉기는 끝난 상태였다. 대정 등은 비록 배공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죽동 등 반민 지도부를 암살하면 정부의 포상을 받으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전주민의 봉기는 약 두 달간 계속되었지만 그 지도부가 암살당함으로써 쉽게 와해되고 말았다. 배공숙·유영에 대신해서 새로 임명된 임용비, 김신영은 뒤늦게 전주에 도착하여 전주민 중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30여 명을 색출하여 죽이고 城塹을 파괴하여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강구하였다. 이제 전주민은 정부에 대하여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국가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난세를 맞이하여 그들의 소망을 풀어줄 구원자의 출현에 매달리게 되었다. 원래 전라도 지역은 금산사를 중심으로 彌勒信仰이 유행하던 곳이었는데, 정토신앙을 내세워 민심을 끌어들이려고 한 경우도 보이고 있다. 무신집권기에 전주지방에서 혹세무민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곳 주민들의 현실적인 불만이종교에 더욱 매달리게 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기록을 보자.

全羅州道 안찰사 吳敦信이 아뢰기를, '승려 日嚴이란 자가 전주에 있으면서, 눈 먼 사람을 다시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하므로 왕이 內侍 琴克儀를 보내어 이를 맞아오게 하였다. …또 弘法寺로 옮겨 거처하니 남녀가 다투어 머리를 풀어 펼쳐서 日嚴이 밟고 지나가게 하였으며, 일엄이 그들에게 아미타불을 부르게 하니 그 소리가 10리 밖까지 들렸다. 그가 손씻고 입씻고 목욕한 물까지도 이 물을 얻는다면 비록 한 방울일지라도 千金과 같이 귀하게 여겨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法水」라고 일컬어 온갖 병을 능히 치료한다고 하였다. 남녀가 밤낮으로 함께 거처하여 추한 소문이 널리 퍼졌으며, 혹은 머리를 깎고 그 무리가 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7년 9월).

전주의 승려 日嚴은 농민들의 여망에 편성하여 만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사 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하여 죽은 후 극락정 토에 왕생하는 것으로, 현실사회의 괴로운 상황에 처하여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는 나약하고 죄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종교였다. 이 정토신앙은 삼국시 대부터 이어져 내려와 고려에까지 전승되어 왔는데 미륵신앙과 더불어 서민대 중의 불안을 달래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일엄은 자신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자처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죽은 후 극락에 왕생할 뿐 아니라 만병이 다 낫게 된다고 하여 주민들을 현혹하여, 어사대부 임민비나 평장사 문극겸 같은 정부 관리들과 국왕까지 혹하였다고 한다. 이는 후삼국시대의 궁예나 우왕대의 이금이 미륵불로 사칭하여 민심을 끌어들인 것과 비교된다.54) 즉 현실에 불만은 많으나 힘이 없는 농민들은 절대자에 무조건 의지하거나 아니면 빨리 죽어 극락왕생을 기원한 데서 이같은 신앙이널리 전파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전주민의 봉기는 난을 일으킨 지 불과 두 달만에 내부의 배반자에 의해 봉기의 주도세력이 암살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전주민이다시는 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처단하였을 뿐, 이들을 위한 위무책은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농민들은 정신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신앙에 매달리게 되었으니, 이에 따라 고려 후기 전라도 지역에는 다양한 종교가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전라도에서는 고종 초에 거란족이 침입하여 중앙집권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전주 군인들이 다시 난을 일으켰으며, 이어 고종 7년(1220)에는 南原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그리고 몽고가 고려의 전 국토를 유린했던 고종 24년(1237)에는 李延年 등이 原栗・潭陽郡을 중심으로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등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한 농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4) 제주민의 항쟁

고려시대 濟州民의 항쟁은 다른 지역의 농민·천민의 봉기에 비해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제주 즉 耽羅가 숙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립된 나라로 존재하다가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이곳은 삼국시대인 4~5세기에 국가가 성립하여 星主와 王 子를 중심으로 하는 족장들이 다스리는 체제가 고려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하며, 인구 또

^{54) 《}三國史記》권 50, 列傳 10, 弓裔. 《高麗史節要》권 31, 신우 8년 5월.

한 적어 탐라는 강력한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탐라를 바로 병합하여 고려의 군현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그 내부의 사정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고려왕조는 광종대에 이르기까지 호족세력에 밀려 중앙 집권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광종의 호족 숙청작업에 의한 왕권강화책에 힘입어 점차 국가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여 성종대에 가서 비로소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고려는 탐라를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종 때부터 탐라를 통제하기 위해 민정을 살피는 勾當使를 파견하였으며550현종대에는 고려의 군현으로 간주하는 표식인 朱記를 내렸다.56이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탐라는 서서히 고려의 지배권으로 편입되어 숙종 10년(1105)에는 완전히 고려의 군현에 편입되었다.

탐라에 군이 설치되고 고려조정으로부터 직접 수령이 파견되었지만 성주와 왕자를 중심으로 하는 족장이 지배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묵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시키는 대가로 고려정부는 탐라의 성주와 왕자에게 그들의 지위를 세습하는 독자적인 토착 세력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공물을 제외한 조세도 개경으로 보내지 않고 탐라 독자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처하였다.

그런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정치·경제·형벌 등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횡하니, 이들과 탐라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됨은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또한 이들 관리들은 탐라군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서 쉽게 드나들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점, 그리고 약소국이라 볼 수 있는 탐라가 고려의 세력에 굴복하여 편입된 만큼 육지사람들의 제주민에 대한 우월감 등을 이유로 제주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수탈하였다. 그리하여 崔陟卿 등 몇몇 청렴한 지방관을 제외하고는 관리 임의대로 혹은 토호들과 결탁하여 대다수가 탐학에 열중함으로써 제주민의 항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였던 것이다. 최초의 항쟁은 의종 22년경 良守 등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55)《}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勾當.

^{56) 《}高麗史》 권 4, 世家 4, 현종 2년 9월 을유.

判吏部事 崔允儀가 그 청렴하고 정직함을 듣고 耽羅수으로 삼고자 하니 陟卿이 두번이나 外官으로 제수되므로 그 곳이 또한 궁벽하고 멀기 때문에 굳이 사양하였다. 윤의가 말하기를, '耽羅는 지역이 멀고 풍속이 거칠어서 수령이 다스리기가 실로 어려운 까닭에 그대로써 보임시키고자 한다. 다행히 그대가 꺼리지않고 가서 먼 곳의 백성들을 진무하여 나라의 근심을 없애 준다면 마땅히 좋은 직책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척경이 하는 수 없이 취임하여 체를 일으키고 페단을 혁과하니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여겼다. 돌아오니 윤의가 이미 죽었으므로, 척경이 매우 가난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이 때에 마침 全羅按察使가 달려와 아뢰기를, '탐라사람들이 縣令과 縣尉의 포학에 시달려 반란을 일으켜 말하기를, 만약 척경을 현령으로 삼는다면 당장 무기를 버리겠다고 합니다'하였다(《高麗史》권 99, 列傳 12, 崔陟卿).

최척경이 언제 탐라현령으로 부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를 추천했던 최윤의가 의종 16년(1162) 8월에 죽었으며, 탐라민의 봉기가 의종 21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 대략 동왕 15년이나 16년 봄으로 판단된다. 이들이봉기하게 된 원인은 지방관의 가혹한 가렴주구 때문이었다. 위의 경우에서처럼 최척경이 의종 초에 京山府判官을 지낸 지 10년이 되도록 새로운 직책을얻지 못했는데도 탐라에는 가기를 꺼릴 정도로 이곳은 관리들이 부임하기싫어하는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탐라는 교통이 나쁘고 개경과 멀리떨어져 있으므로, 특별히 중앙권력층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쉽게 잊혀져서 승진에 지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최척경의 재부임으로 난은 중단되었지만 이를 통해 탐라민의 항쟁은 지방관의 탐학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반란의 주모자는 良守였다고 한다. 양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모르나 제주의 토성인 良・高・夫의 하나인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농민반란은 토호들과 합세하여 일으켰던 것 같다. 제주 토호들이 농민들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지방관의 토호에 대한 수탈과 더불어 확실치는 않으나 지방관과 결탁한 高氏를 위시한 토호세력과 良氏 세력간의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생각된다.

무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탐라는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종 16년(1186) 7월에 어떤 사람이 탐라가 반역했다고 고하니왕이 안무사와 탐라현령을 새로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결국 이는 무

고로 밝혀졌지만57) 이를 통해 탐라민의 고려정부에 대한 반감을 중앙에서도 감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민은 이미 무신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인 의종대에 봉기하여 탐학한 관리를 축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청렴한 관리인 최척경을 맞이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즉 최척경처럼 청렴한 관리라면 그 직위에서 벗어나는 즉시 굶주림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견디어야 했으므로, 일반적으로 관리들이 후일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수탈하여 치부하거나수탈한 재물을 중앙에 바쳐 출세의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지방관의 탐학은 관료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러므로 최척경과 같은 인물은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다수가 탐학한 관리였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지방관이 교체될 때마다 제주민이 매번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는 힘든 일이었다. 또한 바뀐 수령이 청렴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고려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리적인 위치와 그들의 능력으로 볼 때 고려를 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가능한 방책은 고려왕조에서의 이탈, 즉 탐라의 독립을 갈망했으리라 여겨진다. 이같은 욕구를 달성시키기 위해 신종 대에 제주민은 다시 봉기하였으니, 다음 사료를 보자.

- ① 耽羅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少府少監 張允文과 中郎將 李唐績을 보내어 안무하게 하였다(《高麗史》권 21, 世家 21, 신종 5년 10월).
- ② 탐라안무사 張允文·李唐績이 적의 우두머리 煩石·煩守 등이 모두 처형 되었다고 아뢰었다(《高麗史》권 21, 世家 21, 신종 5년 12월 을해).

탐라민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탐라반란의 주모자를 모두 죽이고, 주민들을 회유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관의 탐학으로 인한 단순한 민란은 아니었던 것 같다. 또한 앞서 의종 때처럼 지방관을 교체함으로써 수그러질 기세도 아니었고, 정부도 회유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강경책으로 밀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고 집정자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당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최충헌이

^{57)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16년 7월.

었다. 그는 농민·천민의 봉기를 힘으로 눌러 완전히 진압시키고 가혹하게 처단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주도권을 공고히 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진압책은 경주민의 봉기나 만적의 난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 니었다. 위의 사료에서 정부가 10월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12월에 반란의 우 두머리를 처형한 것으로 보아. 신종대의 봉기는 최소한 세 달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 항거한 반란민의 동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세 달 동안 버틴 것으로 보아 상당히 끈질기게 저항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반란의 우두머리 이름이 번석과 번수였다.《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제주 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어디에도 번씨 성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 마 姓이 없는 일반 양민이거나 그 이하의 신분층이었을 것이다. 앞서 의종 때의 봉기는 그 주도층이 양수 등 토호계층이었으므로 그들은 정부의 회유 에 쉽게 굴복하여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피지배층의 불만은 그대로 쌓이 지 않을 수 없었는데. 무신정권을 고비로 제주도는 피지배층이 주도권을 장 악하여 난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역 부족으로 패배하여 주모자가 잡혀 죽음으로써 난은 끝맺게 되었다. 이후 고 려는 지방관에 의한 탐라의 통치체제를 강화시키고 토호들의 세력을 점차 약화시켰다.

탐라민의 봉기가 기대했던 바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려왕조의 군사력에 의해 패배하니 정부의 탄압은 가속화되었을 뿐, 주민을 위한 시책은 전혀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관의 탐학 또한 예전과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이후 고려는 30여 년 동안이나 몽고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탐라는 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아 탐라민의 행적은 전혀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탐라에 관한 기록은 몽고와 강화를 맺은 직후인 원종 초에 다시나타난다. 원종 원년(1260)에 재물을 탐하다가 면직된 宋炤를 대신하여 判禮賓省事 羅得璜을 濟州副使로 삼았는데 그는 더욱 탐욕스러워 제주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한다.58) 이후 원종 8년에 草賊 文幸奴가 난을 일으켰으며59)이 난이 진압된 후 탐라는 원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58)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원년 정월.

⁵⁹⁾ 韓國學文獻研究所 編、〈耽羅志〉(《邑志》6, 全羅道, 亞細亞文化社, 1983), 9쪽.

원종 9년(1268) 10월 원의 世祖는 14명의 사자를 고려에 보내어 南宋과 일본을 원정하는 데에 필요한 군사의 정발과 전함의 건조 상황을 점검하게 하였는데, 탐라에는 따로 배 100척을 만들도록 요구하였다. 원나라는 탐라가 일본과 가까운 만큼, 이곳을 일본을 공격하는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 고려가 아닌 원나라에 의한 과도한 貢役을 수탈당하게 되어 탐라민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으니, 이 때 일어난 사건이 三別抄의 난이다.

삼별초는 무신정권기에 수도 개경의 치안이 악화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위해 崔瑀가 용사를 모집하여 夜別抄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가 확대되어 左別抄·右別抄가 되고, 몽고군에 잡혀갔다 돌아온 장정들의 조직인 神義軍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삼별초는 대몽항쟁의 전 시기를 통하여 무신정권의 가장 중요한 무력기반이었지만 몽고와의 전쟁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이들은 오랜 전투경력을 통하여 몽고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컸는데 고려가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니 원종 11년 6월에 장군 裵仲孫과 야별초 지유 盧永禧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그들이 봉기하게된 궁극적 목적은 몽고에 의한 고려의 종속화를 방지하는 데에 있었다. 그들은 고려왕실이 몽고에 굴복했으므로 고려정부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삼별초정부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삼별초는 정부 및 몽고군에 대한 항전을 유리하게전개하기 위해 근거지를 강화도로부터 珍島로 옮긴 후, 그 해 11월 제주를 함락시켰는데 다음 내용으로서 제주민의 향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김수는) 抄軍을 거느리고 耽羅에서 高汝霖을 만났는데, 이 때 적은 珍島를 지키느라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밤낮으로 보루를 축조하고 병기를 마련하여 삼별초군이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이곳을 지키는 주민들이 머뭇거리며 협력하지 않아 그들이 오는 길을 차단하지 못하였다. 김수는 평소 大義로서 사람들을 격려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 勇力도 백배하였다. 싸움에 임해 적의 선봉부대는 거의 섬멸하였으나 주민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결국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고여림과 함께 적진에서 敗沒하여 돌아오지 못하였다 (崔瀣,《拙藁千百》권 1,〈金文正公墓誌〉;《高麗名賢集》2,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所, 1980, 401쪽).

제주를 장악하기 위한 관군과 삼별초군의 치열한 전투는 결국 제주민의 향배에 따라 삼별초의 승리로 끝맺었다. 관군이 이기지 못했던 원인은 군사 수의 열세라기보다는 제주민이 모두 삼별초에 호응하여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삼별초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은 제주민뿐만 아니라 전라도ㆍ경상도 주민과 개경의 노비에서도 엿볼 수 있다.60) 이에 따라 삼별초는 남쪽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여ㆍ몽 연합군과 계속 항쟁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제주도민으로서는 그들이 삼별초와 제휴함으로써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어 고려정부와 외세를 배격하고 명실공히 그들이 바라던 독립까지 쟁취할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삼별초는 그 이듬해인 원종 12년(1271) 5월, 金方慶・忻都・洪茶丘가 이끄는 여・몽 연합군의 치열한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당하게 되니 주력부대를 탐라로 이주시켰다. 비록 진도에서의 참패로 인해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인 진도를 빼앗기고 난을 주도했던 배중손이나 왕으로 추대했던 溫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金通精을 우두머리로 한 남은 삼별초군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이 여・몽 연합군이라는 대규모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항쟁할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제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에 연유하는 바가 컸다고 할수 있다. 그들은 탐라로 근거지를 옮긴 후에도 맹활약을 전개하여 번번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공격하였으며 심지어는 충청남도의 安行梁을 거쳐 북쪽으로 진격함으로써 개경정부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러나 원종 14년(1273) 2월, 병선 160척 수륙군 1만 명을 거느린 대규모의 여·몽 연합군이 탐라를 공격하였다. 삼별초는 항파두리성을 중심으로 끝까지 저항하며 무려 3개월이나 버티었으나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삼별초의 항쟁은 일어난 지 4년만에 진압되었다. 이로써 고려정부는 이 전쟁을 통하여 외세와 연합하여 반원세력을 제거한 결과가 되었고 탐라는 이제 독립국이 아닌 원의 직속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5) 운문・초전민의 봉기

가. 명종 14년 이후 각지의 소요 명종 14년(1184). 李義旼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농민봉기는 계속되었다.

⁶⁰⁾ 姜晋哲,〈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戰〉(《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3). 金潤坤,〈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郡縣民〉(《東洋文化》20·21, 1981).

무신집권기에 들어서서 더욱 심각해진 중앙정치의 혼란은 이의방·정중부·경대승에 이어 이의민이 등장한 이후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명종 16년에 校尉 張彦夫 등 8명이 모반을 계획하다가 붙잡혔는데 그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은 비루하고 욕심이 많아 銀을 매우 좋아하여 벼슬자리를 팔아먹으며 불법한 행동을 많이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을 잘라 그 입에다 은을 물려가지고 朝野에 널리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은을 탐내다가죽은 것을 알게 하려고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6년 정월).

교위는 6위에서 정9품의 최하급 군인장교로서 일반 병사에 준하는 낮은 대우를 받은 직책이었다. 하급군인들은 무신의 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만큼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처우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였는데 권세가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모반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지방뿐 아니라 개경 내부에서도 반란의 기운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신집정자의 탐학은 지방관의 가렴주구를 방치하게 만들어 같은 해 7월 晋州와 安東에서도 농민봉기가 모의되었다.

진주수령 金光允과 안동수령 李光實은 모두 욕심이 많아 가혹하게 재물을 긁어 모았으므로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반역을 모의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6년 7월 정유).

이 계획은 정부가 두 수령을 贓罪로 유배시키고 주민들의 반란모의는 문책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대로 가라앉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그 후에도 계속일어나 이듬해 6월에는 가혹한 감찰로 吏民의 재산을 약탈하며 뇌물을 많이받은 慶尙州道按察使 崔嚴威가 탄핵을 받았고, 동왕 20년에는 충주목사 鄭元獬가 백성에 대한 수탈이 심하여 충주민의 고소로 관직을 파하고 고향으로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 또한 명종 17년 9월 초에는 서북지방의 順州 歸化所에 안치된 賊 수백 명이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감행하였다가 병마사에 의해 잡힌 기록이 보인다. 귀화소에 안치된 적이 고려에 침입했다가 포로로 잡힌 이민족인지 서북지방에서 봉기했던 농민들인지 그 실상은 알 수가없으나, 국가는 이들을 일정한 지역에 예속시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의민 정권기에 일어난 가장 대규모의 농민항쟁은 명종 23년의 金沙彌와 孝心으로 대표되는 雲門・草田民의 봉기였다. 이미 명종 20년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지역에 빈발했던 소요는 정부의 회유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항쟁이 계속되다가 23년에는 경상도전역이 반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들이 봉기하게 된 원인을 경상도 지역에 한정시켜 살펴보겠다.

경상도 지역은 墾田結數에 비해 인구가 많아 농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도와 다른 지역간의 경제적 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간전결수와 인구수를 살펴보자.61)

지방	地理志 墾田結數	戶	П	1戶當 結數	1口當 結數	실제 각 고을 統計結數
京畿道	200,347	20,882	50,352	9.59(9.30)	3.98(3.86)	(194,270)
忠淸道	236,300	24,170	100,790	9.78(9.77)	2.34(2.34)	(236,114)
慶尙道	301,147	42,227	173,759	7.13(6.19)	1.73(1.50)	(261,438)
全羅道	277,588	24,073	94,248	11.53(11.0)	2.95(2.80)	(264,268)
黃海道	104,772	23,511	71,897	4.46(9.52)	1.46(3.11)	(233,880)
江原道	65,916	11,084	29,009	5.95(5.95)	2.27(2.27)	(75,908)
平安道	308,751	41,167	105,444	7.50(7.57)	2.93(2.96)	(311,770)
咸吉道	130,413	14,739	66,978	8.85(8.85)	1.95(1.95)	(130,406)
計	1,625,234	201,853	692,477	8.05(8.10)	2.35(2.46)	(1,688,054)

^{*()}는 실제 각 고을 결수에 대한 통계.

위의 〈표 1〉에 의하면 호당 평균 간전결수가 많은 지역의 차례는 전라도·충청도·경기도의 순이며, 적은 도의 순서는 강원도·경상도이다. 1인당 간전결수는 경기도·전라도·평안도의 순서로 많으며 적은 도는 경상도·함길도의 차례였다. 함길도와 강원도는 원래 산이 많으며 토지가 척박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미흡한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곳을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 경상도가 평안도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구는 경상도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하였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이 결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소규모의 토지를 경작

^{61) 《}世宗實錄地理志》 색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323 · 375쪽 참조.

하는 자작농이나 전호가 많았으리라고 짐작된다. 이에 농민들은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명종 19년부터 25년 까지의 잇따른 흉년,62) 지방관의 탐학, 높은 인구밀도는 그들의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지역적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조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도 과중한 형편이었다.63)

이같은 상황에서 이의민은 명종 14년(1184)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자 그의 친족들이 중심이 되어 경주 영역내에 농장을 만들었다고 짐작된다. 그의 토지겸병은 명종 19년부터 해마다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더불어 농민을 압박하여 경주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한편 지방관은 각 지역에 할당된 조세를 충당하기 위해 농장에 소속되지 않은 소농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시켰다.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소극적인 조세저항운동으로써 유랑민이 되었다가 이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 중앙정부에 대항할 역량이 확보되니 급기야는 농민봉기로 발전해 가게 되었다.

명종 23년의 김사미와 효심으로 대표되는 농민봉기 이전에 이미 명종 20년부터 경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이들의 봉기 원인은 일반적인 민란처럼 권세가의 토지겸병으로 인한 유민의 증가와 지방관의 가혹한 수탈에 견디지 못하여 일어나게 된 것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봉기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발발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봉기하자 같은 처지에서 신음하던 주변 농민들의 적극적인 가담에 힘입어 경주전역으로 확산되었다.64)

경주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정부는 여느 민란에서도 늘그렇게 했던 것처럼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였다. 즉 사자를 보내어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여 경주민의 마음을 달래어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씀과 동시에 안찰사로 하여금 반민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주민의 반란은 더욱 확산될 뿐 조금도 진정되지 않아, 안찰사가 거느린 군대는 치열한 전투 끝에 참혹한 패배를 당하였다. 이같은 패배는 안찰사가 거느린 군대인 주현군의 대다수가 농민들이었으므로 적극적인 토벌의사가 없었

⁶²⁾ 李貞信,〈雲門・草田民의 蜂起〉(앞의 책), 156~157쪽.

^{63)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租稅 공민왕 11년.

^{64)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20년 정월.

음에도 기인한다고 보겠다. 경주민이 정부의 설득에 동요하지 않고 더욱 강경해진 이유는,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중앙에서 사자를 보내면서도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지방관에 대한 문책이나 수탈에 대한 방지책이 없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국왕은 조서를 내려 탐욕스러운 지방관의 출착을 다짐하였으나,65) 지방 수령의 탐학은 중앙과 연계되는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정부는 이번에는 중앙군을 보내어 반민을 진압하려고 애썼으나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경주지역의 소요는 당시 집정자였던 이의민의 정치적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의민은 경대승이 집권한 기간 동안 경주에 은 둔하면서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닦았다. 그 결과 경대승이 죽은 후에 바로 중앙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상경한이후에도 이곳을 계속 그의 토착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다는 사실은 피지배층의 그에 대한 반감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농민들은 경주가 본향이며 신분적으로는 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이의민이 정권을 장악하자 크게 충격을 받고 고무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들도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정치적 실력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더불어그의 피지배층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층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이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토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겸병을 자행하자 그들도 힘만 있으면 이의민처럼 될수 있겠다는 자각과 더불어, 농민봉기의 불길이 번져나가게 되었다.

이같은 피지배층의 봉기에 토호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기만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분노한 농민들의 기세가 두려워 아무런역할도 할 수 없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의민 정권에 뚜렷한 애착을 갖고 있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경주는 옛신라의 수도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었다. 그 후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통일을 이룩하자 6두품 계열의 경주 지식층이 중앙에 진출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65)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20년 9월.

그러나 무신들이 정권을 전담하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정치권에서 소외되어 귀향할 수밖에 없었다. 경주 지배층의 무신들에 대한 거부감은 자신들의 이해와도 관련되는 뿌리깊은 것이었다. 더욱이 명종 3년에 金甫當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전의 국왕이었던 의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점도 이의민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토호들이 농민봉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었다.

《慶州先生案》에 의하면, 정부는 명종 20년(1190) 봄에 농민봉기의 진압에 실패한 周惟氏를 대신하여 玄德秀를 안찰사로 파견하였다.66) 현덕수는 조위 총이 봉기하자 서북 지역의 대다수 성이 모두 호응하여 일어났을 때, 끝까지 그에게 굽히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이 난을 진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부는 농민군과 대치한 경험이 풍부한 현덕수를 경주에 보내어 탐욕스런 지방관을 출착하고 백성들을 위무하게 하여 반란을 진압하려했으나,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다. 현덕수가 延州에서 성취한 전공은 그의 능력보다는 토착적 기반에 근거한 바가 컸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그로부터 불과 네 달 후인 같은 해 12월에 중앙에서 다시 군대를 파견해야만 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후 농민군의 행방은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정부군에 의해 패하여 죽거나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으며 일부 농민들만 계속 저항하기 위해 운문산에 숨어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를 방어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뿐, 전멸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적극적인 대항을 회피함으로써 농민봉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농민군이 와해되자 중앙에서 파견된 정부군도 곧 돌아갔다. 당시의 집정자였던 이의민으로서는 그의 본향을 대상으로 벌이는 대대적인 토벌작전은 바라지 않았다. 이들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민심만 악화될 뿐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반민들의 움직임은 그로부터 2년이지난 후인 명종 23년 2월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때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봉기에서 벗어나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변의 반민들과 연합하는 대규모의 부대로 발전하였다.

^{66) 〈}道先生案〉(《慶州先生案》, 亞細亞文化社, 1980), 20\.

나, 운문 · 초전에서의 농민봉기

경주 지역의 농민봉기는 명종 20년에 이어 23년 이전에 다시 일어났다. 이 사실은 명종 23년 2월에 東南路按察副使 金光濟가 반민들을 토벌하였으 나 감당하기 어려워 京兵을 요청한 데서 알 수 있다.

흉년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농민들의 재봉기를 야기시켰다고 파악한 정부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양광도에까지 사자를 보내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굶주림에 못이겨 도적질을 하거나 국가에 세금을 제 때 바치지 못해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풀어주어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67) 그러나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정부의 몇 가지 조처로서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매우 미흡하였다. 특히 탐학한 지방관이나 토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전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은 봉기를 그만두고 귀향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돌아올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의 시책은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반란은 점차 확산되어 급기야는 雲門・草田民의 봉기로 대표되는 경상도 전역의 소요로 확대되었다.

- ① 남방에 도적이 봉기하였는데 그 중에 강한 자 金沙彌는 雲門에 웅거하고, 孝心은 草田에 웅거하여 떠돌아 다니는 자들을 불러모아 州縣을 공격하였다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3년 7월 신미).
- ② 대장군 全存傑로 하여금 장군 李至純·李公靖·金陟侯·金慶夫·盧植 등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3년 7월 병자)

위의 글은 운문과 초전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자 국가에서 토벌군을 파견한 내용이다. 그런데 사료 ①에서 그 중에 강한 자(其劇者)라는 귀절이 있는데, 이 말은 당시의 농민봉기가 운문·초전 두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즉 남쪽지방 여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는데, 그 중에서 영역이 넓고 농민군의 수도 많아 세력이 강했던 인물이 운문에 웅거한 김사미와 초전을 거점으로 봉기했던 효심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제 농민봉기는 경주에서 벗어나 그 외곽 지대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이 점은 이의민 측근이나 지방관에 의한 농민수탈이 경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경상도 전역에서 행해

^{67)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23년 3월・4월.

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각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을 억압하던 사원세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명종 23년 경에 경상도 각 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는데, 이들은 점차 강대한 두 세력권에 합치게 되었 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선 운문과 초전이 어디이며, 그 지역의 특수성은 어떤 점이 있고 농민들이 봉기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해 보자.

운문은 지금의 淸道에 있는 한 고을로서 원래 雲門寺의 寺領地였다고 한다. 이곳이 운문사의 사유지인지 혹은, 莊・處와 같은 일반 민전으로서 사원에 조세만을 부담한 형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長生標에 의하여경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원의 자체적 경영 하에 놓여 있었으리라는 점과 寺領內의 농민들이 사원의 강력한 경제적 지배를 받는 예속농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원에 부속된 단순한 분급수조지인 장・처와는 다른 私莊的 색채가 농후한 성격의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68)

청도군은 예로부터 土姓勢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명종 때의 문인인 琴儀는 청도를 다스릴 때 鐵相公으로 불리웠으며,690 충숙왕대의 閔宗儒는 나이 어린 감무라고 사람들이 낮추어 보았으나 청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의해서만 다스리니 사람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했다고 한다.700 요컨대 청도 군은 지방관이 토호들의 위세에 눌려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며, 소신껏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철재상이라는 악평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따라서 청도는 토호와 사원세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수탈을 당했음을 짐작할수 있다. 더구나 청도군은 전체 주민수에 비해 경작할 토지도 많지 않았으니, 경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1인당 평균 경작지가 1.73결로서 가장 소규모였는데 청도군은 이보다 더욱 적은 1.17결에 불과했다.710 그러므로 청도군은 만성적인 경제적 빈곤에다가 자연재해, 그리고 토호・사원 등의 대토지소유자에 의한 경제적 수탈 등이 원인이 되어 사원전에 소속되어 있던 운문의 전호를 중심으로

⁶⁸⁾ 姜晋哲. 〈私田支配의 諸類型〉(《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144쪽,

⁶⁹⁾ 李奎報,《東國李相國集》 권36, 琴儀墓誌銘.

⁷⁰⁾ 崔瀣,《拙藁千百》 권 1, 忠順閔公墓誌.

^{71)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한 지역별 墾田結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봉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초전을 살펴보자. 초전은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통일된 견해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星州說72)·蔚山說73)·密陽說74)로 나뉘어져 있다. 성주설은 이곳에 옛부터 草田面이라는 지역이 있었으므로 성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운문의 농민들과 연계를 가지고 봉기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또한 초전민이 성주 부근의 가야산을 놔두고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 그들의 생산적 기반과는 거리가 먼 운문산을 근거지로 삼은 데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이 부족하며,《고려사》기록 어디에도 성주가반란과 연관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 울산과 밀양의 경우, 이 두 지역은 경주와 가깝고 운문의 이웃에 위치하여 연합항쟁을 벌일 경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울산은 《新增東國興地勝覽》蔚山郡 驛院條에 草田院이 보인다. 院이란 출장 중의 관리들이숙박하는 곳인 만큼 그들이 빈번하게 오가면서 많은 물자를 요구하여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가중되자, 평소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많던 효심 등 피지배층이 김사미와 연계하여 봉기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936년에 安秉禧가 저술한 《密州徵信錄》에 의하면 초전은 密州郡 武安面 華封里에 있는데 명종 23년에 효심이 이곳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나 역대 지리지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무엇에 근거해서 이곳을 반란의 진원지로 지목했는지 알 수 없으나 반란이 일어난 이듬

지	방	墾田	水 田	戶	П	戶當墾田比率	口當墾田比率
경	주	19,733	3/8미만	1,552	5,894	12.71	3.35
밀	양	10,285	1/3미만	1,612	5,522	6.38	1.86
청	도	3,932	1/3	649	3,361	6.06	1.17
울	산	6,482	4/9이상	1,058	4,161	6.13	1.56
수	원	19,154	1/2미만	1,842	4,926	10.40	3.89
나	주	15,339	1/2이상	1,089	4,026	14.09	3.81

⁷²⁾ 金庠基,《高麗時代史》(東國文化社, 1961).

⁷³⁾ 李丙燾、《韓國史—中世篇—》(震禧學會, 1962), 482·492·496\.

⁷⁴⁾ 李建衡,〈草田疑考〉(《論文集》6, 大邱教大, 1970).金潤坤,〈麗代의 寺院田과 그 耕作農民〉(《民族文化論叢》2·3, 嶺南大, 1982),170等.

해에 남로병마사가 밀주에서 농민군 7,000여 명의 목을 벤 사실에서 이곳이 관군과의 격전지였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밀주 무안면은 일찍이 通度寺의 國長生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 역시 운문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주민이 사원에 소속된 전호였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밀주는 주변에 많은 천민집단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部曲은 牟山・穿山・豆也保・伊冬音・今音勿・楮代・鳥丁・平陵・古買・谷良村・破西防・近皆・陽良・仇知山의 14개이며, 鄉은 來進・雲幕・薪浦의 3개, 所는 陰谷所가 있다. 이는 경주의 부곡 11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서 밀성군의 군세를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곡민이 천민인지 아니면 양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소속 주군·주현의 지배 하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2세기 이후 무신정권기 신분제의 변동과 함께 천민들의 신분해방 요구에 밀려 점차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부곡민이 일반군현민과 생활 여건이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며, 국가로서도 군현의 하부구조로의 편성이 조세수취에 이익이 되지 않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부곡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12세기 이후 부곡민들은 그들이 군현에 예속되어 수탈을 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초전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을 때 이같은 부곡민이 합세하였으므로 더욱 광범위하게 세력이 확장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따라서 밀주에서의 반란은 전호와 부곡민 등이 주축이 되어 일으켰다고 보여지며, 여기에서 초전은 밀주의 한 지역으로 보는 편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경상도 어느 지역이든 제2·제3의 초전이 되어 농민봉기를 일으킬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경대승이 죽은 후, 명종은 이의민을 중앙으로 불러들여 정치적인 실권을 맡겼다. 명종은 이의민이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중앙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의민은 명종 14년부터 26년까지 13년 동안이나 최고 집정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최충헌 이전의 무신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한 셈이다. 그런데 명종 23년(1193) 7월에 金沙彌・孝心 등이 봉기하니, 이의민은 이들과 내통하여 신라를 부흥시키려 하였다고 한다. 그 내막을 살펴

보고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로 하자.

이의민은 일찍이 붉은 무지개가 두 겨드랑이 사이에서 생기는 꿈을 꾸고는 자못 이를 자부하였고, 또 옛도참에「龍孫十二」즉 王氏가 다하고 다시 十八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十八子는 곧 李字이다. 이로써 마음 속에 이룰 수 없는 생각을 품고, 탐욕을 줄이고 名士를 거두어서 헛된 명예를 낚았다. 자신이 경주 출신이므로 비밀리에 신라를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 賊 沙彌・孝心 등과 연결하니 적도 역시 鉅萬을 보내었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旼).

이의민이 반민과 내통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설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이의민이 자신의 정치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반민들을 이용했다는 것이다.75) 다른 하나는 이의민이 당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반민들과 내통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위의 글은 최충헌이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꾸민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76) 위의 두 견해는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고려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의민이 반란에 가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충헌 이전까지의 무신정권은 이의방·정중부·경대승·이의민의 순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고 하나, 이미 알고 있듯이 최충헌처럼 한 사람이 독 점적으로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의민이 정권을 잡았 을 때에는, 국왕이 그를 불러 중용했으므로 왕을 무시할 수 없었을 만큼 왕

⁷⁵⁾ 旗田巍, 〈高麗の武人と地方勢力―李義旼と慶州〉(《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484~485쪽. 이의민이 김사미·효심과 내통했다고 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효심은 밀접한 관련이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청도와 경주의 토성에 金氏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사미는 무신정권을 계기로 중앙권력에서 소외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 야욕을 지니고 있었으리라 보여지는데, 이같은 점이 이의민과 내통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을 것 같다. 반면 효심은 姓이 없는 인물로 추측하건대 농민이나 천민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연합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김사미가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주도권 쟁탈이라는 내분과 더불어, 김사미의 이의민과의 제휴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한편 金光植은 〈雲門寺와 金沙彌亂〉(《韓國學報》54, 1989)에서 김사미의 이름으로 추론하여, 그를 운문사의 在家館이며 청도지방의 재지세력으로 보았다.

⁷⁶⁾ 金塘澤,〈李義旼 政權의 性格〉(《歷史學報》83, 1979), 38等. 金皓東,〈高麗 武臣政權下에서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民族文化論 叢》2・3, 1982), 256~257等.

권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었고 杜景升의 세력도 또한 만만치 않았다. 두경 승은 무신의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김보당의 난과 서북민이 봉기했을 때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으며, 명종 23년에는 三韓後壁上功臣이 됨으로써 이의민에 필적할 만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두경 승과 이의민은 정치권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된 내용이다.

- ① 두경승이 이의민과 함께 門下省에서 일을 의논하였으나 서로 견해가 같지 않았다. 이의민이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러 기둥을 치면서 말하기를 '네가 무슨 功이 있기에 벼슬이 내 위에 있느냐'하였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1년 12월).
- ② 두경승을 三韓後壁上功臣으로 삼았다. 이에 重房의 여러 장수들이 축하잔치를 베풀었는데, 술이 취하자 각기 악기를 들었다. 경승이 노래하자 守司空 鄭存實이 작은 피리를 불었다. 이의민이 화를 내어 꾸짖기를 '어찌 宰相이 마음내키는 대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마치 광대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하니 이에 연회를 파하고 돌아갔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3년 2월).

이 글은 두경승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데 대한 이의민의 불편한 심기가 폭발된 내용이다. 즉 이의민이 실권을 잡고 있다고는 하나 두경승의 세력 또 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의민이 경승을 견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종 은 이 두 사람을 비슷한 지위에 두어서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공 고히 하려고 한 것 같다. 명종 21년(1191) 12월에 왕은 두경승은 判吏部事修 國史로, 이의민은 判兵部事로 삼았다. 아직까지는 관직의 높고 낮음이 실권 장악 여부와 관련이 깊었던 시기인 만큼, 이의민은 자신의 관직이 두경승 보 다 낮은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더구나 경승은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종 을 무자비하게 죽인 이의민과는 달리 김보당의 난 때 많은 문신들이 주륙당 하는 것을 관대하게 처결하도록 조처하여 명망이 있었다.77)

사실 이의민은 명종 14년(1184)에 중앙에 재기용된 이후부터 자신의 관직이 두경승보다 항상 낮았으나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동왕 20년 이후에 와서 특히 두경승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이 점은 그의 권력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명종 17년부터

^{77)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杜景升.

점차 그의 인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행동집단 무인세대이던 曹元正・石隣은 동왕 17년에 반란죄로 처단되었고, 동왕 21년에는 白任至・朴純弼・李英搢이, 그리고 23년에는 崔世輔가 사망하였다. 이의민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비슷한 출신이었던 무인들의 잇따른 죽음은, 그의 권력기반을 약화시켜 언젠가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이의민은 정치력으로는 도저히 세력을 회복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그의 경쟁자인 두경승을 제어할 획기적인 조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운문・초전에서 농민들이 봉기하니 이 민란에 편승해서 왕조 교체까지 시도해보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넓히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신라부흥을 외쳐 고려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같다. 이의민은 김사미 등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풍수도참설,「十八子王 設」등을 퍼뜨려 정권 획득의 정당성을 적극 펴나갔다.78)

그러나 그가 옛신라에 대해 특별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신라와 이의민과의 관계는 그가 경주출신임을 제외한다면 그의 신분으로 보아서도 옛신라에 연연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치권내에서 그에게 동조할 세력이 필요했으리라 짐작된다. 비록 그가 명사를 모집하여 헛된 명예를 낚았다고 하나, 아들 李至純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의 의도에 동조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오로지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옛신라 지역민을 자기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라부흥을 부르짖었다고 보여진다.

김사미·효심 등이 이끄는 운문·초전민은 관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합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 때 이지순은 농민군의 지도자인 김사미를 만나 이의 민의 제휴 의사를 전달하고 신라부흥을 획책하였다. 이에 김사미는 이의민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지순이 가져온 의복·양식 등에 대한 답례로서 사원과 토호에게서 탈취한 금·은·보화를 선물로 보내었다. 앞서 수 차례의 농민·천민의 봉기가 결국은 중앙정부를 이기기 못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김사미로서는 이의민을 이용함으로써 농민봉기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김사미·효심이 이끄는 운문·초전민의 봉

^{78) 《}高麗史》 권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旼.

기는 사원이나 토호의 가렴주구를 이기지 못하여 일어난 민란에서 한걸음 더 전진하여 고려정부의 전복을 도모함으로써, 중앙정부와는 전쟁의 형태로 서 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도의 대상인 이의민과의 제휴가 농민군에게는 탐탁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농민들은 그가 최고의 집정자가 되었을 때, 자신과 같은 피지배층의 인물이 권력의 상층부에 올랐던 만큼 자신들을 위한 시책을 기대했으나 이의민 집권 10년 동안 아무 것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주지역은 그의 측근들에 의해 수탈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경상도 농민들이 신라의 부흥을 열망했으리라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비록 20여 년 동안수 차례의 봉기를 통하여 피지배층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고려정부를 부정하고 타파할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신라부흥에 대한 열망은 단지 이의민과 반민 지도부의 견해에 불과했는데, 이의민과의 제휴 사실이 알려지자 반민들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 이같은 사실은 후일 김사미가 정부군에 패하여 항복하면서도 무려 7,000명 이상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있는 효심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편 농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을 이끌고 남하한 대장군 全存傑은 농민군에게 번번이 패배하여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정부군이 패배한 이유는 이지순이 반민과 내통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탓으로 생각하고, 반민을 진압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번민하다가 基陽縣에서 자결하였다. 기양은 지금의 예천으로서 현종 때 안동군에 예속되었다가 명종 2년에 현으로 승격된 지역이다. 관군의 총대장인 전존걸이 경주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경상도 지역을 농민군이 장악하여, 이곳을 기점으로 관군과 남북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전존걸의 죽음은 관군내부에 불안감을 가져와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그 해 8월, 李公靖・金慶夫는 전열을 수습하여 반민과 싸웠으나 다시 패배하였다. 이 사실이 중앙에 알려지자 정부는 지리멸렬해진 군대의 쇄신과 이지순을 토벌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지휘부를 전격 교체하였다. 즉 그 해 11월에 대장군 崔仁을 南路捉賊兵馬使로 삼고 대장군 高湧之를 都知兵馬事로 삼아 장군 金存仁・史良柱・白富公・陳光卿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민은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가 반민과 결탁했다는 소문이 전존걸의 죽음을 계기로 중앙에 알려지자, 왕을 비롯하여 문신, 심지어는 무신들까지 그를 의심하고 배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고려는 신분제사회인데, 비록 무신정권 이후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나,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사원 노비인 이의민이 왕의 지위까지 넘보는 것은 무신들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이 후일 최충헌이 이의민을 죽이고 독재체제를 수립했을때 왕실만은 온존시킨 까닭이었다고 생각된다.

명종 23년(1193) 11월 중앙에서 파견된 관군은 세 부대로 나누어 반민들과 싸웠다. 즉 남로착적병마사 겸 좌도병마사인 최인은 강릉으로 나아갔으며 우도병마사 사량주는 운문의 반민들과 싸웠고, 남로병마사 고용지는 효심 등의 반민들과 밀양에서 대치하였다. 다음 내용은 각 지역에서 정부군과 대항하여 싸운 농민군의 활동 상황을 적은 것이다.

- ① 좌도병마사 崔仁이 정예병 수천 명을 이끌고 적을 치기 위해 江陵城에 도착하여 복병을 하고 기다렸다. 적이 이르러서 한 여자를 잡아 물어 보기를, '兵馬使가 어디에 있느냐'하니 여자가 성중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적이 놀라물러가니 복병을 내어 추격하여 150급을 베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2월 경신).
- ② 남적의 우두머리인 김사미가 스스로 行營에 투항하여 항복을 청하니 목을 베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2월 계사).
- ③ 장군 사량주가 남적과 싸웠으나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2월 갑인).
- ④ 남로병마사가 密城 楮田村의 적을 공격하여 7,000여 급을 베었고 器械·牛馬도 이 정도의 수를 획득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4월 무술).
- ⑤ 우도병마사가 적을 공격하여 40급을 잡아 목베었고, 또 3일 동안 계속 싸워서 패배시켰다(위와 같음).
- ⑥ 남적의 우두머리가 그 무리 李純 등 4명을 궁궐에 보내어 항복을 청하니, 이순 등에게 隊正을 내리고 베를 주어 돌려 보냈다 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8월 정유).
- ⑦ 남로병마사가 적의 처자 350여 명을 붙잡아 얼굴에 入墨하여 서해도에 유배시켰다가 여러 성의 노비로 삼게 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10월 정유).
- ⑧ 남로병마사가 적의 우두머리 효심을 사로잡았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12월 계해).

위의 사료에서 나타난 사실 가운데 중요한 점은 김사미·효심 등이 경주의 외곽지대에서 봉기했을 때, 위치상으로는 도저히 연합전선이 어려운 澳州民도 호응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운문·초전민이 한때는 경상도 전 지역을 차지하였을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여, 북으로는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전역이 농민봉기의 와중에 휩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에서는 남적을 진압하기 위해 보낸 군대 중 전군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은 상장군 최인을 강릉에 파견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명주 농민군의 세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에 나타난 바로는 관군이 우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민들의 세력에 눌려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겨우 150여 명 정도만 사살하고 퇴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주 주민들이 정부군의 동태를 반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던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최인이 스스로 퇴각하여 한번도 싸우지 않고 시간만 지체했다고 하여 파면된 사실에서도 농민군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79) 명주는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와 더불어 비교적 기름진 농토가 많았으며 또한 사원령이 있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옛날 신라시대에 世達寺의 莊舍가 溟州 捺李郡에 있었는데 本寺에서 승려 調信을 보내어 知莊으로 삼았다(《三國遺事》권 3, 塔像 4, 洛山二大聖 調信).

명주는 신라시대 이래 동해안의 웅부로서 정치·군사적인 요충지인 동시에 五臺山을 중심으로 한 신라불교의 성지이기도 하였다. 신라 하대에 와서 중앙에서 진골 귀족간의 왕권쟁탈전이 심해지니 중앙의 귀족들 중에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자가 늘어났다. 이곳은 金周元이 元聖王과의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 정착하면서부터 경주 다음 가는 정치·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더욱이 신라 말 禪宗이 번성하면서 寧越 興寧寺를 중심으로 한 獅子山派 와 명주 오대산 굴산사를 중심으로 하는 閣堀山派가 성립되었는데, 이들 사원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주위의 토호와 농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80) 그리고 고려 후기에 曹溪宗을 발전시킨 普照國師 知訥도 사굴산파에

^{79)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4년 윤10월.

⁸⁰⁾ 崔柄憲,〈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韓國史研究》7,1972),105等. 鄭永鎬,〈新羅獅子山與寧寺址研究〉(《白山學報》7,1969),52~56等.

서 나온 인물이었다. 이로 보아 선종이 敎宗에 밀려 위축되기는 했지만 고려후기에 다시 대두하게 될 기반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원은 대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知莊을 파견하였으니, 앞서의 세달사도 강릉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調信을 보내었다. 따라서 명주지역의 봉기 역시사원의 전호나 소작농이 주축이 되어 일으켰다고 보여진다. 그들은 명주에서 난을 일으켜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운문·초전민과 제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된다.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할 때 운문·초전민과 명주의 반민들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진압시키도록 명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일정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군의 공격에 밀린 김사미의 항복으로 경상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 한 세력을 자랑하던 반민들의 영역은 축소되었다. 효심은 원래 자신의 근거 지였던 밀양으로 후퇴하였고 운문의 농민군은 운문산을 배경으로 정부군과 싸웠다. 비록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문의 농민군이 장군 사량주가 이 끄는 군대를 타파함으로써 아직은 건재함을 보여준다. 김사미가 죽은 다음 반민들의 주력부대는 효심이 이끄는 농민군이었다. 그들은 밀양을 거점으로 삼아 정부군에 대항하였는데, 이곳 저전촌에서 무려 7,000명이나 죽임을 당 하고 무기ㆍ우마도 그만큼 잃어버리는 엄청난 참패를 당하였다. 이같은 패배 의 원인은 운문의 반란세력이 김사미의 죽음으로 약화되어 초전민은 고립무 원의 상태에서 정부의 주력부대와 대치했다는 점과 때는 4월로 농사철이었 기 때문에 농민들의 내부적인 동요가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초전민은 엄청 난 참패를 당하여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관군에 대항할 의 욕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항복했을 때 정부측의 보복을 두려워한 효 심은 이순 등 네 명을 선정하여 바로 중앙에 보내어 국왕의 선처를 간청하 게 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대정이라는 관직을 내리고 포를 하사하여 회유하 였다. 그리고는 이들의 전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초전민의 소탕작전에 나서서 봉기에 가담한 적이 없는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잡아서 자자하고 노 비로 삼았다. 정부의 기만책에 분개한 초전민은 다시 봉기하였다. 그러나 이 미 대세는 기울어져서 패배하고 효심은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제 살아남은 반민들은 다시 운문산으로 숨어들었고, 명주민은 태백산으로 들어가서 후일 을 기약하게 되었다. 이로써 1년 반이나 계속되었던 김사미·효심으로 대표 되는 운문 · 초전민의 봉기는 일단락짓게 되었다.

봉기가 진압된 후 명종은 경주지방 농민들에 대한 회유책과 한편으로는 다른 지방의 소요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시책을 강구하였다. 즉 여러 도에 안찰사를 보내어서 史屬의 가렴주구를 살피게 하였고,81) 미납된 조세를 면제시켜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82) 그러나 이같은 조처들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농민봉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운문·초전민의 봉기가 진압된 지 5년도 못되어 경주를 중심으로다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한편 약해져 가는 자신의 세력을 만회시키기 위해 농민봉기를 이용하려했던 이의민은, 이들이 실패하자 점차 중앙 권력층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그의 양면적인 태도는 반이의민세력의 대두를 가속화시켜 그로부터 채 2년이 되지 못하여 최충헌에게 정치권력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농민봉기가 지배층의 교체까지도 초래하였던 것이다.

운문·초전민의 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초기 단계의 단순한 지엽적인 봉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계획적이고 주변 농민들과 연합투쟁을 벌이는 단계로 승격되어, 이제는 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저력까지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농민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농민지도부의 역량 부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집권층과의 제휴 여부의 갈등으로 농민군 내부에 분열이 생겨 끈질기게 저항하지 못하고 정부군에 의해 궤멸되고 말았다.

〈李貞信〉

3) 무신정권 확립기의 농민·천민봉기

(1) 만적의 난

이의민 세력을 제거하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崔忠獻·崔忠粹 형제였다. 최충헌은 쿠데타에 성공한 후 그의 정치세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동생 최충

^{81)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25년 3월.

^{82)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25년 9월.

수마저 제거하였으며, 명종을 폐위시키고 신종을 옹립하였다. 그는 국왕에게 封事 10條를 올려 고려사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앞서의 집정 자와의 차별성을 나타내었으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 제 1조 국왕은 화재로 인하여 다시 지은 옛 궁궐로 옮길 것.
- 제 2조 우리 나라 관제는 祿의 수량으로 계산된 것이다. 정원 이상의 관리를 줄일 것.
- 제3조 관직에 있는 자가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公田·私田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한 집의 비옥한 토지가 州·郡에 차고 넘치게 되어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고 軍費는 부족해졌다. 해당 기관을 단속하여 공문서를 검토하고 무릇 빼앗은 것들은 모두 본주인에게 돌릴 것.
- 제 4조 아전들이 불량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걸핏하면 백성들을 침해 하며, 또 권세있는 집안의 하인들은 田租를 다투어 징수한다. 능력있는 사람을 지방관으로 보충하여 백성들의 산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
- 제 5조 여러 도에 나가 있는 사신들의 供進을 금할 것.
- 제 6조 승려들의 궁궐 출입과 사원의 利息을 금지할 것.
- 제 7조 군현 아전들의 탐욕을 按察使가 막지 못하고 있다. 안찰사로 하여금 아전의 잘잘못을 가리도록 할 것.
- 제 8조 사치를 금지할 것.
- 제 9조 비보사찰 이외의 사원은 모두 없애버릴 것.
- 제10조 臺省 책임자를 가려서 임명할 것.

최충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직후에, 국왕에게 올린 건의서는 앞으로 그가 통치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조는 그가 건의서를 올린 지 불과 석 달 이내에 국왕이 궁궐을 延慶宮으로 옮김으로써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2조와 10조는 관리의수를 줄이며 적임자를 가려서 임용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중앙의 관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최충헌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하도록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적임자란 어차피주관적인 성격이 가미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관직을 그대로 지닐 수 없었음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최충헌의 봉사10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지방관의 탐

^{1)《}高麗史》 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학과 대토지소유의 금지이다. $3 \cdot 4 \cdot 5 \cdot 7$ 조는 아전이나 권세가의 백성 침탈을 안찰사로 하여금 방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이미 그가 정권을 장악할무럽에는 권세가는 州·郡을 경계로 삼을 정도로 대토지겸병이 유행하여 빈부의 차이가 심각하였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가 대토지소유를 반대한 인물로 이해하기 쉬우나, 그 자신이 후일 대토지겸병을 강행하여 진주와 전라도의 일부를 농장화한 것으로 보아 그가 농민편에 서서 개혁을 요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의 봉사 10조보다 10년 전인 명종 18년(1188) 3월에 내린 국왕의 조서 또한 최충헌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수령의 탐학을 금지하거나 대토지겸병을 방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최충헌은 그 이전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어온 대토지겸병을 방지하기 위한시책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 나라를 이끌어 갈 수없음을 알고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고려왕조는 대토지소유자인 권세가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나라임에도 이것을 방지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최충헌 정권기에 최초로 항쟁을 일으킨 사람은 私奴 萬積이었다. 20 그 과정을 살펴보자.

사동 萬積·味助伊·延福·小三·孝三 등 6명이 北山에서 나무를 하다가 공사노예를 불러모아 모의하기를, '나라에서는 庚寅·癸巳年 이후로 높은 벼슬이천한 노예에게서 많이 나왔다. 公卿將相의 씨가 어찌 따로 있으랴. 시기가 오면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만 어찌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서 곤욕을 당할 수 있겠는가'하니, 여러 노예들이 그렇게 여기었다. 이에 누른 빛깔의종이 수천장을 오려서 丁字를 만들어 표식으로 삼고 약속하기를, '갑인일에 與國寺에 모여 일제히 북을 치고 소리지르며 毬庭으로 몰려가 난을 일으켜, 안과밖에서 서로 호응하여 최충헌 등을 먼저 죽이고, 나아가 각기 그 주인을 쳐서죽여 賤人의 文籍을 불살라 삼한에 천인을 없애 버리면, 공경 장상을 모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高麗史節要》권 14, 신종 원년 5월).

천민 중에서도 제일 미천한 신분인 노예만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²⁾ 만적의 난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邊太燮, 〈萬積亂 發生의 社會的 素地〉(《史學研究》4, 1959;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洪承基,〈武人執權時代의 奴婢叛亂〉(《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나라 역사에서 처음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그들은 중세사회의 가장 큰 존립기반인 신분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그들이 궐기한 목적은 최충헌등 노비의 소유주를 죽이고 노비문서를 소각하여 삼한에 천인을 없앰으로써 노예해방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기 주인을 죽여서 예속적인 신분관계를 벗어난 이후에는 자신들이 공경 장상을 독점하겠다는 정권 장악의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만적의 연설 내용으로 보건대, 이 난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모의하여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호응하여 모인 노예 수가 황지 수천 장을 발행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한 노복의 배반으로 미수에 그치고 주모자 100여 명이 강물에 수장당하는 것으로 난은 종결되었지만, 전형적인 노예들의 신분해방운동이 정권 장악의 목표로까지 연결된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적의 난은 실패했으나, 노비들의 신분해방운동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다시 개경에서 家僮들의 習戰事件이 일어났다. 즉 신종 6년(1203) 4월에 여러가동들이 나무와 풀을 베다가 개경 동쪽 교외에서 隊를 나누어 전투연습 하는 것을 최충헌이 사람을 시켜 체포하게 하였는데, 모두 도망가고 다만 50여명만을 잡아 강에 던졌다고 한다. 이는 만적의 난 이후에 불문에 붙여졌던 남은 무리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신분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만적의 난이실패한 이후에도 천민들의 반란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지방에서 노예와부곡민이 같이 수탈을 당하는 계층으로서 처지가 비슷한 농민과 연합하여봉기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니, 그 대표적인 사건이 晋州民의 항쟁이었다.

(2) 진주민의 항쟁

만적의 난 이후에 경주와 진주에서 대규모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우선 진주에서의 소요를 살펴보자. 진주지역에서의 항쟁은 만적의 난에 이어 공사노예들이 주축이 되어 州東들의 강압적인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점에 그특색이 있다. 진주는 농업생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재지토호의 세력이 강하였다. 최충헌은 정권을 장악한 후 그의 外郷인 柳氏가 살고 있던 이곳

을3) 자신의 직속령으로 만들어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최충헌이 진주 지역의 토지를 장악하여 이를 국왕에 의해 합법적인 식읍으로 인정받아 자손대대로 세습했음은 《고려사》최충헌전의 내용에서 잘 알수 있다. 최충헌은 집권 후 晋州 柳氏 즉 그의 외가와 지방관을 통해 토지겸병을 강행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가 어떤 형태로 토지를 넓혀 갔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중앙권력층과 연계가 없는 진주토호와 일반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진주가 내분에 휩싸이고 있을 때 먼저 반기를 든 계층이 공사노예였다. 진주 내부의 갈등은 농민에게는 이중의수탈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중에서 가장 핍박받는 계층인 노예들은 신분해방의 각성과 더불어 주리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드디어 봉기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봉기는 중앙권력층과 지방토호를 함께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일차적인 공격대상은 중앙권력층의 비호를 받는 향리들이었다.

진주지방의 소요는 신종대에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의 최성기로 불리어지는 문종대에 이미 1만 3천호라는 대규모의 유민이 발생했으며4) 인종대에는 南界에 해적이 횡행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5) 이들의 대다수는 농민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뚜렷한 재해가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토지에서 유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고려전기부터 지배층의 토지겸병과 지방관의 수탈에 백성들이 소극적이나마 저항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지배층의 토지겸병은 고려 중기 이후 농업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성행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관의 수탈도 가속화되어 갔는데, 이는 무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해지는 형편이었다. 다음 내용은 지방관의 탐학을 서술한 구체적인예이다.

^{3) 〈}崔忠獻墓誌〉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晋康國大夫人 柳氏로서 金紫光祿大夫·中書令上將軍인 柳挻先의 딸이다(《朝鮮金石總覽》上, 亞細亞文化社, 1976, 441 쪽).

^{4) 《}高麗史》 권 7, 世家 7, 문종 원년 10월 경신.

^{5) 《}高麗史》 권 15. 世家 15. 인종 6년 4월 정사.

- ① 晋州守 金光允과 安東守 李光實이 욕심이 많아 가혹하게 재물을 긁어모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반역을 도모하니, 有司가 뇌물받은 죄로 논하여 함께 그들을 귀양보내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6년 7월 정유).
- ② 中書省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慶尙州道 按察使 崔嚴威가 吏民을 가혹하게 조사하여 함부로 빼앗고, 뇌물을 받는 것이 염치가 없습니다'고 하였으므로 명하여 郎將 朴冲으로 대신하게 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7년 6월 병신).

사료 ①은 진주와 안동 백성들이 지방관의 탐학을 견디지 못하여 반란을 모의한 내용이다. 이미 진주는 공사노예가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도 농민봉기의 조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지방관만 귀양을 보내었으니, 농민을 수탈한 정도가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료 ②에서는 지방관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吏, 즉 향리나 토호들에게도 뇌물을 거두어들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배층 중심의 수탈체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 지방관을 바꾸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배층인 중앙권력층과, 그들과 제휴한 지방관에 대한불만은 더욱 고조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최충헌이 자신의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관을 앞세워 토지겸병과 인신수탈을 자행하니, 이제 진주지역의 봉기는 누가 언제 무엇을 계기로 폭발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지,일어나리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되어 있었다.

진주지역의 항쟁은 진주의 공사노예가 떼를 지어 모여서 주리를 죽이고 그들의 집 50여 호를 불태우면서 시작되었다.6) 특히 최충현 집권 때에 吉仁·萬積·密城官奴·開京家僮 등 노예들의 항쟁이 빈번했는데 이는 앞서 무신집정자와는 달리 신분제를 고착화시키려는 그의 정치성향에 연유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만적에게서 나타났듯이 그들이 노예가 되어 시달림을 받는 이유가 지배층이 임의로 정한 사회체제의 모순 때문이며, 따라서부당한 그 체제는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주의 노예들은 주리를 죽이고 그들의 집은 불태울 수 있었으나 군대가 상존하는 관아를 습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결정적인 약점으로 인해 노예

^{6) 《}高麗史節要》 권 14, 명종 3년 4월.

들은 관아의 추적을 받으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난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사노예의 봉기를 계기로 지방관. 주리와 토호의 갈등이 표면화되 면서 봉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처음 진주는 노예들이 그들을 억 압하는 주리에 대한 반감으로 봉기하였으나, 나중에는 도리어 노예를 토벌한 주리의 반동적인 반란으로 바뀌었다. 즉 노예들이 주리들의 집에 불을 질렀 을 때 倉正 鄭方義의 집도 같이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주태수가 난에 연 루시켜 정방의를 가두자. 오히려 동생 昌大가 정방의를 구출하여 함께 반란 을 일으켜 태수와 사록을 내쫓고 진주를 장악하였던 것이다.7) 그는 이 과정 에서 그에 반대하는 사람 6,400명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당시 진주의 토성은 姜氏ㆍ河氏・鄭氏이며, 來姓으로 柳氏가 있었다. 이 때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정씨와 대치되는 세력인 강ㆍ하씨 등의 토호와 그 휘하의 노복. 그리고 그들 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호 등 많은 무고한 농민들이 살해되었을 것이다.《慶 尚道地理志》와《世宗實錄地理志》를 참조해서 추정하면 당시 진주의 인구수 는 대략 12,000명 정도이고 진주목 소속의 군현까지 합해야 3만 명 정도였기 때문이다.8) 그러나 중앙의 세력이 두려워 유씨는 온존시켰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 점은 그가 주도권을 장악한 후 최충헌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사실에 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진주목 관내는 공포분위기가 엄습하여 아무도 감히 정방의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며, 진주는 완전히 정방의의 세력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진주를 장악한 정방의는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그를 토벌할까 두려워하며 중앙의 권력자에게 바칠 뇌물을 모았다. 여기에서 정방의는 중앙의 권력자에게 진주의 점령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이 아님을 강조하고 만일 자신에게 진주의 주도권을 인정해 준다면 앞서 봉기를 감행했던 공사노예들을 소탕하고 진주지역에 대한 최충헌의 토지사유화를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다. 최충헌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의 입장으로는 정권

^{7)《}高麗史》 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方義.

⁸⁾ 李貞信、〈晋州民의 抗爭〉(《高麗武臣政權期 農民·賤民 抗爭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1), 255等〈表 3〉 참조.

을 장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않아야기된 사건이므로 우선은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중앙 통치체제가 문란해짐에 따라 지방세력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억누르는 전형적인 예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중앙권력층의 대토지소유에 불만을 품고 대치하던 지방 토호의 성격과 완전히위배되는 것이었다. 진주민을 살육하고 중앙의 권세가에게 환심을 사려는 정방의의 태도에 분노와 배반감을 느낀 농민들은 노예들과 더불어 정방의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웃 陝州의 奴兀部曲民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합주에는 이미 정방의가 진주에서 실권을 잡기 이전부터 반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제 어떤 연유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제 합주민과 진주민이 힘을 합쳐 정방의를 공격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때 陝州에 光明計勃이라는 적이 있었는데 역시 세력을 부리어 그 지방의 큰 해가 되었다. 方義와 원수가 된 진주사람 20여 명이 협주의 적에게 가서 투항하고 군사를 청하여 그를 치고자 하니 적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방의가출격하여 그들을 쫓아버린 후 이긴 기세를 타서 奴兀部曲에 이르러 그 무리들을 다 죽였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方義).

합주의 노올부곡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난 점으로 보아 아마 그들은 군 현으로의 승격, 즉 신분해방이 중요한 요망사항이었을 것이다. 합주에서는 부곡민 외에도 이 봉기에 가담했던 사람 중 유민들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사료에서 어느 정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東南海安撫使 鄭應文이 보고하기를, '溟珍·松邊·鵝洲(모두 거제도에 있음: 인용자 주) 3현의 해적 佐成 등 820명이 투속하였으므로 이미 陝州 三岐縣(三嘉)에 歸厚·就安의 場을 두고 晋州 宜寧縣에 和順場을 두어 거처하게 하였습니다'하니 群臣들이 하례하였다(《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6년 10월 임자).

위의 내용으로 이미 인종대에 거제도를 거점으로 해적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거제도에 소속되어 있는 명진·송변·아주는 고려 말기에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주민들이 모두 없어졌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복구되었다고 한다. 《경상도지리지》에서 巨濟縣의 인구수를 보면 호구는 123호이고, 남자는 423명, 여자는 522명이었다. 위의 사료에서 거제현의 해적 820명이 투속하였다고 하

는데 이들은 대체로 거제현에 살고 있던 일반 주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인종대에 왜구의 침입에 관한 사료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농경이나 어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뱃길을 이용한 해상무역에 종사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방관의 탐학, 흉년, 풍랑 등으로 생계를 잇기가 곤란해지자 어쩔 수 없이해적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항력으로 도적이 된 그들로서는 국가에서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보호해 준다고 선무하자 즉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그들을 정착시킨 지역이 합주의 삼기현과 진주의 의령현이었다. 그러나 이주한 지역에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없는 그들로서는 거제현에서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생계가 어려웠으리라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12세기 이후 농업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권력가의 대토지소유와 지방관의 가혹한 수탈은 무신정권 이후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더욱 극심하게 전개되었다. 이때 합주 노올부곡에서 光明計勃이 봉기하자 이주민들은여기에 적극 호응하여 합류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따라서 합주 광명계발의 난은 전호와 부곡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곡민이나 전호가 신분은 다를지 모르나 수탈로 인한생활 조건은 비슷했으므로 함께 봉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곡민은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로 인해 한때나마 신분이 양인으로 승격되거나 여러 부곡이 군현으로 승격되는 것에 고무되어 그들도 양인이 되기 위해 봉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은 그 주모자의 이름이 새로운 밝음을 갈구하는 「光明」이라는 사실에서 추정된다. 또는 미륵신앙처럼 새 세상을 기대하는 종교성이내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정확한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다.9)

앞의 사료에 의하면 진주민이 합주로 가서 함께 정방의를 공격할 것을 요청하자 합주의 반민들은 즉시 승낙하였다고 한다. 중앙의 후원을 받는 강력한 정방의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그들로 볼 때는 부담스럽고 패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주민이 그들처럼 수탈당하는 피

⁹⁾ 旗田巍는 陝州 반란의 주모자인 光明計勃은 그 명칭으로 보아 종교적 지도자 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했으며(〈高麗の武人と地方勢力—李義旼と慶州〉、《朝鮮歷史論集》上,龍溪書舍,1979),李丙燾는 그 이름의 특이함에 비추어 외국 인 포로로 추측하였다(《韓國史—中世篇—》、乙酉文化社,1961,496쪽).

지배층이라는 공감대 외에도, 진주지역민 속에는 합주·진주로 분산하여 거주시켰던 거제현의 옛주민들이 있어서 무신정권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미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인 정방의를 타도한다면, 반란영역이 확대되어 중앙정부에 대해 그들의 요망사항을 관철시키기가 훨씬 용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주민의 제의는 그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합세하여 정방의를 친 결과는 참혹했다. 그들은 참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방의에 의해 그들의 근거지인 노올부곡까지 공격당함으로써 전멸을 면치 못하였다. 주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하는 정방의가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이미 진주를 장악하여 진주목내의 보승·정용군까지 그의 지휘 하에 두게 된 군사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정부측에서 볼 때는 정방의가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마음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탐탁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그보다는 농민·천민의 봉기가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를 진압하기위해서는 누구라도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진주 주민들은 정방의를 치기 위해 주변의 농민, 부곡민들과 힘을 합쳐 끊임없이 공격하였다. 그들이 합주 부곡민과 함께 공격하다가 패 배한 지 무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진주민은 정방의의 세력을 완전 히 제압할 수 있었다.

진주사람들이 정방의를 죽였다. 그 동생 昌大가 200여 명을 이끌고 성에 오르니 고을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였다. 이에 창대가 도망가고 그 무리들도 또한 흩어지니 진주가 평정되었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方義).

진주사람들은 정방의의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방의의 뒤늦은 민심수습은 그가 진주 주민들을 6,400명이나 무고하게 살상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정부도 더 이상 정방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초기의 공사노예의 봉기가 비록 주리를 죽이는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은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비해,이제 진주민 봉기의 목적은 정방의 타도라는 모습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진주민의 봉기가 단순히 토호와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파생된 것

이라면, 계속 정방의를 도와서 주민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청도의 운문산에는 반민들의 근거지가 온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정부가 주민들을 학살한 정방의를 돕는다는 것을 구실로 진주민과 합세한다면 봉기 의 양상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오히려 진주민을 부추겨서 정방의를 제거한다면 최충헌으로서는 그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더욱 유리할 수도 있 었다. 이제 정부는 완전히 방관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이에 정방의는 고립무 원의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군사력으로 억압적인 통치를 계속하였으나 정 부의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한으로 더욱 가열된 진주민의 항거를 당해낼 수 없었다. 드디어 정방의가 진주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자 그의 아우 정창대와 나머지 측근들도 모두 숨거나 도망하였다. 이로써 정방의의 반란은 진주민에 의해 종식되게 되었다.

중앙의 권세가를 배경으로 한 지방관과 토호와의 사이에서 더욱 많은 수탈에 시달리던 공사노예의 봉기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토호인 정방의의 등장을 가져왔으므로, 진주민의 항쟁은 일반적인 민란과 성격이 다름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이같은 정방의의 반민중적 성격은 전체 진주민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주민들에 의해 타도되고 말았다. 그러나 진주목에서는 정방의가 타도된 이후에도 그들이 바라는 요구 조건은 거의 수렴되지 않았다. 안찰사에 의한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무마책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노예나 천민들의 신분 상승이나 대토지소유의 반대 등 본질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방의는 주민들을 6,400여 명이나 죽였고, 그로 인해 주민과 주리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무려 1년간이나 소요상태에 있었으므로 진주는 황폐해졌다. 결국 진주주민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정씨를 중심으로 한 토호를 몰아내는 데 그쳤을 뿐 농민들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그들 또한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 때를 틈타 최충헌은 진주를 완전히 자신의 영유지로 만들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진주민이 최충헌의 반대세력인 토호들을 제거시켜 준 셈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농민·천민·노예들이 힘써 정방의를 타도함으로써 얻은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후 진주의 대다수 토지들이 최충헌의 농장으로 흡수되어 버 렸으므로 농민들은 전호나 유민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 난을 일으키기 에는 관군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피지배층은 그들을 함부로 죽이고 수탈 하던 토호와 대결하여 끝내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오히려 최충헌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비록 진주민의 항쟁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으나 부당한 억압을 배제하기 위해 피지배층이 연합하여 끈질기게 싸워 그들의 힘으로 주리를 몰아낸 것 은 중요한 의미를 지난다고 보여진다.

(3) 경주민의 항쟁

가. 명주 · 경주 · 금주에서의 농민봉기 양상

경주지역의 농민항쟁은 이의민정권 때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즉 명종 20년(1190)의 경주, 동왕 23년의 운문·초전민의 봉기에 이어 신종 2년에는 경주·명주를 중심으로 다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여기에서는 최충헌집권이후 경주지역 농민항쟁의¹⁰⁾ 성격을 살펴보자.

최충헌집권 이후 신종 2년에 처음 농민들이 봉기한 곳은 澳州에서였다. 그들은 三陟・蔚珍 두 현을 함락시켰고,11) 이어서 東京에서 일어난 농민군과 힘을 합쳐 義城 등 주변의 주현을 침략하였다.12)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여느 민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관계의 모순으로 인한 농민의 궁핍함과 지배층의 탐학이었을 것이다. 명종 18년 3월의 조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당시 고려사회의 당면한 과제가 대토지겸병으로 인한 유이민의 증가였다. 최충헌 역시 정권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대토지소유의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봉사10조에서 이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봉사의 후속 조치로서, 신종대에 그가 이같은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충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백성이 아닌 자신의 힘에 의존하기 위해 스스로 대토지소

¹⁰⁾ 경주민의 항쟁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金晧東、〈高麗 武臣政權下에서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民族文化論 叢》2・3.1982).

李貞信. 앞의 책.

^{11) 《}高麗史節要》권 14. 신종 2년 2월.

^{12)《}高麗史》 권 57, 志 11, 地理 2, 安東府 義城縣.

유자가 되었으며 사병을 양성하였다. 결국 최충헌의 의도는 봉사10조를 통해지배층의 재편성을 기도했다고 보여진다. 필요없는 관리를 축출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정치적인 세력을 강화하였고, 대토지소유자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여 이의민 族人이 소유했던 토지를 빼앗아 그나 그에게 동조하는 慶州吏에게 분배하여 경제적인 재편성을 이룩하려 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의민의 사후에 자신의 토지를 되찾기를 희망했던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책에 분노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요컨대 농민봉기는 토지소유로 인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데 난이 일어난 지 불과 두 달이 되지 못하여 반민들은 항복하였다. 이유는 宋公綽의 설득이 주효하여 항복했다고 한다.13) 그런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으켰으며, 난의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너무 쉽게 굴복한 느낌이 든다. 더구나 송공작은 왕의 명을 받아 명주의 반민들을 회유하였는데, 울진·동경 반민들의 우두머리까지 와서 항복했다고 한다. 이들이 반란을 포기했던 이유는 농민들의 절박한 토지소유관계 모순의 해결보다는 金順 등 반민 지도부에 대해 일정한 권익을 보장한 정부의 설득이 주효했을 것이다.14) 그러나 반민 지도부의 항복 결정은 그들을 믿고 봉기했던 농민군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여 항복을 권유하는 정부나 반민 지도층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운문산과 태백산으로 들어가서 항쟁을 계속하였다. 태백산에 관해서는 신종 6년(1203) 8월에 정부군의 토벌로太白山賊魁 阿之를 붙잡은 기록이 보인다.15) 아마 늦어도 신종 2년부터 이곳이 반민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운문산에 들어간 농민들은 주변의 농민들을 포섭할 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도 호응하도록 부추겼다. 당시 운문산은 명종 23년(1193)의 운문·초전민의봉기 이래로,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가렴주구 등이 미치지 못하는

^{13) 《}高麗史節要》권 14. 신종 2년 3월.

¹⁴⁾ 慶州 金氏는 옛 신라의 왕족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경주 토호였다. 따라서 金順 등은 농민들의 목적과는 달리 무신정권 성립 이전 문신들의 경주에서의 기득 권 회복과 함께, 운문·초전민의 봉기 이후 경상도지역의 재편성으로 약화된 경주 지역세의 회복이 더 큰 목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李貞信, 앞의 책, 200 쪽).

^{15) 《}高麗史節要》권 14, 신종 6년 8월.

안락한 근거지로 인식되어진 것 같다. 그리하여 운문산의 농민군은 명종 24 년 이후에는 그리 활발하게 싸우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수탈당하는 계 층에서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전력도 강화되고 있었다. 이 속에는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신종 3년 5월에는 밀성 관노 50여 명이 관가의 은기를 훔쳐 운문산의 반민에게 합류했다는 기록도 보인다.16)

또한 신종 3년 8월에는 경상도 金州(金海)에서 호족과 대립하고 있는 주민들이 보인다. 즉 금주의 雜族人들이 모의하여 무리를 지어 난을 일으켜 호족들을 죽이니 호족이 성밖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副使 李迪儒가 활을 쏘아저지시키려 하자, 그들이 항의하기를, "우리들은 포악하고 탐오한 자를 제거하여 고을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를 쏘는가"하였다. 이에 적유가 외적으로 잘못 알았다고 거짓으로 사과하고, 성밖의 호족과 비밀리에 모의하여 이들을 협격하여 죽였다고 한다.17) 이 봉기는 금주의 잡족인이 토호인 호족의 수탈에 저항하여 일으킨 것으로, 이들의 항의에 의하면 호족과의 갈등만을 강조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과는 별다른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진주의 정방의처럼 주현에 대한 중앙통제력의약화에 편승해서 토호들이 발호하여 농민 수탈을 강화함에 따라 발생했던소요임을 알 수 있다.

김순이 항복함에 따라 경주의 소요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때 경주에서는 각 토호들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으니, 대표적인 것이이의민 세력과 최충헌을 배경으로 하여 새롭게 등장한 관료세력이었다.

慶州副留守 房應喬를 파면하고 郎中 魏敦謙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처음 최충 헌이 이의민의 친족을 처단할 때 慶州別將 崔茂가 경주 관리의 명을 받들어 이 의민의 친족인 思敬 등 여러 사람을 잡아서 형벌을 내렸다. 이에 사경의 친족인 伯瑜·直才 등이 원망하며 응교에게 호소하기를, '茂가 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하였다. 방응교가 이 말을 믿고 그를 가두었더니 백유·직재가 밤에 옥에들어가서 최무를 죽였다. 그런데 응교가 함부로 살해한 죄는 묻지 않고 도리어무의 族人인 用雄・大義 등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州人이 분노하고 원망하였다.

^{16) 《}高麗史節要》권 14, 신종 3년 5월.

^{17) 《}高麗史節要》 권 14, 신종 3년 8월.

얼마 후에 용웅·대의가 백유·직재를 죽이니 용웅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이에 대의 등이 주의 무뢰배를 모아 횡포한 짓을 함부로 하였는데 응교 또한 제어하지 못하였다(《高麗史》권 21, 世家 21, 신종 3년 12월).

신종 초의 경주는 완전히 무법천지였다. 최충헌은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명종 26년(1196)에 이미 이의민의 삼족을 처단했다. 이의민의 족인을 죽일 때 앞장섰던 인물은 경주 최씨인 별장 최무였다. 이처럼 이의민이 제거됨으로써 경주 이씨의 세력이 약화된 데 비해 고려 전기부터 명문귀족이었던 최씨의지위가 강화되었다. 최무가 이의민의 족인을 죽인 것은 최충헌의 명령에 의해서라고 판단되는데 이로써 경주 최씨는 최충헌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게되었다. 이제 이의민의 세력은 약화되어서 나머지 친족들을 방면하더라도 경주는 별다른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최충헌은 회유책의 일환으로써그가 집권한 지 5년만인 신종 3년(1200)에 이의민의 남은 족인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경주에서 정치적 주도권 외에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던 이의민의 족인들은 자신의 세력권에 최충헌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료세력의정치적・경제적인 침투가 강화되자, 서로 견제하여 드디어는 유혈사태까지초래하게 되었다.

이같은 의민파와 충헌파의 대립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최충 헌이었으므로 당연히 충헌파의 우세로 속단할 수 있지만 이의민 족인들의 세력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최충헌은 경주 토호들의 주도권 쟁 탈전에만 매달릴 겨를이 없었으니 그것은 진주에서의 분란 때문이었다.

최충헌정권의 취약성을 간파한 이의민 족인들은 앞서 경대승정권기에 경주를 그들의 영역권 내에 두었듯이 이번에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배후세력이었던 이의민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의민파인 伯瑜·直才가 죽임을 당하고, 최충헌과 연결되고 있던 최무의 족인인 대의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 틈을 타서 정부는 이의민파이거나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경주부 유수 방응교를 파면하고 위돈겸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경주지역의 주도권 쟁탈전은 이의민파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김순 등과 같이 무신정권의 성립 이전에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던 토호들

은 이의민이 살해되고, 의민파의 세력이 제거됨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경주를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런데 사태는 엉뚱하게 변질되었다. 이의민세력이 제거됨에 따라 최충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관리들이 경주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찍이 최충헌이 김순에게 경주의 지배권을 이전의 문신토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약속은 무위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 이에 경주 김씨를 중심으로 한 옛문신 귀족들은 무신정권하에서 그들의 영화를 되찾기가 어려움을 간파하고 옛신라의 부흥을 꿈꾸게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종대의 신라부흥운동은 경주의 토호들이 주도하여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종 5년의 신라부흥운동

경주지역의 소요는 비록 金順과 今草가 항복했으나, 그 이후에도 운문산·태백산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으니, 신종 5년(1202) 8월에 최충헌이 문무관리들과 경주의 일을 의논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경주지역은 계속 소요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민의 항쟁은 주로 운문산을 근거지로 삼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최충헌정권이 약속을 지키지않아 세력을 만회하지 못한 경주토호들도 함께 가담했으리라 생각된다. 토호들은 이제 농민의 지도자로서 주도권을 장악한 후, 경주 주위의 군현까지 점차 영역을 확대하여 신라부흥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 그들의 첫시도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永州를 침공하는 일이었다. 慶州別抄軍은雲門賊 및 符仁寺, 桐華寺 등의 승도들을 끌어모아 영주를 공격하였다.18)

영주는 고려 초 臨阜縣에 道洞・臨州 두 현을 합하여 설치된 지역이었다. 성종 14년(995)에는 永州刺史로 삼았고 현종 9년(1018)에는 경주에 내속시켰다가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두었다. 따라서 영주는 현종 9년부터 경주에속해 있다가 명종 2년에 감무가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경주에서 독립하였는데,그 속현으로서 梨旨銀所가 있었다.이 지역은 현종 때 영주가 경주의 속현이 되자 함께 이곳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후에 영주에 감무가 파견됨으

^{18) 《}高麗史》 권 20, 世家 20, 신종 5년 10월.

로써 이지은소는 다시 영주의 관함로 바뀌게 되었다.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慶州吏民 起兵謀叛 來侵郡境"이라 하여 경주민과 주리가 함께 영주를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주민이 영주민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두 지역 주민들의 대결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지은소의 소유권을 둘러싼 암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시의 貢賦는 농민의 개별적 부담이 아니라 집단적 부담으로서. 매년 미 리 주·부·군·현 등 지방의 貢額이 일괄적으로 책정·함당되었다가 이것 이 지방관리의 책임하에 왕실·정부의 각 기관 등에 헌납되었다. 그런데 종 래 속현을 영유한 주읍은 그 속현을 착취대상으로 간주하여, 위로부터 배정 받은 각종 부담을 이들 속현에 과중하게 부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읍의 몫 까지 떠맡기는 것이 예사였다.19) 그런데 경주의 경우, 명종대에 와서 이곳의 속군현이었던 長鬐縣・永州郡・興海郡・慶山縣 등에 각기 감무가 파견됨으 로써 속군현이 줄어들게 되었다.20) 여기에 경주에 소속되어 있던 이지은소까 지 영주에 귀속하게 되니 경주민이 국가에 부담해야 하는 공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특히 이지은소는 은을 생산하는 특수지역이므로 이것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주민으로서는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수탈대상의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었다. 국가에서는 경주민의 공부가 가중됨에 따라 어느 정도 감면해 주 었을 것이지만 속군현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이전보다는 부담이 훨씬 무 거웠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경주민은 이지은소만이라도 그들의 지역에 다 시 내속시킬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지은소가 경주에 내속되면 그들 지역 또한 공부의 부담이 많아질 것이므로 들어줄 의 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는 국가의 소관사항이었다. 이같은 지역간의 갈등 이 경주 吏民으로 하여금 영주를 공격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¹⁹⁾ 李樹健,〈朝鮮初期 郡縣制整備外 地方統治體制〉(《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 関 1984), 413等.

^{20)《}世宗實錄地理志》 권 150, 慶尚道 慶州府.

와 비슷한 예는 명종 2년에 成州人이 인종대까지 그들의 부곡이었던 三登縣을 공격하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²¹⁾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주 이민 또한 정부의 승인없이 영주의 이지은소를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주의 공격은 그 지리적 위치로 보건대 반란의 전초전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경주 이민들의 영주 공격은 영주 이민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별초군·승도·운문산 반민 등에 의한 연합세력 형성과 가능성에서 힘을 얻은 경주토호들은 신라부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선 그들의 구심점이 될 왕을 선정하였다.

경주인이 반란을 도모하여 비밀리에 郎將同正 裵元祐를 前將軍 石成柱가 귀양가 있는 古阜郡에 보내어 설득하기를, '고려의 왕업은 거의 다 쇠진되었으니 신라가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공을 왕으로 삼아 沙平渡를 경계로 삼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하니 성주가 거짓으로 기뻐하며 원우를 집에 머물게 하고는 은밀히 군수 惟貞에게 가서 그것을 고하였다. 유정이 원우를 잡아 안찰사에게 보내니, 안찰사는 중앙에 알린 후에 죽였다(《高麗史節要》권 14, 명종 5년 11월).

경주토호들은 신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우선 국왕을 선정, 반란의 구심점으로 삼은 이후에 사평도를 경계로 한강 이남지역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고려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고 한강 이남인 옛삼국시대 때의 신라영토를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다. 경주토호들이 석성주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이유는 최충헌에 의해 유배되었던 인물인 만큼 반최충헌세력의 규합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주의 토호가 아니므로 실권은 그들이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석성주는 최충헌에 반대했으나 고려왕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으며, 옛신라에 대한 애착심도 없었다. 그리하여 석성주를 왕으로 추대하고 사평도를 경계로 신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경주토호들의 시도는 그가 관아에 밀고함으로써 실패하였다. 신라부흥을 기도했던 토호들은 석성주의 밀고로 이 사실이 중앙에 알려지게 되자, 정부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도는 명백히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의미

^{21)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2년 6월.

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체포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안찰사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안찰사로서도 경주지역의 소요가 계속된다면 그 또한 문책을 당할 것이므로, 토호들의 항복을 받아들여 지역안정에 주력하고자 했다.

경주토호들의 주도 하에 일으켰던 신라부흥운동은 여기서 일단 그친 듯하며 더 이상 확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충헌은 그들이 비록 항복했으나 신라부흥을 시도했던 일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토호들의 기세가 약해진 틈을 타서 군대를 파견하여 경주지역을 횡행하던 난민들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농민봉기는 정부의 토벌작전에 대응하여 맞서는 과정에서 점차 확산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이제경주민의 봉기는 토호들이 주도했던 신라부흥의 성격보다는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일어선 농민항쟁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물론 경주토호들 중에서는 신라부흥을 고집하며 끝까지 고려정부에 항쟁했던 利備 같은 강경파도 있어 농민들과 함께 대항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경주토호들의 항복의사에도 불구하고 최충헌은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는 이 때를 틈타 경주민의 반정부 항쟁을 말살시키려고 하였다. 이 것은 그가 정권을 유지해가는 데 경주민의 반정부적인 성향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감지한 데서 연유하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그가 군대를 파견했던 신종 5년은 진주지역의 소요도 끝나 경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였다. 최충헌은 대장군·직문하성 金陟侯를 招討處置兵馬中道使로 삼고 형부시랑 田元均을 그 부장으로, 대장군 崔匡義를 좌도사, 병부시랑 李頤를 그의 부장으로, 섭대장군 康純義를 우도사, 지합문사李維成을 그 부장으로 삼아 경주를 토벌하게 하였다.

경주민은 이곳을 가혹하게 진압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함부로 난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최충헌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니,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지키기 위해서라도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운문산·울진·초전의 농민군과 연합하고, 상주·청주·원주에 격문을 보내어 함께 대항할 것을 요청하였다.²²⁾ 운문산과 초전은 명종 23년에, 울진은 신종 2년에 농민들이 봉기

^{22) 《}高麗史節要》권 14, 신종 5년 12월.

하였던 곳이다. 이로 보아 이들 지역은 정부의 강압책에 눌려 일시 수그러졌지만 여전히 농민봉기의 진원지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농민군을 이끌고 정부군에 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利備와 享佐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이비ㆍ패좌로 되어 있지만, 田元均 묘지명에는 "東京義庇之黨 與草賊巨魁勃尤起兵"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이름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그 연대와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같 은 인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비의 경우에는 "東京賊徒 都領 利備"로 기술되어 있기도 한데, 그가 도령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경주토호였 으리라 짐작되며, 패좌와는 달리 신라부흥에 대해 어느 정도는 미련을 버리 지 못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패좌는 초적이라는 용어나, 운문산 을 근거지로 삼았던 점으로 보아 일반 농민이나 천민으로서, 어느 시기인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우문산에 들어와서 농민군의 지도자가 된 인물 이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경상도 지역의 농민항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력권이었다. 따라서 신종 5년(1202)의 경주지역민의 국가에 대한 항쟁은 신라 부흥에 애착을 가지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던 이비부대와 순수 한 민란적인 성향으로 국가의 수탈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한 패좌의 두 부대가 연합하여 일으키게 되었다. 만약 경주지역의 봉기가 성공리에 끝 맺을 수 있었다면 두 계층의 성격 차이로 내부에서 갈등이 파생되었을지 모 르지만, 그들은 우선 강력한 정부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연합항쟁이 불가피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군은 3군으로 나누어서 반민들을 공격하였다. 즉 김척후·전원균부대인 중도사는 경주를 거쳐 운문산으로, 강순의·이유성의 우도사는 杞溪縣 등경주 외곽지대로, 그리고 최광의·이신의 좌도사는 基陽縣 등 경주 북부 지역을 담당하여 농민군과 대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종 6년 정월에는 관군과 이비부대가 기양현에서, 2월에서 3월 경에는 패좌가 이끄는 반민들이하산하여 기계현에서 이유성의 우도사와 싸울 무렵에, 중도사의 군대는 바로운문산을 공략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문산 기슭에서의 전투에서 반민 주력부대의 하산으로 관군은 결국 승리했으나, 그들의 저항이 치열하여 정부측도

사상자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23)

농민군은 그들의 근거지를 관군에게 빼앗기게 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를 탈환하기 위해 운문산에 있는 관군의 주둔지를 계속 공격하였으나 관군은 굳게 지키기만 할 뿐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다. 당시 운문산을 지키던 중도사 대장군 전원균은 오이를 심음으로써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농민군 스스로가 포기하기만을 기대했다고 한다.²⁴⁾ 운문산 속에서의 주둔은 관군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농민들 중에서반민측에 가담하여 싸우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반민편이 되었으니 이는 관군이 농민에게 끼친 폐해가 적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관군이 운문산에 들어간 것은 농민군과의 정면대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퇴로가 끊겨정부군이 고립되어 전멸을 당할 우려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군이 수비에만 급급하여 반민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책임을 물어 김척후를 파면하고 丁彦眞을 기용하였다.

총대장인 중도사가 교체된 후, 관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농민군을 습격함으로써 그들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켜 나갔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심을 회유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기원의 대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대략을 살펴보면 太祖眞前・龍王・天皇・부처・山神・天神・太一 등으로서불교・도교・민간신앙의 대상이 모두 섞여 있다.25) 이는 항쟁에 지친 농민들을 동요하게 하여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리라 보여진다. 농민군의 동요는 계속되는 항전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므로, 반민지도부는 이를 근절시키기에 주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비 또한 일찍이 신라에서 제사를 지냈던 5악 중의 하나인 東岳에26) 가서 기도를 올렸다. 그는 항쟁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농민군이야말로 동경산신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농민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비부자가 관군의 눈을 피하기위해 밤에 몰래 기도하러 갔을 때 병마사 정언진의 사주를 받은 무당의 꾐

²³⁾ 李奎報,《東國李相國集》 권27, 征東軍幕上都統尚書副使侍郎書.

^{24) 〈}田元均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571쪽.

²⁵⁾ 李奎報,《東國李相國集》권 38. 李貞信, 앞의 책, 221쪽〈表 1〉참조.

²⁶⁾ 李基白,〈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에 넘어가서 사로잡히고 말았다.27)

이비의 체포는 농민군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봉기의 구심체인 지도부가 이비의 죽음으로 와해되니 반민들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어 관군에 대항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에 패좌는 남은 반민들을 수습하여 운문산에 숨어 방어에만 주력할 뿐 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반민들의 대전기피로 항쟁은 장기화되었고, 농민군을 빨리 진압하고 상경하려는 관군측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정언진은 반민집단 내부에서 틈이 생겼음을 간파하고, 휘하의 장수 몇몇을 보내어 패좌에게 항복을 권유하였다. 다음은 패좌의 몰락을 기술한 기록이다.

정언진이 또 隊正 咸延壽・康淑淸을 보내어 운문산에 가서 패좌에게 편안하게 생업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적의 副將이 함연수에게 자주 눈 짓하므로 함연수가 그 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패좌를 쳤다. 패좌가 떨쳐 일어나니 강숙청이 쳐서 그 머리를 베어 서울로 보냈다. 그의 부하들이 함연수 등을 찌르려고 하니 적의 부장이 이를 꾸짖어 제지하였으므로 죽음을 면하였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丁彦眞).

앞서 패좌가 운문산의 요새지를 빼앗기고 이어 이비가 살해됨으로써, 농민 군의 전의가 상실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군 내부에서는 관군에 항복하여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정언진은 이 때를 틈타 회유사절단을 보냈던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좌는 측근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는 정부측의 고도의이간책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패좌가 죽자 농민들은 곧 반격을 시도하였다. 그리나 그들은 패좌의 부장을 비롯한, 정부와의 강화를 원하는 세력에 눌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였다. 이후 정언진은 남은 농민군을 완전히소탕하기 위해 다시 운문산에 주둔하면서 山角・得光의 항복을 받고 반민들의 근거지를 불태워 버렸다. 그러나 운문산이나 태백산 일대에는 여전히 잔존세력이 남아서 끝까지 항거하고 있었으므로, 최충헌은 대부분의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안찰사 차仁碩에게는 京兵 200명을 주어 남은 무리들을 소탕하게 하였다. 박인석이 신종 7년(1204) 5월에 金順 등 20여 명을 사로잡는 것을

^{27) 《}高麗史節要》 권 14, 신종 6년 4월.

끝으로 경주민의 항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명종 20년부터 시작된 경주지역의 농민항쟁은 운문·초전민의 봉기에 이어 신종대에 들어와서는 신라부흥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항쟁은 주변의 농민·유이민·사원세력과 연합하여 중앙정부와 직접 맞서서 저항했으며, 경상도의 전역을 장악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는 명종 4년에 발생했던 서북민의 항쟁 이래로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 등 30여 년 동안 농민군이 여러항쟁을 겪는 과정에서 오는 피지배층의 역량이 그만큼 쌓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충헌의 강경한 탄압책에 밀려 농민봉기는 일단 진정되었다. 경주지역에서의 농민봉기는 東京留守가 知慶州事로 강등된 사실 외에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므로 지방관의 수탈, 토지겸병을 방지하여 농민적 토지소유로의 재편성 등 농민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렴된 것 같지는 않다. 역설적으로 최충헌은 이 봉기를 무사히 수습함으로써 그의 독재체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대토지겸병이 성행하여 체제내의 모순이 가중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충헌이 기존 중앙 정치기구인 3省 6部體制를 그대로 두고 다시 敎定都監‧都房 등을 설치한 이유는 그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었겠지만, 그보다는 기존 정치기구로는 분출하는 피지배층의 불만을 수습할 수 없어서, 보다 강압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농민들의 의식이 봉기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주민의 항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 후에, 고려는 거란·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면서 국내의 지배권력에 대한 싸움을 벌이는 이중의 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 전주·나주 군인들의 반란, 振威縣人의 반란, 楊水尺의 배반 등 피지배층이 고려정부에 대해 항전을 벌이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최충헌이 죽은 후, 새로운 집 정자로 등장한 崔怡(초명은 禹)는 이민족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남쪽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동경유수로 승격시켰다.28) 결국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는 못하였으나 강등시킨 지 불과

^{28) 《}高麗史》 권 57, 志 11, 地理 2 東京留守官 慶州.

15년만에 경주를 원상 회복시킨 것은 그가 새롭게 정권을 잡으면서 농민들을 회유할 필요성도 느꼈겠지만, 그보다는 농민들의 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같은 농민들의 힘은 이후 몽고와의 전쟁에서 외적을 방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李貞信〉

4) 외세침입기의 농민 · 천민봉기

강종·고종대에 들어오면서 무신정권이 확립되어 최씨독재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토지 소유의 확대, 지방관의 수탈, 교정도감 등 새로운 권력기구의 설치 등으로 농민의 부담이 늘어갔는데, 특히 외적이 침범하여 농민의 궁핍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때 신종대의 경주지역의 농민봉기 이래로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농민들은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사회가 동요함에 따라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절에서는 고종 연간의 외세침입기에 발생했던 농민·천민의 항쟁을 고종 3년(1216)~17년(1230) 간의거란 침입기, 고종 18~24년(1231~1237)의 몽고 1~3차 침입기, 고종 40~46년(1253~1259)의 몽고의 6·7차 침입기 등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1)

(1) 거란침입기의 농민·천민봉기

고려 무신정권기에 최초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서북지역의 농민항쟁은 무려 5년 이상이나 지속된 끝에 종식되었다. 이후 무신정권 기간을 통하여 고려정부는 서경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서북계에 대해서는 도령을 위무하고 중앙에서 파견한 병

¹⁾ 고종 18년부터 46년까지 지속된 몽고의 침입은 7차로 나누어 파악되고 있는 데(1차는 18년 8월~19년 봄, 2차는 19년 8월~12월, 3차는 22년 윤7월~26년 4월, 4차는 34년 7월~35년 3월, 5차는 40년 7월~41년 정월, 6차는 41년 7월~43년 10월, 7차는 44년 5월~46년 3월), 고종 25년부터 39년까지의 15년간은 농민봉기가 보이지 않아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尹龍爀, 《高麗 對蒙抗爭史 研究》(一志社, 1991) 참조.

마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등 강온 양면책을 강구하였다. 정부의 서북지방에 대한 견제는 고종대에 들어와 거란·여진 그리고 몽고의 내침으로 국가체제가 해이해지면서 약화되었으니 이 시기를 틈타 발생한 사건이 楊水尺의 난이다.

무신정권기 고려에 대한 외세의 침입은 몽고에 쫓겨 남하해 온 거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종 3년 8월 거란군 수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자고려는 3軍을 출동시켜 방어케 하였는데 이 때 양수척이 반기를 들고 거란적에 투항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이 고려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양수척 등이 익명으로 帖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가 고의로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妓家의 침탈을 견딜 수 없어서 거란적에게 항복하여 鄕導가 된 것이니, 만약 조정에서 이 기생들과 順天寺 주지를 죽이면, 창을 거꾸로 돌려들고 나라를 돕겠다'하였다(《高麗史節要》권 15, 고종 4년 3월).

원래 양수척은 천민계급으로 水草를 따라 옮겨 살며 수렵과 柳器匠・肉商 등을 일삼아 貫籍과 賦役이 없었다. 그런데 이의민 집권기에 와서 그의 아들 이지영이 朔州分道將軍으로 있을 때에 이들을 그의 愛妓 紫雲仙에 소속시키고 공물을 징수하기 시작하여, 최충헌이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2) 이에 양수척은 그 침학을 이기지 못하여 거란이 침입하자 바로 투항하여 거란의 향도가 되었던 것이다. 최충헌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자운선・上林紅 등 기생을 고향으로 돌려 보냈는데, 순천사 주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버렸다. 양수척의 반란은 결과적으로는 고려정부에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위정자들의 수탈에 대한 피지배층의 저항의 변형된 형태로 민란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고려를 침입한 거란족은 북방의 각 진에서 고려군과 접전을 벌이면서 남으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8~9월에 서북·동북계를 횡행하던 거란군은 드디어 11월에는 대동강을 건너게 되어 고려는 이제 개경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 때 興王寺·弘圓寺·景福寺·王輪寺·安養寺·修理寺 등의 승도로서종군했던 자들이 최충헌을 죽일 것을 모의하여 개경 盲義門을 부수고 들어가

^{2) 《}高麗史節要》권 15, 고종 3년 9월.

관군과 대적하였다. 그들은 먼저 낭장 金德明의 집부터 찾아가 부수었는데, 그는 일찍이 음양설로 최충헌에게 아부하여 자주 요역을 일으켜서 여러 사원을 침해하였기 때문이었다. 3) 이들의 반란은 관군에 패배하여 무려 800여 명의 승도가 참살당함으로써 끝맺었으나, 이 또한 사원에 거주하던 피지배층인 승도들의 대정부 항쟁으로서 그 원인이 가혹한 공역에 시달린 데에 있다는점에서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농민봉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이번에는 전주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거란이 남침하여 개경까지 위협을 받음에 따라 정부는 남부지방의 주현군까지 징발하게 하였는데 전주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봉기하였다. 즉 全羅抄軍別監 洪溥는 중앙의 명령으로 전주군을 고종 3년 12월 26일에 출동시켰는데, 이들이 5일만에 다시 전주로 돌아와 주의 長吏를 죽이고 난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나주지방의 군대도 출발할 수 없었다고 하니,4) 반란의 조짐이 전라도 전역에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주 군인들의 반란도 평소 장리의 억압에 시달리던 주현군이 거란 방어에 우선하여 장리를 살해할 정도로불만이 쌓여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정부는 장군 奇允偉로 하여금 本領軍과 神騎의 두 반을 거느리고 충청도안찰사와 함께 출동하게 하여 겨우 이들을 진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번에는 振威縣에서 난이 발생하였다.

진위현 사람 수同正 李將大와 直長同正 李唐必이 국가에 사단이 있는 틈을 타서 같은 현 사람인 별장동정 金禮 등과 더불어 반란을 꾀하여, 무리를 모아縣수의 兵符와 印을 겁탈하고 창고를 열어 진휼하니 굶주린 백성들이 많이 따랐다. 그리하여 이웃 고을에 통지하되 자칭 靖國兵馬使라 하고 그 군사를 義兵이라 이름하였다. 행군하여 宗德(경기 화성)·河陽(충남 아산) 두 창고에 이르러 곡식을 풀어서 군사를 먹이고 제멋대로 꾸려서 장차 廣州를 침범하려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5, 고종 4년 정월).

당시 거란은 서북방면의 여러 성들을 공략했을 뿐 아니라 3년 10월에는 楊州 沙峴浦(지금의 서울)까지 내려왔으니 서울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진위현(지 금의 평택)민으로서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난의 주모자인 이장대와

^{3) 《}高麗史節要》권 15, 고종 4년 정월.

⁴⁾ 위와 같음.

이당필은 스스로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뜻인「靖國兵馬使」라 하였으며, 휘하의 반민들은 외세를 방어하는 데 보다 적합한 용어라고 여겨지는「義兵」이라 칭하였다. 따라서 진위현민의 봉기는 외세에 대한 저항감도 있었으리라 판단되나, 이들이 난을 일으켜 창고를 열어 진대하니 굶주린 백성이 많이 따랐다는 것으로 보아 농촌생활의 피폐가 봉기가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보인다.

진위현은 작은 고을이나 삼도의 요충에 위치하여 사신과 빈객의 왕래가 잦아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백성과 궁핍한 아전으로서는 영접 전송이 부담스러워서, 피지배층의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특히 강한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거란이 경기도 양주를 침범했다면 머지 않아 지리적 요충지인 진위현이 공격받을 것은 당연한 순서였으므로, 진위현의 토호인 이장대·이당필·김례 등이 힘을 모아 봉기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우선 宗德倉·河陽倉을 습격하여 군량미를 확보한 후에 광주를 중심으로 대정부 항쟁과 외세의 방어에 주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정부는 외세의 침입보다 농민봉기의 진압에 더욱 주력하여, 중앙의 군대와 광주·水州의 군사로 토벌하게 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에 충주·청주·양주도의 병사를 징발하여 겨우 진압하였다.5) 고종 4년 (1217) 2월에 관군이 거란을 양주 陶公驛에서 맞아 싸워 패배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진위현민과 합세하여 대처했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정이 많았던 정부인 만큼 농민이 의병으로 일어서는 것조차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게 될 것을 걱정하여 저지했다고 보여진다.

같은 해 5월, 이번에는 서경에서 난이 발생하였다. 당시 서경성이 견고하여 거란은 황해도·경기도까지 진격해 왔으나, 서경은 거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거란은 서경을 피하여 대동강을 건너 남으로 향하였는데, 이로 인해 서경은 거란군에 둘러싸여 있는 형편이었다. 정부는 5군을 재편성하여 적군을 막게 하는 한편, 종묘 9실의 신주를 工部廳과 考工廳에 이주시켜 개경의 함락에 대비하였다. 거란이 東州(철원)·安陽都護府(춘천)·원주를 함락시키자, 정부는 서경병마사 상장군 崔愈恭과 판관 예부랑중 金成 등에게조서를 내려 서경군사를 조발하여 위기에 빠져 있던 중앙군인 5군을 구원하

^{5) 《}高麗史節要》권 15, 고종 4년 정월.

게 했다. 그러나 휘하에 있던 崔光秀가 반란을 일으켰다.

崔光秀라는 군졸이 있었는데 행군하기를 싫어해서 纛旗를 세우고 군사를 모아 서경으로 되돌아왔다. 崔愈恭이 창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金成은 술이 취해 드러누워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이즈음 유공이 사졸을 등쳐먹기를 좋아하여 결국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반하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5, 고종 4년 5월).

최광수는 成州출신으로서 주진군의 旗頭였다.6) 그는 거란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서경의 군대를 정발하자 이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광수 등 서경군이 거란군과 대적하기 위해 출전했을 때, 서경병마사 최유공과 판관 김성은 하급장교들에게 지휘권을 맡긴 채 서경에서 향락에 빠져 있었다. 특히 최유공은 탐학하여 서경민의 원성이 높았다. 피지배층을 수탈하여 자신의 향락과 안위만을 보존하려는 관리의 행위에 군인들은 분노를 느껴 드디어 거란과의 전투를 포기하고 봉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광수가 반란을 일으키자 서경민은 크게 호응하였고 그여세를 몰아 최광수는 서경성을 점령하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힘을 얻은 최광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옛고 구려 회복을 내세우고 스스로는 「句高麗興復兵馬使金吾衛攝上將軍」이라 일컫고 관원과 군대를 모집하여 국가체제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서북계의여러 성에 격문을 보내 동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난은 흡사 명종 때 조위총의 주도로 일어났던 서북민의 봉기를 연상시킨다. 그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찾아갔던 分臺錄事 鄭俊儒 등 10여 명을 동향인이라고?) 흔쾌히 맞이했던까닭은, 최광수로서는 인재를 끌어모아 큰 세력을 만들어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포부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반란의 주체세력인 최광수등 8명이 정준유에게 갑자기 암살당하여 그의 목표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 그의 봉기가 직접적으로는 서경 지배층의 탐학과 자기 보신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하였으나, 당시 대외적으로는 거란을 제대로 막지 못하여 위축되고

⁶⁾ 李稿.〈鄭氏家傳〉(《東文選》100. 傳)

^{7)《}高麗史》권 121, 列傳 34, 鄭顗(初名 俊儒)에 의하면 정의는 淸州人이라고 하며, 《東文選》에는 최광수가 成州人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광수가 정의를 同鄉人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경으로 이주해서 살았다고 생각된다.

있었던 고려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 서경민들로 하여금 고구려 부흥까지 꿈꾸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고종 3년 8월부터 2년 반동안 고려는 거란의 침입으로 소요에 휩싸였다가고종 6년 정월에 여·몽 연합군에 의해 江東城이 함락당함으로써 거란이 항복하여 안정을 되찾았다. 이 때 의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韓恂과 多智는 모두 義州의 戌卒로서 순은 별장이 되었고 지는 낭장이 되었다. 고종 6년에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그 곳의 방수장군 趙宣과 수령 李棣를 죽이고 스스로 元帥라 일컬으며 감창사와 대간 등의 관서를 두고 함부로 나라 창고의 곡식을 풀어내니 여러 성이 향웅하였다. (조정에서) 장군 趙康卿과 낭중 李公老를 보내 초무코자 하니 순·지의 무리 50여 명이 嘉州의 객사에 들어와 말하기를, '兵馬使 趙沖・金君綏・丁公壽 등은 청렴하며 백성을 사랑하나나머지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잔학하여 백성에게서 재물을 많이 거두는 것이 살을 벗기고 뼈를 긁는 것과 같으니,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다(《高麗史》권 130, 列傳 43, 韓恂;《高麗史節要》권 15, 고종 6년 10월).

의주는 고려의 최전방으로서 외세의 끊임없는 공격에 가장 많은 시달림을 받았던 지역이었다. 이곳은 고구려 멸망 후 예종 12년(1117)에 고려가 회복할때까지 당・발해 그리고 거란에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양계지방의 토지는 국가의 사민책에 의해 남쪽으로부터 이주해 온 농민들에게 국가가 量給하였으므로 농민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신정권 이후많은 토지가 보다 용이하게 권세가들에게 점탈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8) 뿐만 아니라 의주는 북방민족과의 교역의 중심지였으므로, 9) 전쟁으로 교역이 끊겨 주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데 대한 불만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곳은 지휘계통이 다른 두 개의 군사조직이 존재하였다. 즉중낭장 이하 州鎭將相將校들의 지휘를 받는 주진군과 防戍將軍 휘하의 경군과 남도 주현군으로 구성된 방수군이었다. 10) 한순・다지 등이 먼저 방수장군조선과 수령 이체를 죽인 것으로 보아 중앙의 방수군과 지방 주진군의 갈등도 봉기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⁸⁾ 鄭鍾瀚,〈高麗 兩界의 民田과 그 所有關係의 變化〉(《慶北史學》6, 1983).

^{9)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5년 정월 신축.

¹⁰⁾ 趙仁成, 〈高麗 兩界 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0).

그들이 봉기하였던 직접적인 계기는 지방관의 탐학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궁핍이었으므로 농민군은 반란을 일으킨 직후 창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하여 서북계 주민들의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서북계의 주민들이 한순·다지의 난에 호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지방관의 탐학이 일차적인 원인이었으나, 한순·다지11)가 지향하는 단계는 단순한 민란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즉시 원수라 일컬으며 감창사와 대간 등의 관서를 두었다고 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혹은 국가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북계의 많은 성이 이에 호응하자 최충헌이 죽고 실권을 장악한 지 미처 한달도 되지 않았던 집정자 최우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우는 우선安永麟・柳庇・俊弼 등 13명의 서북계 관리들이 일찍이 최충헌에게 아첨하여 백성을 착취하였다고 하여 섬으로 유배시키고, 의주반민에 호응하지 않았던 安北都護府・龜州・延州・成州의 주리에게 參職을 차등있게 주어 그 공로를 치하하였다. 그리고는 추밀원부사 李克倩에게는 중군을, 李迪儒는 후군을, 金就礪에게는 우군을 거느리고 가서 의주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힘입어 안북도호부에 의주의 반민들이 침입했을 때 주민들이 힘껏 싸워 朴蘇 등 80여 급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두었다.

한순·다지 등은 서북계 전역이 호응하지 않는 데다가 시일이 흐름에 따라 관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의주를 공격하니 이듬해 2월 東眞에 투항하였다. 즉 의주반민은 청천강 이북을 들어 동진에 소속시켜 금의 원수 于哥下를 끌어들이려 하였는데, 우가하의 배반으로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였다.12) 그러나 의주의 유민을 진무하기 위하여 파견된 宗周賚·宗周秩 등의 관리가 또 탐학하여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의 다과를 정하는 등 백성을 괴롭히자, 의주민은 다시 봉기하여 이들을 죽였으나 중앙에서 파견된 5천의 관군을 이기지 못하여 평정되었다. 정부는 의주방어사를 威新으로 맞추어 장계하였다가, 변방지대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곧 회복

¹¹⁾ 多氏는 고려의 姓氏에는 보이지 않고 발해의 姓氏條에 보인다. 혹은 多智가 이름일 경우, 여진이나 거란인에게서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므로 고려에 귀 화한 발해인이거나 혹은 거란 여진과 같은 북방 이민족이 아닐까 생각된다.

^{12) 《}高麗史節要》권 15, 고종 7년 2월.

시켰다.13) 그러나 고종 9년에도 유배에서 사면되어 돌아온 의주적이 동진병을 끌어들여 靜州·義州 등지를 다시 침입하다가 진압된 적이 있었다.14)

이 의주민의 봉기도 앞서 최광수의 고구려 부흥운동처럼 반란의 주도층은 새로운 정부를 구상했던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었지만, 지방관의 침탈에 항거하는 민중들이 대거 가담한 점에서 민란의 범주에서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2) 몽고 1~3차 침입기의 농민·천민봉기

외세의 침입에 의한 통제력의 이완을 틈타 일어났던 농민봉기는 몽고가 침략한 고종 18년(1231)부터 본격화되었다. 몽고의 사신 著古與의 살해를 빙자하여 고려와의 교류를 단절한 몽고는 고려에 군대를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몽고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각지의 반민들은 정부와 연합하여 외적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즉 馬山의¹⁵⁾ 초적 괴수 2명은 최우를 찾아와 그들 휘하에 있는 5천여 명의 반민을 대몽고 항전에 투입시키기를 요청하였으며, 광주 冠嶽山 초적 50여 명도 최우의 청으로 정규군인 3군의 하나인 우군에 충원되어 黃州에서 몽고병을 격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적은 유이농민집단으로서 12세기부터 대정부 항쟁을 주도했던 민란의 주체세력이었다.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고려를 구출하기 위하여 일어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사회에서 가장 천시되던 노비들도 몽고를 축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관노들의 대몽항전이 민란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즉 충주지방에 몽고군이 침입하자 충주판관 庾洪翼・충주부사 于宗柱와 兩班別抄들은 모두 다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오직 奴軍・雜類만이 남아서 몽고군을 물리쳤던 것이다. 몽고가 물러간 후, 부사 우종주 등이 돌아와서 관가와 사가의 은그릇을 점검하였는데 노군은 몽고군이 약탈해 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장 光立 등 5~6명이 이 말을 믿지 않고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

^{13)《}新增東國輿地勝覽》권 53, 義州牧.

^{14) 《}高麗史節要》권 15, 고종 9년 7월.

¹⁵⁾ 馬山은 지금의 京畿道 坡平에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 11. 坡州牧 驛院條).

려 하였으므로 충주관노들이 봉기하였다. 그들은 "몽고군사가 오면 다 달아나 숨어버리고 성은 지키지 않다가 이제는 몽고군이 약탈한 것까지 우리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하니 우리가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서 토호 등 평소에 가혹하게 수탈하던 지배층을 살해하였다.16)

충주노비의 난은 최우가 注書 朴文秀·前封御 金公鼎을 安撫別監으로 파견하여 회유하게 하고, 노군도령인 수史 池光守를 교위에, 승려 牛本을 충주大院寺 주지로 각각 임명하여 이들을 진정시켰다. 이들의 난이 이렇게 쉽게 진정될 수 있었던 까닭은 봉기했던 농민들 자신이 관리들의 부당한 책임전가와 생명 위협에 반발하여 충동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란 지휘자에 대한 직책 수여 등으로 일단 안정되었으나, 최씨정권의 강화천도 직후인 같은 해 8월에 재봉기하게 되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추측컨대 1차 봉기 이후 충주 지배층의 보복에 직면했을 것이며, 또한 정부가 강화천도를 감행하여 적극적인 대몽항쟁을 수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 분개하여 일어났던 것 같다. 2차 봉기의 주모자대원사 주지인 우본은 대원사의 승도와 관노를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휘하 노군의 배반으로 우본이 살해됨으로써 난이 진압되었다.17)

몽고의 1차 침입 후 최우는 강화천도를 감행하였다. 최우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결정된 강화천도는 최씨정권이 적극적인 대몽항쟁을 전개하여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몽고의 침입과 농민항쟁을 피하여 자신의 권익과 정권의 안위만을 집착한 결과에서 나타난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경민으로서는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경제생활에 큰 위협이 초래되는 문제이므로, 백성들의 동요는 심각했다. 고종 19년 7월 6일 왕이 개경을 출발하면서 개경민의 이주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즈음 어사대의 皂隸인 李通이난을 일으켰다.

어사대의 조예 李通이 경기지방의 草賊과 城中의 노예를 불러모아 반란을 일으켜 留守 兵馬使를 쫓아 내었다. 그리고 三軍을 즈직, 여러 절로 글을 보내 승도를 불러 모았으며 공사의 錢穀을 약탈하였다(《高麗史節要》권 16, 고종 19년 7월).

^{16) 《}高麗史節要》권 16, 고종 19년 정월.

^{17) 《}高麗史節要》 권 16, 고종 19년 9월.

외세 침입에 따른 백성들의 고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강화도로 떠나는 국왕과 문무관료들에게 배반감을 느낀 개경민은 어사대의 조예 이통을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이들은 양반이 버리고 간 개경을 수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방의 초적 및 승도와 연합하여 삼군을 조직하였다. 개경민의 봉기는 앞서 대몽전 초기 마산초적 등 유이민들의 우호적인 대정부 관계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강화도 천도를 계기로 민중들에게 반몽에 반정부의 감정이 더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외래의 침략자보다 이들 반민을 더 무서워한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천도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급히 3군을 편성, 파견하였다. 강도에서 3 군이 편성되자 개경의 留守軍을 축출시켰던 농민군은 정부군이 상륙하는 즉시 昇天府(지금의 豊德)의 동쪽 교외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이통이이끄는 반민이 퇴각하여 미처 개경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부의 견룡행수 別將 李甫와 鄭福綏가 이끄는 선봉 야별초 부대가 기습전을 벌여 개경성을 먼저 점령함에 따라 이통의 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강화천도 직후 몽고는 다시 침입했다가 처인성에서 몽고의 대장 撒禮塔이전사하자 그 해 12월에 철수하였다. 몽고가 물러간 후 이번에는 龍門倉에서반란이 일어났다.18) 용문창은 예성강에 가까운 개경의 서쪽 근교에 위치하고있으며 병량의 비축과 공급을 맡은 창름이었다.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도용문창이 그 기능을 유지하여 많은 미곡을 비축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천도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양식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있었을 것이다. 이 난의 주모자는 居卜과 往心인데, 구체적으로 봉기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용문창을 노린 것으로 보아, 고종 19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계속된 전란으로 인해 수확을 거두지 못하여 기근에 시달린 주민들이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봉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문창의 반민이 봉기한 지 한 달도 되지 못하여 이번에는 慶州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경주는 일찍이 명종·신종대에도 농민항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고려정부가 두려워하던 곳이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강도정부는 즉시 李子晟을 보내어 이들을 진압시키기에 노력하였다.

^{18) 《}高麗史》 권 103, 列傳 16, 李子晟.

이자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빨리 달려서 永州城에 웅거하여 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적은 각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정해진 날에 모이기를 요구하였는데, 여러 고을이 망설이고 있던 중 자성이 영주에 들어왔다는 소식 을 듣고 이에 안정하였다. 적은 자성군이 먼 곳으로부터 급히 왔으므로 그 피 로함을 타서 이를 치고자 하여 영주의 남쪽 교외에 집결하였다(《高麗史》권 103, 列傳 16, 李子晟).

경주민 崔山·李儒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농민봉기는 신종년간 농민항쟁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자성은 경상도 농민들이 연합세력을 형성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말을 달려 영주성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반민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19)이 기록이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관군이 주둔하고 있는 영주까지 진출하여 선공을 도모하는 것으로보아 그 세력이 자못 강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반민이 운집하여 관군과 대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취약한 이들의 약점을 간파한 이자성의 기습전에 의해 역습을 당하여 패배하였다. 경주에서의 봉기는 대몽전과, 앞서 일어났던 이통, 충주 관노, 용문창의 반민 등 여러 차례 민란을 수습한 바 있는 노련한 이자성의 전술에 의해 경상도 전역에 확산되지못하고 진압되었다.

이 때는 몽고의 2차 침입이 끝났던 시기로서, 이들의 봉기는 외세를 막기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대정부 항쟁이었다. 강화천도를 계기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최산·이유 등 경주지역 토호세력과 농민군이 힘을 합하여 일으킨 반란으로 보인다. 최충헌정권 이래로경주가 중앙에 의해 철저하게 견제당하여 주변의 안동이나 상주에 비해 지역세가 약화되고, 또한 몽고 침입 이후 강도정부가 국가재정을 남도의 농민에 의존하고 있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시기 이번에는 서경에서 畢賢甫와 洪福源 등이 宣諭使 대장군 鄭毅와 朴祿全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²⁰⁾ 이들의 반란은 앞서 고종 19년 8월에 고 려에 주재하는 몽고의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모살코자 한 고려정부의 대몽 강 경조처에 대해 서경민이 몽고에 보복당할까 두려워 반발하던 사건의 연장선상

^{19)《}東文選》 26, 麻制, 除宰臣朴文成李子晟宋恂任景肅 教書.

^{20) 《}高麗史節要》 권 16, 고종 20년 6월.

에서 일어난 것이다. 고려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한 후 다루가치를 통한 몽고의 간접적인 간섭으로부터의 통치권 회복을 기도하여 이같이 시도한 것이었다. 그들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서경이 平州(지금의 평산)처럼 몽고 군사에 게 전멸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며 서경순무사 대장군 閔曦를 잡아 가둔 적이 있었다.²¹⁾ 평주는 고종 18년 11월 몽고의 1차 침입 때 몽고의 첩자를 가두었 다가 몽고의 공략을 당해 주민은 물론 개나 닭 한 마리조차도 남기지 않고 모 두 도륙당했던 곳이었다. 최우는 서경에 가병 3,000명을 보내어 이들을 진압시 킨 후, 몽고로 도망간 홍복원을 제외한 반란의 주모자를 모두 잡아 죽이고 나 머지 백성들은 다 귀양보내어 서경을 폐허로 만들었다.²²⁾ 이 반란은 필현보・ 홍복원 등 반역자들이 몽고에 항복하여 서경에서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지만, 다수의 서경민이 호응한 까닭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려는 개경 지배층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후일 서 경민이 몽고에 투항하여 서경 이북에 동녕부가 설치된 사실은 이같은 최우의 가혹한 진압이 초래한 바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몽고의 3차 침입은 고종 22년~26년(1235~1239)까지 지속되었다. 이번 침략에서 몽고는 전술을 바꾸어 전번처럼 강도의 정부와 교섭을 시도하지 않고 그저 고려의 전국토를 유린하였다. 이 때 일어난 민란이 고종 24년 봄에발생했던 李延年의 난이다.

그 때 草賊 李延年 형제가 原栗(전남 담양 동15리)·潭陽 등 여러 고을의 무뢰배들을 규합하여 海陽(光州) 등 여러 고을을 함락시켰다. 적은 金慶孫이 나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적의 기세가 대단히 왕성하였다. …이연년이 그의 도당에게 말하기를, '지휘자는 龜州 싸움에서 성공한 장수이다. 인망이 대단히 높아 내가 이 사람을 꼭 생포하여 都統으로 삼을 예정이니 활을 쏘지말라'고 하였다. 혹시 그가 流矢에 부상당할까 염려하여 활을 일체 쓰지말고 짧은 칼로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다(《高麗史》권 103, 列傳 16, 金慶孫).

이연년을 비롯한 전라도의 초적은 원율·담양 등을 근거지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활약하면서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고종 24년에는 광주·나주를 침공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었던 것 같다. 반민들은 주로 유이민들인데, 이들이

^{21) 《}高麗史節要》권 16. 고종 19년 8월.

^{22) 《}高麗史》권 23, 世家 23, 고종 20년 12월.

나타나면 관리들이 숨거나 음식을 대접할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니23) 이는 여러 차례 중앙정부의 토벌책이 실패한 까닭이었다. 정부의 진압작전이 실패로돌아가면서 이들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져 이연년은 스스로「百濟都 元帥」로청하였다.24) 이 때는 몽고군의 발길이 처음으로 전라도까지 미치고 있어서 민심이 크게 동요되던 시기였다. 이연년은 수 차례의 승리와 우세한 병력을 믿고 김경손과의 싸움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였다. 전라도지휘사에 새로임명된 김경손은 일찍이 몽고의 1차 침입 때 靜州分道將軍으로 龜州城에서 적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 용장이었다. 이연년은 외적방어에 큰 공을 세운 김경손을 사로잡아 그의 휘하에 두기 위하여 지나치게 김경손의 안위를 염려하다가 오히려 그가 잡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 틈을 타서 관군이 반격을 가해 오니 농민군은 지휘자의 죽음에 사기가 저하되어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져 난은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김경손을 생포하여 도통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아 단순한 대정부 항쟁이라기보다는 당시 전라도를 침입하기 시작한 몽고군을 방비하려 했던 의도도 보인다. 이연년이 자칭 [백제도원수]로 일컬은 것은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는 전라도 주민들에게 호응받기 위한 계책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고려정부는 천도를계기로 백성의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백제를 내세운 민심수습이 더욱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연년은 농민들의 대몽항쟁의 열기를 보고 일정한영역을 확보하여 굳게 방어한다면 전라도 지역만큼은 몽고의 발길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 같다. 이연년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민의항쟁은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외세를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반란의 파급을두려워한 정부의 토벌군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끝나 버리고 말았다.

이연년 등 전라도민의 봉기를 끝으로 농민항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농민들은 외세침입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농민수탈에는 유능한 지배층을 경원시하면서 점차 고려

²³⁾ 李齊賢.《櫟翁稗說》前集 권 2.

^{24) 《}高麗史》권 99, 列傳 12, 崔惟淸 附 璘條에는 "時原栗人李延年 自稱百賊都元 帥"라 하여 百濟를 百賊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을 낮추어 일부러 百賊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정부에 대해 반감이 쌓여갔다. 이같은 여건이 고종 40년(1253) 이후에 이르게 되자 백성들은 고려정부에 대한 불만을 오히려 외세 즉 몽고에 항복하는 형 대로 저항하게끔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몽고 6·7차 침입기의 농민봉기

세 차례의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몽고가 내분에 휩싸임에 따라 당분간 고 려는 평화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농민들은 다시 지배층의 수탈에 시 달려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최우의 아들들인 萬宗・萬全의 횡포였으니. 그들은 경상도 진주의 斷俗寺와 전라도 綾城縣의 雙峰寺에 거주 하면서 무뢰배를 불러모아 문도로 삼아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를 실시하였 다. 그들이 모은 곡식이 경상도에서만 무려 50만 석이 넘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한다.25) 만전 · 만종 형제의 탐학은 1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으니. 이를 보다 못한 형부상서 朴暄이 최이(우)에게 고하기를, "북쪽군사가 해마 다 쳐들어와 민심이 불안하여 비록 은덕으로 어루만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종·만전의 무리가 백성의 재산을 긁어모아 원망이 대단하여 남방이 소요스러우니, 만약 적의 군대가 이르면 모두 반역하여 투항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제재를 가하기를 요청하 였다.26) 이제 고려정부의 농민수탈은 극에 달하여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최우는 박훤을 흑산도로 귀양보내고 만전을 자 신의 후계자로 삼았으니, 이로 보아 그 아들들의 행패는 최고 집정자의 묵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36년 11월, 최이가 죽고 崔沆이 집권하였다. 최항 역시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보다는 백성의 수탈에 뜻을 두었으므로 이제 백성들은 몽고군이 오는 것을 도리어 기뻐할 지경이었다.27)

최항이 羅得璜·河公敘·李瓊·崔甫侯를 각 도에 보내어 宣旨使用別監으로 삼았다. 처음에 최이가 나득황의 무리를 여러 도에 보냈을 때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므로 최항이 처음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인심을 얻으려고 모두 파

^{25) 《}高麗史節要》권 16, 고종 27년 12월.

^{26) 《}高麗史節要》권 16, 고종 34년 6월.

^{27) 《}高麗史節要》 권 17, 고종 43년 2월.

하였다가, 이때 다시 기용하니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高麗史節要》권 17, 고종 39년 8월).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항은 그에게 아부하는 탐학한 관리로서 지방관을 삼아 백성들의 동요는 더욱 심각하여졌다. 더욱이 고종 40년 7월 몽고장수 也窟의 5차 침입부터 재개된 전쟁은 車羅大로 이어지면서 7년 동안 계속되어 농가의 피폐가 극에 달하였다. 민생의 파탄은 한편으로는 지배층의 생활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한 집권자들의 탐학이실정을 더욱 악화시켰다.28) 이같은 상황은 드디어는 지배층에 대한 반감으로피지배층이 싸움을 포기하거나 자진해서 몽고에 투항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종 40년 8월에 발생했던 東州山城의 경우이다.

동주 방호별감 白敦明은 몽고가 침입하자 백성을 산성에 들어오게 하고 출입을 금하였다. 몽고가 아직 동주에 이르기 전이므로 고을 아전이 곡식을 수확하기를 청하자 백돈명은 아전을 죽이고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분격한 백성들이 몽고가 침입해도 나가 싸우지를 않아 동주가 함락되었다(《高麗史》권 24, 世家 24, 고종 40년 8월 계유).

동주처럼 지방관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 몽고에 함락된 경우는 椋山城, 笠巖山城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충주에서는 몽고군을 대파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방호별감 낭장 金允侯가 "만일 죽음을 다하여 힘껏 싸운다면 귀천없이 관작을 제수하겠다"하고 관노들의 노비문서를 불태우자 이에 힘입어 주민들이 힘껏 싸워 이겼다고 한다.29) 당시 정부가 백성을 잘 안무하고, 청렴한 지방관이 효율적으로 백성을 이끌 수 있었다면 몽고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백성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몽고 침입기 최후의 민란은 원주에서 발생하였다. 즉 원주의 安悅·松庇· 敦正・唐老 등이 興元倉을 점령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켰던 것이다.30) 정부는

²⁸⁾ 尹龍爀, 〈高麗 對蒙抗爭期의 民亂에 대하여〉(《史叢》30, 1986), 53쪽.

^{29) 《}高麗史節要》권 17. 고종 40년 12월.

^{30) 《}高麗史》 권 20, 世家 20, 고종 44년 4월 을해.

장군 尹君正과 낭장 權贊을 파견하여 토벌케 하여 그 주모자를 목베이고 추종자들은 섬에 옮겨 살게 하였다. 이 또한 고종 40년 이래 지속되어 온 전란으로 초근목피로 목숨을 부지하던 기민들이 중심이 되어, 흥원창의 곡식을 노려 봉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를 살해하고 몽고에 투항하는 고려인의 행렬은 계속이어져 고종 45년(1258)에는 博州와 廣福山城에 피신했던 吏民이, 또한 그 해 12월에는 龍津縣 사람 趙暉와 定州人 卓靑이 和州 이북을 들어 몽고에 항복하였다. 동왕 46년에는 登州와 和州의 반민들이 동진국 군사와 함께 고려를 공략하였으며, 계속해서 艾島와 葛島에서는 驛人들이 몽고군에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계속 이어져 원종 원년(1260) 정월 席島, 椵島에서도 일어났다.

전쟁 말기인 고종 45년과 46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같은 투몽사례는 강도정부가 대몽전략으로 추진하던 산성 및 해도에의 入保策에 대한 백성의 강경한 거부를 나타낸 것으로 특히 변경지대에서 빈발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보책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민생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고려정부의 전쟁수행 능력이 농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것은 민란의 변형된 형태로서, 궁지에 몰린 백성들로서는 몽고에의 항복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정부는 외세의 침입과 농민들의 저항의 양쪽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몽고에 투항하는 길을 택하여 왕실의 온존만은 구하려 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태도는 전 고려민의 저항에 부딪쳐 삼별초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다.

12세기 후반기부터 13세기 초는 농민·천인 등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억압에 정면으로 반발하여 구질서의 타파를 요구하던 시기였다. 초기에 그들은 단순히 탐학한 지방관의 교체 요구에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신분제도 타파·토지겸병 근절 등 체제개혁 요구를 거쳐 새로운 국가건설까지 표방하였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경전의 증가는 농민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켜 농민해방을 앞당기게도 할 수 있지만, 고려

사회의 경우는 생산력의 향상에 따른 소득의 증가가 지방관의 탐학을 가중시키고 권세가의 토지겸병에의 욕망만을 가속화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기존 소유하고 있던 토지마저 빼앗기고 전호로 전략하거나 유랑민이되었으며, 소규모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은 더욱 정부의 수탈에 시달리게되었다. 이같은 토지소유관계의 근본적인 모순이 고려 무신집권기 전국을 휩쓸었던 농민항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또한 고려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지방관의 탐학과 더불어 권력자들의 정권 다툼으로 지배층이 농민항쟁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던 점도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 되어 그 대표적인 농민항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서북민의 봉기, 전주민의 봉기, 제주에서의 봉기, 운문·초전민의 봉기 그리고 경주민의 항쟁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전주와 제주민의 항쟁은 지방관의 탐학으로 인한 요역의 가중을 견디지 못하여 봉기한 것으로 민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봉기에는 관노들이 합세하였다. 이들 관노들은 신분제의 탈피라는 목적을 가지고 항거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들의 요구가 표면에 드러나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서북계와 운문·초전 그리고 경주에서는 토지소유관계와 지방 관의 탐학에 대한 불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려정부에 저항하였다. 이들 은 토지겸병의 심화에 따른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모순이 고려사회체제의 모 순임을 자각하고 대정부 항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들 내부에는 무신들을 축출하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려 했던 조위총, 토호들의 세력확보를 목적으 로 조위총과 함께 봉기했던 양계 도령, 농민들의 힘을 벌어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던 이의민, 신라부흥을 목적으로 삼은 경주 토호 등 각기 야심을 지 닌 지도층이 농민봉기에 가담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독특한 양상으로 항쟁은 발전하였다.

토지소유관계의 모순이 농민항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천민·노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신분사회의 변동에 있었다. 이미 무신정권 이전부터 노예들에게 개별적인 관직 수여가 있었던 적이 있었으며 특히, 무신집권기에는 천민출신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거노비로서 토지경영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고려사회의 변화는 피지배층의 의식을 향상시켜 천민·노비 등의 신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천민의 항쟁으로서는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 진주 공사노예의 반란, 합주 노올부곡민의 봉기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적의 난이가장 주목된다. 만적은 "公卿將相의 씨가 어찌 따로 있으랴. …먼저 봉기하여 최충헌 등을 죽이자. 이어서 각각 그 주인을 쳐서 죽이고 賤籍을 불사른다면 공경장상은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노비제도를 폭력으로 없애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탈취의 야망까지 드러내었다. 이 난은 공주 명학소민이 충순현으로의 승격에 만족하여 해산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분제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당시 피지배층의 의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진주의 경우에는 공사노예의 반란이 실패한 후, 주리인 정방의가 진주의 주도권을 잡아 진주민과 대립하는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진주민은 奴兀部曲民과 연합하여 정방의에게 저항하였는데, 농민・천민이 연합하여 주리에 대항하는 모습에서 피지배계층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농민항쟁은 또한 지역간의 갈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성 주가 三登縣을 공격하려 했거나 경주가 영주를 공격하는 것은 고려 지방제 도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主縣과 屬縣의 이해관계가 표출된 것으로 농민항 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다.

〈李貞信〉